

연구보고 2012-14

# 북한이탈주민 영유아 자녀 양육지원 강화 방안

이윤진 이정림 김경미



## 머 리 말

본 연구소에서 2010년도의 취약계층가정의 자녀양육지원을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북한이탈주민 가정을 일부 다루기는 했지만, 독립된 과제로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0년 이후 북한이탈주민이 급증하면서 이들에 대한 연구가 각계각층에서 활발하게 실시되었다. 그러나 국책연구기관에서 수행한 북한이탈주민 연구는 정착·적응을 다룬 연구들이 대부분이며 여기서 자녀양육문제를 심도 있게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북한이탈주민 대상의 지원정책도, 최근에 상담서비스가 도입되기는 했으나, 취업지원서비스가 주를 이루고 있다.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주류가 20~30대 여성이며 남한에서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 자녀는 남한태생이 대부분이었다. 힘든 과정을 거쳐 남한에 온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은 생활고, 취업난, 자녀양육자로서의 책임감, 북한과 다른 양육문화와 학습지도의 어려움 등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등에서 최근 이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조금씩 하는 상황에서, 본 연구가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 자녀양육의 필요성을 부각하고 영유아 자녀양육지원서비스를 확대, 강화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진과 연구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의 공동작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는데, 그만큼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요구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면을 빌려 연구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둔다.

2012년 11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이 영



# 차 례

요약 .....	1
I. 서론 .....	10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0
2. 연구내용 .....	12
3. 연구방법 .....	13
4. 용어정의 및 연구의 제한점 .....	22
II. 연구배경 .....	23
1. 정착지원제도 .....	23
2. 선행연구 고찰 .....	37
3. 이론적 논의 .....	51
4. 소결 .....	57
III.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특성 .....	62
1. 통계 본 북한이탈주민 특성 .....	62
2. '기아탈피 탈북형'과 '기획탈북형' 가정 .....	69
3. 경제적 특성 .....	74
4. 심리·정서적 특성 .....	79
5. 결혼 상태 .....	82
6. 남한생활의 만족도 .....	84
IV.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양육환경과 양육실태 .....	86
1. 양육환경 .....	86
2. 육아지원기관 이용 실태 및 특성 .....	94
3. 자녀양육의 어려움 .....	102
4. 북한이탈주민 지원서비스 이용 실태 .....	114
5. 기타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 실태 .....	122

V. 북한이탈주민 영유아 자녀양육 지원강화 방안모색 .....	129
1. 연구요약 .....	129
2. 정책방향 .....	132
3. 정책방안 .....	134
참고문헌 .....	139
Abstract .....	144
부록 .....	147
부록 1. 면접조사 질문지 .....	149
부록 2. 설문조사 설문지 .....	154

## 표 차례

〈표 I-3- 1〉 심층면담조사 대상자 .....	14
〈표 I-3- 2〉 심층면담조사 주요 내용 .....	15
〈표 I-3- 3〉 심층면접조사 대상자의 결혼 및 출산 현황 .....	16
〈표 I-3- 4〉 심층면접조사 대상자의 영유아 자녀 현황 및 육아실태 .....	17
〈표 I-3- 5〉 설문지 항목 .....	19
〈표 I-3- 6〉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	20
〈표 I-3- 7〉 설문조사 응답자 자녀의 일반특성 및 양육현황 .....	21
〈표 I-3- 8〉 현장전문가(원장) 자문회의 .....	22
〈표 II-1- 1〉 북한이탈주민 관련 법령 변천과정 .....	23
〈표 II-1-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 신설 및 개정 법조항 .....	25
〈표 II-1- 3〉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	26
〈표 II-1- 4〉 북한이탈주민 지방거주 장려금 .....	27
〈표 II-1- 5〉 2012년도 최저생계비 기준 .....	27
〈표 II-1- 6〉 북한이탈주민 정착장려금 .....	29
〈표 II-1- 7〉 북한이탈주민 지원 보호담당관 종류 .....	30
〈표 II-1- 8〉 전국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30곳 .....	32
〈표 II-1- 9〉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에서의 초기집중교육 예시 .....	33
〈표 II-1-10〉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생활안정 지원사업(2012년) .....	35
〈표 II-1-11〉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주요사업 예시 .....	36
〈표 II-2- 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각계의 관점들 .....	54
〈표 II-2- 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명칭의 변천 .....	55
〈표 II-2- 3〉 북한이탈주민의 자기 인식과 남한주민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차이 .....	56
〈표 III-1- 1〉 북한이탈주민 입국자 성별 추이변화 .....	62
〈표 III-1- 2〉 북한이탈주민 입국자 연령별 특성 .....	63
〈표 III-1- 3〉 북한이탈주민 재북 직업 .....	63
〈표 III-1- 4〉 북한이탈주민 재북 학력별 .....	63

〈표 III-1- 5〉 북한이탈주민 거주 지역별 .....	64
〈표 III-1- 6〉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상태 성별 비교 .....	65
〈표 III-1- 7〉 북한이탈주민 현재 혼인 여부 .....	66
〈표 III-1- 8〉 남한에서 결혼한 배우자 출신지역(성별) .....	67
〈표 III-2- 1〉 기아탈피탈북형과 기획탈북형 가정의 특성 비교 .....	74
〈표 III-4 1〉 직업유무별 모의 자아존중감, 우울감, 결혼만족도, 양육어려움 차이 .....	80
〈표 III-4 2〉 현재 기초생활 수급여부별 자아존중감, 우울감, 결혼만족도 차이 .....	80
〈표 IV-2- 1〉 육아지원기관 이용 현황(2012년) .....	94
〈표 IV-2- 2〉 육아지원기관 이용여부(2009년) .....	94
〈표 IV-2- 3〉 육아지원기관 하루 이용시간(2009년) .....	99
〈표 IV-2- 4〉 이용하고 있는 육아지원기관 만족도(2009년) .....	100
〈표 IV-3- 1〉 자녀국적별 양육의 어려움 정도 .....	102
〈표 VI-3- 2〉 자녀국적별 걱정되는 발달단계 .....	106
〈표 IV-4 1〉 정착도우미 인지 정도 .....	114
〈표 IV-4 2〉 정착도우미 수혜 경험 정도 .....	115
〈표 IV-4 3〉 정착도우미 만족도 .....	115
〈표 IV-4 4〉 신변보호담당관 서비스 인지 정도 .....	116
〈표 IV-4 5〉 신변보호담당관 서비스 수혜 경험 정도 .....	116
〈표 IV-4 6〉 신변보호담당관 서비스 만족도 .....	116
〈표 IV-4 7〉 직업훈련 서비스 인지 정도 .....	117
〈표 IV-4 8〉 직업훈련 서비스 수혜 경험 정도 .....	117
〈표 IV-4 9〉 직업훈련 서비스 만족도 .....	118
〈표 IV-4-10〉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인지 정도 .....	118
〈표 IV-4-11〉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서비스 수혜 경험 정도 .....	119
〈표 IV-4-12〉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서비스 만족도 .....	119
〈표 IV-4-13〉 북한이탈주민전문상담사 인지 정도 .....	119
〈표 IV-4-14〉 북한이탈주민전문상담사 서비스 수혜 경험 정도 .....	120
〈표 IV-4-15〉 북한이탈주민전문상담사 서비스 만족도 .....	120
〈표 IV-4-16〉 하나센터 인지 정도 .....	121

〈표 IV-4-17〉 하나센터 수혜 경험 정도 .....	121
〈표 IV-5- 1〉 고운맘 카드 인지 정도 .....	123
〈표 IV-5- 2〉 출산장려금 인지 정도 .....	123
〈표 IV-5- 3〉 출산장려금 수혜 경험 .....	124
〈표 IV-5- 4〉 아이돌보미 인지 정도 .....	124
〈표 IV-5- 5〉 아이돌보미 수혜 경험 .....	125
〈표 IV-5- 6〉 드림·위스타트 사업 인지 정도 .....	125
〈표 IV-5- 7〉 드림·위스타트 사업 수혜 경험 .....	126
〈표 IV-5- 8〉 0~2세 양육수당 서비스 인지 정도 .....	127
〈표 IV-5- 9〉 0~2세 양육수당 서비스 수혜 경험 정도 .....	127

## 그림 차례

[그림 III-1-1] 북한이탈주민이 지난 1개월간 구직하지 않은 이유(%) .....	65
[그림 III-1-2] 북한이탈주민 가정 미취학 자녀 유무 .....	67
[그림 III-1-3] 북한이탈주민 가정 미취학 자녀 출생국(%) .....	68
[그림 III-1-4] 북한이탈주민 영유아자녀 어린이집 이용여부 .....	68
[그림 III-3-1] 북한이탈주민 취업 정보 경로 .....	78
[그림 IV-1-1] 북한이탈주민 거주주택 형태(%) .....	88
[그림 IV-2-1]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육아정보 습득 방법 .....	97

# 요 약

## 1. 서론

### □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영유아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양육실태와 양육의 애로사항 및 요구 등을 면밀히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자녀양육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음.

### □ 연구 방법

- 문헌연구, 심층면접조사, 설문조사, 원장 자문회의, 전문가 자문회의
  - 문헌연구: 선행연구, 북한이탈주민 관련 법령·통계·운영편람 등 분석
  - 심층면담조사: 영유아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30명
  - 설문조사: 영유아 자녀가 있거나 자녀의 영유아기를 남한에서 키운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 100명
  - 원장 자문회의: 북한이탈주민 영유아자녀가 다니고 있는 육아지원기관 원장 4명 대상으로 탈북가정의 양육실태 및 기관에서의 일상생활 등을 파악
  - 전문가 자문회의: 연구초기 단계에서는 연구방향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연구최종단계에서는 도출한 정책방안에 대해 검토·자문을 받음.

## 2. 연구배경

### □ 정착지원제도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 연혁과 주요 법조항 등 분석
  - 2010년 법률개정을 통해 하나센터 지정·운영,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설립, 전문상담사제도 도입 등 법적 근거 마련
-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적응을 위해 정착지원금, 주거, 생계 및 의료

급여, 취업장려금, 학자금 등의 다각적인 지원을 하고 있음.

- 거주지에서의 정착지원을 위해 보호담당관(거주지보호담당관, 취업보호담당관, 신변보호담당관), 정착도우미, 전문상담사 등의 인력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음.
- 거주지에서의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지원기구로는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등이 있음.

□ 정착지원제도의 의의와 한계

- 2000년 이후 북한이탈주민의 가파른 증가에 발맞춰 꾸준한 법 제정·개정 을 통한 지원정책을 확대, 강화함.
-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주류를 차지하는 탈북여성에 초점을 맞춘 지원정책(예: 출산 및 육아지원, 탈북여성에게 맞는 취업 알선 등)은 미비함.
  - 정착지원서비스가 소수의 남성 중심적인 성격을 띠. 예컨대, 2010년에 개정된 취업특례 조항(세제감면, 공무원 특별임용 등)들은 북한에서도 무직 또는 저임금 노동자였던 대부분의 탈북여성에게는 ‘그림의 떡’임.
  - 영유아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육아로 인해, 법으로 규정한 보호기간 5년 내에 지원받을 수 있는 취업장려금이나 학자금 등의 혜택을 못 받을 가능성이 큼.

### 3.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특성

#### 가. ‘기아탈피 탈북형’과 ‘기획탈북형’

- 기아탈피 탈북형: 애초 탈북 목적이 남한행이 아님. 중국체류기간이 길고, 인신매매 등으로 원치 않은 결혼을 하고 자녀를 출산함. 배우자는 대개 중국 조선족이나 한족임. 남한 입국 후 이들 가족을 초청하여 가족을 유지하는 경우와 해체하는 경우로 나뉨. 해체되는 경우 자녀는 대부분 탈북모가 키움.
- 기획 탈북형: 애초 목적이 남한행임. 이 경우는 북한에서 이룬 가족이 남한에서까지 유지하는 경우가 많으나, 가부장적·억압적인 남편으로 인해 가정 위기를 겪는 가정이 상당히 많음.

## 나. 경제적 특성

- 경제적 어려움은 ‘기아탈피 탈북형’이나 ‘기획탈북형’ 모두 공통된 어려움임.
- 빈곤탈출을 위해 직업취득에 노력하나 북한이탈주민이란 선입견, 장애·질병, 육아 등의 이유로 성공적으로 취업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음.
  - 자격증 취득을 위해 노력하지만, 그에 맞는 일자리를 구하기는 어려움.
    - 자격취득금을 받기 위해서 몇 종류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례도 많았으나, 원하는 일자리를 구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
  - 영유아자녀가 있는 탈북모는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사회적 편견과 더불어 육아지원기관의 이용시간과 맞는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어려움이 가중되어 취업을 하기가 상당히 불리함.

## 다. 심리·정서적 특성

- 생계급여를 받지 않은 탈북모,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탈북모가 자아존중감과 결혼만족도가 높고, 우울감과 양육스트레스 등은 낮게 나옴. 즉, 경제적 요인과 심리·정서적 요인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옴.
- 배우자가 경제적 능력은 없더라도 가정적이고 자상할 때 결혼만족도가 높고, 이러한 가정의 자녀가 심신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음.

## 라. 결혼 상태

- 생계수급을 유지하기 위해 사실혼 관계의 결혼생활을 많이 함.
  - 법률혼보다 결혼생활 안정성이 낮기 때문에 별거 또는 이혼을 쉽게 하는 경우가 많음.
  - 본 면담조사 30사례 중 12사례가 한부모 가정이며 설문조사 대상자의 40%가 별거·이혼함.

## 마. 남한생활 만족도

-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지만 남한생활에 만족하는 사례가 주를 이룸.

- 만족하는 이유로는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어서, 자녀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서, 일한 만큼 돈을 벌 수 있어서 등임.

#### 4.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 양육실태

##### 가. 양육환경

###### □ 물리적 환경

- 특정 지역 임대아파트에 밀집해서 거주함(88.6%). 이러한 주거 환경은 남한사람들과의 교류에서 제약이 될 수 있으며 남한사회로의 동화에 지체될 수 있음.
- 협소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에 자녀들이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음. 실제 이러한 폭력에 노출된 아이는 기관이나 학교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등 공격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음.

###### □ 정서적 환경

- 북한출신 부모들은 자녀양육 시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양육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음.
- 탈북모과 혼인을 하는 남한출신 남편도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경우가 많음. 사랑을 받고 성장하지 못해서 자녀와 친근한 관계를 잘 맺지 못함.
- 이러한 양육환경에서는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사회성이 좋은 자녀로 성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나. 북한이탈주민 자녀양육의 어려움

###### □ 학습지도의 어려움

- 탈북모들은 외래어가 섞인 한글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
- 남한 사회의 학습 용어에 익숙하지 않아서 부모들이 자녀를 직접 교육하는 것은 거의 포기하고, 남한에 있는 교육기관이나 개별 학습지도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자녀 학습지도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음.
- 남한사회는 사교육을 많이 하는데 자신들은 못해 주기 때문에 심적 부담

을 느끼고 있음.

- 한국의 문화나 역사를 잘 몰라서 자녀가 남한사회에 적응하는 것을 제대로 도와줄 수 없다고 생각하여 한국의 역사나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원하였음.

□ 북한과 다른 남한의 양육문화

- 자녀중심적인 남한의 양육문화에 익숙하지 않음.
- 대체적으로 남한이 자녀를 양육하기에 좋은 환경을 갖추고는 있지만, 교육열이 높아 자녀와 부모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음.
- 부모가 담당해야하는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감이 높은 편임.

□ 대리양육자 부재

- 친정 또는 시부모와 같은 혈연관계의 대리양육자 부재로 자녀양육과 취업을 병행하기 어려움.
- 수입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비혈연 대리양육자를 고용하는 데 드는 양육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임.
- 최근 가족단위의 입국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부모나 형제로부터 자녀양육의 도움을 받는 경우는 본 면담조사에서는 없었음.

□ 발달단계별 어려움

- 북한 또는 제 3국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 영양부족으로 인해 신체발달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으며, 정착 초기에는 또래와의 의사소통 문제로 어려움을 겪기도 함.
- 영유아기를 남한에서 보내더라도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자녀의 정체성 문제

- 대부분의 탈북모는 남한에서 태어난 영유아 자녀는 남한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부모가 탈북민이란 사실을 자녀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음.
  - 탈북모는 북한에서 왔다고 하면 자녀들이 왕따를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탈북가정이라는 사실을 밝히려고 하지 않음.

- 또한, 남한에서 태어난 영유아 자녀의 성(姓)이 북한태생 형제, 누나의 성 과 다른 경우도 많음.

#### 다. 육아지원기관 이용 실태 및 특성

##### □ 기관 이용 실태

- 본 설문조사에 유아기 자녀의 89.1%가 육아지원기관을 다니는 것으로 나타남.
  - 국공립어린이집 43.6%, 민간어린이집 32.7%로 유치원보다는 어린이집 이용률이 훨씬 높음. 사립유치원은 수업료는 비싸고 공립(병설)유치원은 입학 경쟁률이 높고 입학조건(취업모 우선)을 충족하지 못해서 유치원을 다니는 사례가 적음.
- 기본 보육료는 전액 면제라서 기관 이용 시 비용부담은 없음. 특별활동프로그램, 현장학습비 등의 추가 비용이 드는 데 이에 대한 부담도 크지는 않았음.
- 기관 선택은 지인을 통해서 정보를 얻거나 본인이 스스로 선택하는 등 사적인 경로를 통한 경우가 많음.

##### □ 기관 이용 특성

- 면접조사에서 어린 영아기에 자녀를 기관에 보내는 경우가 많음. 아르바이트나 부업을 해야 하거나 직업훈련을 받기 위해서 기관 이용 시기가 빠름.
- 하루 이용 시간이 평균 10시간이며 그 이상 맡기는 경우도 적지 않음.
- 부모와의 애착이 제대로 형성되기 전에 일찍부터 장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일부 사례에서 자녀가 정서적, 심리적 불안정한 행동을 보임.

##### □ 기관 이용 만족도

- 대부분의 탈북모들은 현재 이용하고 있는 기관을 만족해 함(64%). 그러나 면담조사에서 원장이나 교사와 갈등을 일으킨 경우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음.
- 원장 면담에서도 탈북모와 이들 자녀들이 기관에 다니면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함.

## 라. 북한이탈주민 지원서비스 이용 실태

- 북한이탈주민 대상의 지원서비스들 중에서 정착과 적응, 육아와 관련된 서비스 이용 실태를 인지, 수혜경험, 만족도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함.
  - 정착도우미, 신변보호담당관, 직업훈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전문상담사, 하나센터 서비스에 대해 대부분 알고 있었으며 수혜 경험에 있는 경우에는 만족도로 대체로 높게 나옴.
    - 신변보호담당관 서비스를 가장 많이 알고, 수혜 경험도 많으며, 만족도도 높음.
    - 면담조사에서는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와서 설문조사 결과를 액면 그대로 수용하기란 한계가 있음.

## 마. 기타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 실태

- 일반 국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육아지원정책에 대해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인지, 수혜경험, 만족도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함.
  - 자신이 직접 수혜를 받은 정책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 만족도도 높음.
    - 고운맘카드와 출산장려금은 잘 알고 있으며 수혜 경험자도 많음.
    - 아이돌보미, 드림·위스타트 사업에 대해서는 각각 52.0%, 87.0%가 모른다고 응답함. 면담조사에서도 드림·위스타트 지원서비스를 받은 가정은 3사례 정도임.
    - 한부모 가정이 많은 탈북가정이지만, 면담조사에서 한부모 가정 지원서비스를 받은 가정은 한 사례뿐이었음.

## 5. 북한이탈주민 영유아 자녀양육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 탈북가정 및 탈북모의 영유아 자녀양육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 탈북가정 법적 개념 정의 필요
    - 현행 법령은 개인단위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탈북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탈북가정을 위한 정책 수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부모교육 확대 및 강화

- 하나원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부모교육 실시하며, 탈북남성에게도 동일하게 제공해야 함.
- 부모교육의 참여도와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취업교육과 연계해서 실시할 것을 제안함.
- 북한이탈주민이 밀집해 있는 아파트 게시판이나 격월로 발행하는 「동포사랑」 잡지를 부모교육 홍보의 장으로 적극 활용하여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함.
- 부모교육은 부모-자녀, 부부 관계 내용뿐 아니라 한국의 사회, 문화(양육 문화), 역사 등의 내용도 포함하여 부모교육을 통해 남한사회 전반을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여 실시함.
- 영유아 자녀 부모용 양육지침서나 부모교육 매뉴얼을 제작하여 하나원이나 하나센터, 사회복지관 등에 보급

－ 영유아 자녀가 있는 탈북모는 보호기간 5년을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설치할 필요가 있음.

□ 탈북가정 영유아 자녀의 적응지원을 위한 정책방안

- － 북한태생 또는 중국(제3국) 태생 영유아의 경우 초기 적응 시, 영양지원 및 언어지원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 현재 하나센터 초기집중교육 대상자에서 유아가 제외되어 있으나, 중도 입국한 탈북가정 유아대상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함.

□ 원장·교사의 탈북가정과 영유아 자녀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정책방안

- － 탈북가정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의존도가 높으므로, 북한이탈주민이 밀집해 있는 지역의 어린이집·유치원 원장(또는 교사)을 대상으로 탈북가정과 영유아 자녀 특성에 대한 정보 또는 교육을 제공할 것을 제안함.
- － ‘지역협의회’에 육아지원기관 원장 참여를 활성화
  - 운영의 실효성을 위해서 지역협의회 산하의 실무분과(또는 실무협의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함.

## □ 지역사회 차원의 탈북가정 영유아 자녀양육 지원방안

-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예: 드림스타트 사업)과 탈북가정 연계 구축
  - 이를테면, 취업모 자녀 대상의 서울시의 아이돌보미 바우처 사업은 예산 부족과 본인부담비용으로 탈북가정이 쉽게 이용하지 못하는데, 북한이탈 지원재단이나 관내 하나센터에서 해당 사례를 발굴하여 이들 가정과 아이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을 연계하고 비용지원을 하도록 함.
-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책자 등으로 만들어서 하나원이나 하나센터에서 보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

## □ 현행 거주지 배정 제도 검토

- 거주지 환경은 곧 자녀양육환경이기도 함. 현행 북한이탈주민을 특정지역의 특정 주거지에 밀집시키는 정책은 남한사람들과의 교류를 제약하고, 자녀를 남한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탈북부모의 희망에 부응하지 못하는 기제가 될 수 있음.
- 하나원에서 거주지 배정 시, 밀집거주방식의 장단점을 알려주고 선택할 수 있도록 제안함.
- 현재 거주분산을 위해 지방거주 신청자에게 가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임대아파트 외의 빌라나 연립주택 신청자에게도 가산금을 지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남한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주요 특징 중에 하나가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이 중에서도 20~30대가 주류를 이룬다는 사실이다. 여성탈북민은 1998년 이전에는 12%에 불과하였으나 2002년을 기점으로 남성탈북민 수를 추월하면서 2005년에는 69%, 2006년 75%, 2007년 78%, 2011년 77%(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홈페이지, 각년도)가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 또한, 남녀 탈북민의 연령대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20대 27.0%, 30대 29.1%, 40대 25.7%가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는 반면, 여성의 경우는 30대가 45.3%로 가장 많고 20대 31.3%, 40대 15.5% 순으로 30대와 20대 여성탈북민이 차지하는 비율이 76.6%에 이른다(통일부, 2005; 박정란, 2009 재인용).

본 연구는 여성 탈북민이 다수를 차지하며, 이들 중에서도 20대~30대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에 주목하고자 한다. 새터민 여성들의 대부분은 가임기 여성으로서, 이들 여성에게 있어 출산과 양육은 불가분 관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기 때문이다. 새터민 여성의 북한 최종학력이 고등중학교—북한 의무교육의 최종단계로서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졸업에 해당됨—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데(이윤진 외, 2011;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0; 장명림 외 2009) 고등중학교를 졸업하는 연령이 16세이므로, 탈북 전에 북한에서 결혼을 했을 확률이 높다. 박정란 연구(2009)에서 탈북 후 “여성 탈북자들은 제3국 체류기간이 남성에 비해 길어지면서 제3국 체류 시 형성된 배우자 관계와 자녀 출산, 그리고 그 이전 북한에서의 원배우자와 자녀 출산, 남한 입국 이후 새로운 가족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미 지적된 바와 같이, 실제 새터민 가정은 복잡한 가족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상당히 많다. 2010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현재 배우자를 묻는 질문에서 탈북 남성은 북한출신 73.3%, 조선족 10.9%, 한족 10.4%로 북한 출신의 배우자가 월등히 많았다면, 탈북 여성은 조선족 36.5%, 북한사람 27.6%, 남한 사람 23.5%로 비교적 고른 특징을 보였다. 이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탈북, 제3국 체류, 남한 입국 그리고 정착

과정에서 몇 차례결혼, 동거 그리고 별거, 이혼과 같은 순탄치 않는 삶을 살았음을 시사한다. 윤인진의 연구는 이를 뒷받침해 준다. 현재 동거하고 있는 사람이 남성은 아내(73.0%)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여성은 자녀(67.1%)와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윤인진 외, 2006). 실제로 많은 새터민 여성들이 북한에서 출산한 경우가 많으며, 제3국 체류동안에도 출산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남한 입국 후에도 출산을 하는 사례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바로 이 지점이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정'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데 결혼이민자 다문화 가정은 결혼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원가족을 이룬다면, 북한이탈주민가정의 원가족은 북한에서 이미 형성된 경우가 많고, 탈북을 하면서 원가족이 깨지고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출산한 자녀들은 대개 탈북 여성(어머니)이 책임지게 된다.

한편, 일부 탈북 여성은 탈북 전후, 제3국에서 장기체류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남한에 입국해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가족을 잃거나 다시 북송되거나 때로는 인신매매로 팔려가는 등 형언하기 힘든 수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면서 신체적 외상 외에도 정신적·심리적 트라우마(trauma)를 입게 된다. 이렇게 형성된 트라우마는 쉽게 소멸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남한사회의 적응과 정착에 장애요인으로 오랫동안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탈북 가정은 전형적인 저소득 취약계층이다. 장명림 외(2009)연구에서 80%이상이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으며, 근로를 한다고 하더라도 월 급여가 100만원 이하가 47.3%, 101~150만원 이하가 33.1%로서 월소득 150만원 이하인 가정이 80%를 차지한다(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2011). 그런데 기존연구에서 소득이 낮을수록 어머니의 자존감과 결혼만족도는 낮고, 우울증과 양육스트레스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양육스트레스를 제외한 자존감, 결혼만족도, 우울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장명림 외, 2009). 이는 소득수준이 어머니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탈북 과정에서 정신적 외상(트라우마)의 상처를 입은 탈북 여성이 남한에 와서 경제적 어려움이란 이중 삼중고를 겪으면서 일반 저소득 가정의 어머니가 보여 준 낮은 자존감과 결혼만족도, 높은 우울감과 양육스트레스 보다 더 심각한 수준의 심리적, 정신적 어려움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장혜경 외(2000)연구에서 가족단위의 정착이 남한사회 적응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역할수행자는 다름 아닌 여성(부인 또는 어머니)라 밝힌 바 있다. 이주민의 관점에서 정착 초창기의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

리느냐의 관건은 여성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sup>1)</sup> 북한이탈주민 영유아 자녀의 주양육자는 대부분이 어머니(장명림 외, 2009)이므로 어머니의 누적된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있다면, 자녀양육을 하면서 고스란히 전달될 가능성이 높고 결국 자녀의 성장발달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양육실태와 어려운 점을 면밀하게 고찰하고 이에 따른 자녀양육지원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복잡다단함을 면밀히 조사하여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형성과 해체, 재구성에 따른 특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또 자녀양육을 둘러싸고 있는 양육환경과 자녀양육의 있어서 장애물은 무엇인지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양육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 2.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 다루는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추이 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제도와 정책 및 지원사업 현황을 고찰하여 문제점과 한계점을 드러내고, 개선점을 모색하고자 했다. 특히, 2010년도는 관련 법률의 대폭 개정으로 인해,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개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설립 등 정착체계의 일대 변화를 가져온 시기로서 관련해서 많은 정책변화가 있었다. 정책 변화의 방향성, 주요 목적과 내용 등을 고찰하였다.

둘째, 관련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였다. 선행연구는 주제별로 분류하기가 쉽지 않아서 연구를 수행한 주체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내용은 정착과 적응, 육아, 탈북여성, 취업 등이다. 이론적 논의는 크게 돌봄노동(육아)과 빈곤화, 이주민 여성의 가족관계 및 결혼만족도, 이주민의 정체성 등으로 나뉘어서 고찰하였다. 선행연구 분석과 이론적 논의 고찰은 향후 자녀양육 지원방안의 다양하고 풍부한 제시를 위한 근거로 활용하고자 한다.

셋째, 영유아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가정 특성을 면밀히 고찰한다. 원가족 형성 및 해체 시기, 제3국 체류 동안 결혼 및 자녀 출산 여부, 입국 후 결혼 및 자녀출산 여부, 가족구성원 간의 이질성(예: 성(姓)이 다른 자녀) 정도, 현재

---

1) II장에서 상술함.

배우자(남편) 동거 여부 및 결혼상태, 가구소득, 취업활동 상태 등을 파악하고, 현재 남한에서의 만족도를 알아본다.

넷째,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 자녀양육 실태를 파악한다. 영유아 자녀를 둘러싼 물리적인 양육환경 특성, 주양육자의 심리·정서적 특성, 결혼상태 등을 살펴본다. 자녀양육의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가정내 양육과 육아지원기관 이용으로 구분해서 고찰한다. 가정내 양육에서는 출산 이유, 출산 비용, 남편의 양육참여도 정도, 가사분담 정도, 대리양육자의 유무, 대리양육자의 지원 정도로 아울러 파악한다. 육아지원기관 외에 지역사회 및 공적 체계 차원에서 제공하는 교육·보육서비스 종류와 이용 실태를 알아본다.

다섯째, 지금까지 고찰한 내용을 토대로 북한이탈주민의 영유아 자녀양육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 3. 연구방법

#### 가. 문헌연구

통일부를 비롯한 유관 부처가 발행하는 각종 통계자료, 운영편람, 실태조사 보고서 등을 수집, 분석한다. 북한이탈주민 연구를 하고 있는 육아정책연구소, 통일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등에서 수행한 연구보고서 중에서 본 연구주제와 관련된 연구보고서를 수집, 분석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보고서들은 주로 초등학교 이후 탈북 청소년의 교육을 다뤘기 때문에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관련된 개인연구들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심층면담조사의 내용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기존의 실태조사 보고서나 자녀양육 연구자료들을 활용하고자 한다. 특히, 2009년도의 장명립 외 연구는 영유아 자녀 가정에 초점을 맞춰 실시한 육아 실태조사이므로 본 연구에서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

#### 나. 심층면담조사

현재 영유아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모를 대상으로 총 30사례의 심층면담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참여자(피면담자) 선정 시, 영유아 자녀의 아버지의 출

신 국가를 가족유형을 분류하는 준거로 삼았다. 기존 관련 실태조사에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조선족출신 배우자와의 가족형태가 가장 많고, 북한 출신 배우자 순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반영하여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참여자(피면담자)는 기존 연구에서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원하는 조건을 갖춘 사례(예를 들어, 배우자가 남한사람인 사례 또는 육아지원기관과의 갈등을 겪고 있는 사례 등)를 의뢰해서 소개받는 방식의 유의표집 하였다.

심층면담조사 대상자의 다수는 함북출신, 북한에서 학력은 고등중졸자들이다. 1990년 중후반 이후에 탈북했으며 가장 최근에 탈북한 연도는 2010년이고 최근 입국년도는 2011년이다. 사례 14를 제외하고는 모두 여성(어머니)이다. 부부와 자녀가 같이 사는 양부모 가정 형태가 15사례로 가장 많았고, 한부모 가정은 12 사례였다. 조부모와 함께 사는 확대가족은 3사례에 그쳤다.

〈표 1-3-1〉 심층면담조사 대상자

사례번호	출생년도	출생지	자녀수	탈북일	입국일	북한학력	북한직업	남한직업	현재가정유형
1	1969	평북	2	2005	2005	고등중졸	농사	주부	양부모가정
2	1966	평북	3	1998	2004	공장대학	장사	주부	양부모
3	1973	함북	2	1997	2006	고등중졸	장사	주부	확대가족
4	1976	평양	2	2005	2005	고등중졸	농사	주부	양부모
5	1973	함남	2	1998	2003	체육대학중퇴	체육대학생	제조업정규직	양부모
6	1968	양강도	2	2004	2005	고등중졸	제약회사판매원	주부	양부모
7	1971	함남	1	2005	2006	고등중졸	회사원	前보험설계사	한부모
8	1973	함북	4	2004	2004	고등중졸	기술직	학생	양부모
9	1971	함북	1	1999	2007	고등중졸	탄광회사수출작업	학생	양부모
10	1981	양강도	1	1998	2008	고등중졸	-	주부	양부모
11	1970	함북	2	2006	2006	고등중졸	장마당	주부	양부모
12	1976	함북	3	2005	2006	고등중졸	노동자	주부	확대
13	1973	함북	2	2002	2006	고등중졸	광산업	식당	양부모
14	1971	함북	1	1997	2002	고등중졸	농사	무직	확대

(표 I-3-1 계속)

사례번호	출생년도	출생지	자녀수	탈북일	입국일	북한학력	북한직업	남한직업	현재가정유형
15	1978	함북	2	1998	2003	고등중졸	-	판매원	한부모
16	1978	함북	2	1998	2005	고등중졸	선전대	대학생	한부모
17	1979	양강도	3	2001	2006	고등중졸	-	前결혼 정보회사	한부모
18	1981	함북	1	2004	2007	고등중졸	미싱사	대학생	한부모
19	1973	함북	2	2000	2004	고등중졸	육상 선수	사무 보조원	한부모
20	1973	함북	2	1997	2002	고등중졸	제품 검사	-	한부모
21	1971	함북	1	1997	2008	농업전문학교	-	前식당일	양부모
22	1972	함남	2	1997	2007	고등중졸	방직	前전자제 품검사	양부모
23	1975	함남	3	1999	2003	고등중졸	농사	주부	양부모
24	1983	양강도	1	2010	2011	고등중졸	학생	주부	한부모
25	1979	함북	1	1998	2006	고등중졸	학생	생활용품 판매	양부모
26	1975	함북	1	1999	2007	고등중졸	-	학생	한부모
27	1973	함북	1	2003	2006	고등졸	노동자	주부	한부모
28	1972	함북	1	2002	2007	대학졸	소학교 교사	보건소 근무	한부모
29	1981	함북	1	2006	2006	고등중학교	여군	-	양부모
30	1977	함북	2	2007	2007	고등중학교	이발사	편의점 알바	한부모

주: 자녀수는 현재 동거하고 있는 자녀수임.

주요 면담내용은 다음 <표 I-3-2>와 같다(부록 1 참조).

<표 I-3-2> 심층면담조사 주요 내용

구분	질문 내용
일반적 특성	- 출생년도, 출생지, 북한에서 학력, 직업 등 - 탈북 및 입국 시기, 현재 가족구성원, 가족수, 건강 정도 등 - 남한에서의 직업, 소득, 기초생활수급여부, 학업 경험 여부 등
결혼에 대한 질문	- 북한에서 결혼 유무, 결혼년도, 이혼여부 등 - 탈북 시 배우자 또는 자녀 동반 여부, 탈북과정 등 - 제3국에서 혼인생활 여부 - 현재 동거 배우자 유무

(표 I-3-2 계속)

구분	질문 내용
영유아 자녀 이외 자녀에 대한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생국가, 출생년도, 성별, 입국 시 연령, 학교적응 정도, 학업성취도 정도 등</li> <li>- 영유아기를 남한에서 보내는 지 여부, 양육의 어려움</li> <li>- 이 아이의 생부에 관한 질문(국적, 연령, 나이, 동거여부등)</li> <li>- 생부가 해당 자녀 출산 인지 여부, 자녀양육 도움 정도</li> <li>- 양육 시 가장 어려운 점</li> </ul>
영유아 자녀의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한에서의 출생 여부, 출산 이유</li> <li>- 해당 자녀의 출생년도, 성별, 질병 및 장애</li> <li>- 이 아이의 생부에 관한 질문(국적, 연령, 나이, 동거여부 등)</li> <li>- 출산 비용 정도, 부담정도, 산모도우미(아이돌보미) 서비스 경험 여부, 출산 및 육아물품 제공처 유무, 출산과 양육관련 정보획득 경로</li> <li>- 주양육자, 대리양육자 유무,</li> <li>- 육아지원기관 이용 실태: 이용기관종류, 이용시기, 이용이유, 기관선택기준, 기관변경 여부·횟수·이유 등</li> <li>- 기타 사교육 이용 실태, 양육관련 정보 획득 경로</li> </ul>
미래에 대한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생활 만족도, 어떠한 품성을 지닌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하는 지</li> <li>- 희망하는 자녀 최종 교육단계, 희망하는 자녀의 직업</li> <li>- 본인(어머니)이 희망하는 직업</li> <li>- 희망하는 정부의 양육지원정책에 대한 의견 등</li> </ul>

〈표 I-3-3〉 심층면접조사 대상자의 결혼 및 출산 현황

구분	결혼 횟수(○) 및 배우자 국적				자녀 출생국(동거 ○, 비동거×)		
	북한	한족	조선족	남한	자녀1	자녀2	자녀3
1	○		○		북한(○)	북한(×)	남한(○)
2	○	○			중국(○)	남한(○)	남한(○)
3	○		○		북한(사망)	중국(○)	남한(○)
4	○				남한(○)	남한(○)	-
5			○		남한(○)	남한(○)	-
6	○		○		북한(○)	남한(○)	-
7	○			○	북한(×)	남한(○)	-
8	○(사망)			○	북한(○)	남한(○)	남한(○), 임신중
9			○	○	중국(사망)	중국(×)	남한(○)
10			○			남한(○)	
11	○				북한(○)	남한(○)	
12	○		○		북한(○)	남한(○)	남한(○)
13			○		중국(○)	남한(○)	
14		○				남한(○)	

(표 I-3-3 계속)

구분	결혼 횟수(○) 및 배우자 국적				자녀 출생국(동거 ○, 비동거×)		
	북한	한족	조선족	남한	자녀1	자녀2	자녀3
15				○	남한(○)	남한(○)	
16				○	남한(○)	남한(○)	
17			○	○	중국(×)	중국(×)	남한(○)
18					남한(○)		
19			○		남한(○)	남한(○)	
20	○				남한(○)	남한(○)	
21			○		남한(○)		
22			○	○	중국(×)	남한(○)	
23				○	남한(○)	남한(○)	남한(○)
24	○				북한(○)		
25				○	남한(○)		
26		○			남한(○)		
27				○	남한(○)		
28	○				남한(○)		
29				○	남한(○)	임신중	
30	○				북한(○)	남한(○)	

다음 <표 I-3-4>는 <표 I-3-3>의 자녀 중에서 영유아 자녀만을 뽑아서 이들 자녀의 인구학적 일반 현황 및 현재 육아지원기관 이용 여부 및 다니기 시작할 시기 등을 정리한 내용이다. 탈북가정의 영유아 자녀들은 남한출생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며 사례 24만 북한태생이었다.

<표 I-3-4> 심층면접조사 대상자의 영유아 자녀 현황 및 육아실태

구분	영유아 자녀 일반 현황					육아지원기관 이용 여부 및 시작시기	
	해당 자녀수	출생년도	성별	출신지	건강상태		
1	1	2007년	남	남한	허약	이용함	생후18개월
2	1	2007년	남	남한	건강	이용함	생후12개월
3	1	2008년	여	남한	건강	이용함	생후36개월
4	2	2006년	남	남한	허약	이용함	-
		2009년			건강		
5	1	2010년	남	남한	건강	이용함 (사립유치원)	-
6	2	2008년	여	남한	건강	이용함	생후7개월
7	1	2008년	여	남한	정서불안	이용함 (사립유치원)	생후2살

(표 I-3-4 참조)

구분	영유아 자녀 일반 현황					육아지원기관 이용 여부 및 시작시기	
	해당 자녀수	출생년도	성별	출신지	건강상태		
8	2	2006년	여	남한	건강	이용함	생후8개월
		2008년					
9	1	2010년	남	남한	허약	이용함	생후6개월
10	1	2012년	여	남한	건강	미이용	-
11	1	2009년	여	남한	건강	이용함	생후15개월
12	2	2007년	남	남한	건강	이용함	생후 2살
		2011년	여	남한	건강	미이용	-
13	1	2008년	남	남한	질병	이용함	생후 3개월
14	1	2009년	여	남한	허약	이용함	생후12개월
15	1	2006년	여	남한	건강	이용함 (병설유치원)	생후 4살
16	1	2006년	남	남한	건강	이용함	생후18개월
		2007년					-
17	1	2009년	여	남한	건강	이용함	생후4개월
18	1	2012년	남	남한	건강	미이용	-
19	2	2007년	여	남한	건강	이용함	생후3살
		2009년					-
20	1	2006년	남	남한	ADHD	이용함	생후12개월
21	1	2009년	남	남한	산만함	이용함	생후 3살
22	1	2011년	남	남한	건강	미이용	-
23	2	2006년	여	남한	건강	이용함	생후12개월
		2012년					생후8개월
24	1	2009년	남	북한	건강	이용함	생후3살
25	1	2009년	여	남한	건강	미이용	-
26	1	2010년	남	남한	건강	이용함	-
27	1	2009년	여	남한	건강	미이용	-
28	1	2007년	남	남한	건강	이용함	생후10개월
29	1	2007년	남	남한	건강	이용함	생후3살
30	1	2008년	남	남한	건강	이용함	-

주: 기관이용에서 유치원 이용은 ( )로 별도 표시하고, 나머지는 어린이집 이용임.

기관 이용시기에 미표시 사례는 면담결과에 나타나지 않은 경우임.

#### 다. 설문조사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영유아 자녀가 있거나 영유아기를 남한에서 보낸 자녀가 있는 탈북모를 100명을 대상으로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조사를 실시

하였다. 설문조사는 연구진이 직접 실시했으며, 1:1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해당 사례의 표집은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으로 이루어졌으며 설문조사 실시기간은 8월 22일~8월 27일이다. 설문문항은 다음 <표 1-3-4>와 같다. 설문지 항목 중 주양육자의 자아존중감, 결혼만족도,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 항목은 장명림 외(2009) 연구에서 일반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지를 연구결과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그대로 활용하였다.

<표 1-3-5> 설문지 항목

구분	항목
주양육자의 일반 특성	- 연령, 탈북년도(최초), 입국년도, 국민기초생활수급 여부 - 남한에서의 직업, 월 가구소득, 배우자 국적(영유아자녀의 아버지), 현재 결혼 상태, 현재 동거가족 구성원
주양육자의 양육 특성	- 자아존중감, 결혼만족도,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자녀의 일반 특성	- 연령, 출생국가, 영유아기를 남한에서 보낸 여부, 건강 상태, - 현재 다니고 있는 육아지원기관 및 학교 -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자녀별), 가장 걱정되는 발달단계(자녀별), 해당 자녀의 생부 국적
관련 지원정책 인지 및 수혜 정도	- 정착도우미, 신변보호담당관, 직업훈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전문상담사,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출산장려금, 고운맘 카드, 아이돌보미(산후도우미), 드림/위스타트 사업, 학습지바우처, 어린이집미이용 양육수당 등의 인지, 수혜경험, 만족도, 자녀양육과 연계 정도의 도움 정도
육아지원정책 관련	- 부모교육 수혜 여부 및 희망 여부, 육아정보 도움받는 기관 및 사람, 희망하는 육아정보 제공방법

조사대상의 특성을 살펴보면, 거주지역이 서울이 90%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경기도 6%, 기타가 4%로 정도였다. 조사대상은 어머니였고, 30대가 58%로 가장 많았으며, 40대가 32%, 20대가 10%였다. 남한 거주기간은 '6년 이상 11년 미만'이 6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5년 이하'가 19%, '11년 이상'이 15%를 차지하였다.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경우가 55%로 절반 이상이었고, 월수급액을 보면 '60만원 이상 90만원 미만'이 21%, '90만원 이상'이 19%, '60만원 미만'이 15%로 나타났다. 월 가구소득은 '51-100만원'이 36%로 가장 많았고, '50만원 이하' 21%, '201만원 이상' 17%, '101-150만원'과 '151-200만원'은 13%로 동일한 비율을 보였다. 영유아 자녀 아버지의 국적을 살펴보면, 북한출신

이 44%로 가장 많았고, '조선족'은 27%, '남한'은 25%로 유사한 비율을 보였으며, '한족 및 기타'도 4% 정도였다. 현재 배우자와 같이 살고 있는 경우가 60% 정도였으며, 총 가족 수는 3명이 49%로 절반 정도를 차지하였고, 4명이 23%, 2명이 21%, 5명 이상도 7% 정도였다. 영유아 어머니는 주부가 78%로 대다수였고, 취업상태가 17.0%, 무직인 경우가 83.0%로 나타났다.

〈표 1-3-6〉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명)	
구분	백분율(수)	구분	백분율(수)
전체	100.0(100)	전체	100.0(100)
지역		월 가구소득	
서울	90.0( 90)	50만원 이하	21.0( 21)
경기도	6.0( 6)	51-100만원	36.0( 36)
기타	4.0( 4)	101-150만원	13.0( 13)
자녀와의 관계		151-200만원	13.0( 13)
부	0.0( 0)	201만원 이상	17.0( 17)
모	100.0(100)	배우자 국적	
만 나이		북한	44.0( 44)
20대	10.0( 10)	남한	25.0( 25)
30대	58.0( 58)	조선족	27.0( 27)
40대	32.0( 32)	한족 및 기타	4.0( 4)
거주기간		현재 결혼 상태	
5년 이하	19.0( 19)	배우자와 동거	60.0( 60)
6년 이상 11년 미만	66.0( 66)	배우자와 별거/이혼	40.0( 40)
11년 이상	15.0( 15)	총 가족수	
현재국민기초생활수급여부		2명	21.0( 21)
받고 있음	55.0( 55)	3명	49.0( 49)
받고 있지 않음	45.0( 45)	4명	23.0( 23)
현재국민기초생활수급액(월)		5명 이상	7.0( 7)
60만원 미만	15.0( 15)	현재 직업 유무	
60만원 이상 90만원 미만	21.0( 21)	취업	17.0( 17)
90만원 이상	19.0( 19)	무직	83.0( 83)
받고 있지 않음	45.0( 45)		

설문조사 응답자 100명의 자녀수는 총 152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들의 일반특성을 보면, 만 3세~만5세의 유아가 26.2%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 저학년이 22.4%, 만 2세 미만의 영아가 21.1% 순으로 나타났다. 출생국가는 남한이 약 70%로 다수를 차지했다. 연령이 어린 자녀는 남한에서 태어나는 경우가 대부분

임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자녀의 생부는 북한출신이 46.7%로 가장 많고, 중국과 남한 출신 순으로 집계되었다. 남한남자와의 결혼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자녀양육시 가장 어려웠던 점은 '경제적 어려움'이 54.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학습지도의 어려움, 민고 맡길만한 기관 및 대리양육자의 부재, 북한과 다른 남한의 양육문화 등을 꼽았다. 자녀의 걱정되는 발달단계는 신체발달과 언어발달을 주로 응답했으며 사회성과 정서발달도 비슷한 응답율을 보였다. 인지발달의 우려는 크지 않았다. 이용하고 있는 육아지원기관은 어린이집(국공립과 민간어린이집 합쳐서)이 46.7%로 가장 많았고 미이용 상태가 19.1%로 다음으로 많았고, 병설유치원을 포함해서 유치원 이용은 6.6%에 그쳤다.

〈표 1-3-7〉 설문조사 응답자 자녀의 일반특성 및 양육현황

		단위: %(명)	
구분	백분율(수)	구분	백분율(수)
전체	100.0(152)	전체	100.0(100)
연령(만나이)		자녀를 키우며 어려웠던 점	
0세-2세	21.1( 32)	북한과 다른 남한 양육문화	12.5( 19)
3세-5세	36.2( 55)	경제적 어려움	54.6( 83)
6세-8세	22.4( 34)	학습지도의 어려움	14.5( 22)
9세-11세	7.9( 12)	순탄치 않은 부부관계	0.0( 0)
12세-14세	8.6( 13)	어린이집 또는 학교 부적응	2.6( 4)
15세-17세	2.6( 4)	부모와의 대화 단절	0.7( 1)
18세 이상	1.3( 2)	민고 맡길만한 기관/대리양육자 부재	10.5( 16)
출생지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선입견	1.3( 2)
북한	12.5( 19)	결측값	3.3( 5)
중국	17.1( 26)	해당자녀 양육시 걱정되는 발달단계	
남한	70.4(107)	신체발달	25.0( 38)
건강상태		인지발달	7.9( 12)
건강함	88.8(135)	언어발달	22.4( 34)
허약함	11.2( 17)	사회성발달	19.1( 29)
이용 중인 기관		정서발달	18.4( 28)
국공립어린이집	25.0( 38)	결측값	7.2( 11)
민간어린이집	21.7( 33)	아버지 국적	
공립병설유치원	3.3( 5)	북한	46.7( 71)
사립유치원	3.3( 5)	중국	28.3( 43)
초등학교	16.4( 25)	남한	23.7( 36)
중고등학교	6.6( 10)	기타	1.3( 2)
대학교	1.3( 2)		
기타	3.3( 5)		
미이용	19.1( 29)		

## 라. 현장전문가 자문회의

탈북가정의 영유아가 다니고 있는 육아지원기관의 원장을 대상으로 탈북 가정의 양육실태와 탈북 영유아들의 기관에서의 생활 등을 파악하였다. 이들 자녀가 기관에서 지내면서 부적응 사례는 없는 지, 일반 가정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실제 지원하는 서비스는 무엇이며, 필요한 정책은 무엇인지 등을 알아보았다.

〈표 1-3-8〉 현장전문가(원장) 자문회의

구분	소속기관	실시시기
1	국공립 어린이집	2012. 9
2	법인 어린이집	
3	민간어린이집	

## 마. 전문가 자문회의

연구방향에 대한 자문, 도출한 정책방안에 대한 검토 및 자문을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한다.

## 4. 용어정의 및 연구의 제한점

본고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지칭하는 용어로 탈북민, 새터민 등을 혼용해서 사용하였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가정과 탈북가정을, 북한이탈주민 여성을 탈북여성, 탈북모 등으로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으로 조사 대상자를 표집했기 때문에 조사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는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 II. 연구배경

본 장에서는 북한이탈주민 관련 지원제도를 현행 법령과 정책 중심으로 분석하고, 본 연구주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였다. 북한이탈주민 가정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배경지식으로 이민자 가정, 이민자 여성, 여성의 돌봄 등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제시하였다.

### 1. 정착지원제도

#### 가. 관련 법령

〈표 II-1-1〉 북한이탈주민 관련 법령 변천과정

지원법률	시기	내용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	1962. 4.~	귀순자에게 국가유공자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여 원호대상자로 우대하며, 최초로 체계적인 지원 실시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	1979. 1.~	정부는 귀순자를 사선을 넘어 자유민주주의를 택한 '귀순용사'로 간주하며, 이전보다 더욱 체계화된 지원 실시
귀순북한동포 보호법	1993. 6.~	귀순자를 국가유공자에게 생활능력이 결여된 생활보호대상자로 전환하며, 정착금 하향조정 등 지원규모를 대폭 축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1997. 7.~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의 방향을 '보호'에서 '자립·자활 중심'으로 심화하기 위하여 전문자격을 인정하고, 취업보호기간을 확대하는 등 이들의 직업능력과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

자료: 김선화·윤여상·허영철(2010).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정착지원 활성화 방안」. p.26.

현재 북한이탈주민 대상의 주요 법령은 1997년에 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동 법령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법령이 있었으나(표 II-1-1 참조) 1990년대 이후부터 증가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유입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장기적 생활 안정대책 수립을 위해 법률개

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김선화·윤여상·허영철, 2010: 26) 새로운 법령이 제정되었다. 동 법령은 이후 몇 차례 개정되었고, 최근 개정은 2010년 3월 26일에 이루어졌다. 동 법령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제1조 목적) 있다. 남한사회와 전혀 다른 이념과 체제에서 살아왔던 북한이탈주민이 하루 속히 남한에서 ‘잘’ 적응하기 위해 모든 생활 영역을 지원한다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법령에서 명시한 ‘보호’차원을 넘어서 남한사회에서 자립·자활을 위한 ‘정착지원’에 보다 강조점을 두고 있다.

우리 정부는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제3조 적용범위)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특별히 보호를 하는 데(제4조 기본원칙) 보호기준은 원칙적으로 개인 단위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대 단위로 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정착지원시설(하나원)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sup>2)</sup>, 거주지에서 보호 기간은 5년이다(제5조 보호기준 등).

한편, 2010년 3월 법률개정을 통해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서비스 수준에 일정한 변화를 가져왔다는(김선화·윤여상·허영철, 2010: 34) 평가를 받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고려하여 심리 및 진로상담·생활정보제공, 취업 및 사회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성있는 기관, 단체, 시설을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제15조의2(지역적응센터의 지정) 신설), 전문상담사제도를 도입하여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다(제22조의2 신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탈북민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 세금을 일정 범위 내에서 감면해 주거나(제17조의 4 시설), 공공기관에서 탈북민을 채용할 경우 기관평가 시 우대하는(제18조의2 신설) 조항을 제정하였다. 성인뿐 아니라 탈북 청소년들이 일반학교에 진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착지원시설(하나원) 내에 예비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4조의2 신설). 무엇보다도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종전의 북한이탈주민후원회를 폐지하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설립이다.

2) 현재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의 교육시간은 12주 420시간이다(통일부, 2012: 16).

〈표 II-1-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 신설 및 개정 법조항

신설 또는 개정 조항	신설 또는 개정 내용
제15조의2(지역적응 센터의 지정) 신설	통일부관은 거주지에서의 적응교육과 북한이탈주민 특성을 고려한 심리 및 진로상담, 생활정보제공, 취업서비스 안내 및 사회서비스 안내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성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지역적응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제17조의4(세제혜택) 신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하거나 조세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제18조의2(공공기관 평가 반영) 신설	공공기관에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평가 시 북한이탈주민 고용률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
제22조의2(전문상담 사제도 운영) 신설	통일부장관은 거주지에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전문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상담사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상담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제24조2(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의 설립) 신설	통일부장관은 탈북 청소년의 일반학교 진학을 위하여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착지원시설 내에 예비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함.
제26조4(자금의 대여) 신설	보호대상자는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에 있어 특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제30조(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종전의 북한이탈주민후원회를 폐지하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설립하도록 함.

자료: 김선화·윤여상·허영철(2010).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정착지원 활성화 방안」. p.35.

## 나. 관련 정책

정착지원시설(하나원)에서 퇴소 후, 거주지를 배정받으면 북한이탈주민에게 기본적으로 주거, 의료, 취업 등을 위한 지원금이 지급되며 다양한 정착지원서비스가 제공된다.

### 1) 정착금지급

거주지를 배정받은 북한이탈주민에게 정착금이 지급된다. 정착금은 기본금과 가산금이 있다. 현행 기본금은 1인 세대 기준으로 총 600만원이 지급되는 데 이중 300만원은 초기지급금으로 하나원 퇴소시 지급되며, 나머지는 300만원은 거주지 편입 후에 1년 동안 분기별로 분할 지급된다. 가산금은 연령, 장애, 한부모

가정, 장기치료로 구분하여 지급되며 거주지정착 1년 이후 4년간 분기별로 지급하며 1세대에 1개 사유만 인정된다(통일부, 2012: 18-19).

〈표 II-1-3〉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단위: 만원

정착금기본금				정착금가산금		
세대원수	초기 지급금	분할 지급금	소계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
1인	300	300	600	연령	만60세이상	720
2인	400	700	1,100	장애	장애등급별	1,540(1급)
3인	500	1,000	1,500			1,080(2-3급), 360(4-5급)
4인	600	1,300	1,900	장기치료	중증질환으로 3개월이상입원	개월×80 (최대 9개월)
5인	700	1,600	2,300			
6인	800	1,900	2,700	한부모가정 아동보호	만13세이하 한부모아동	360(세대당)
7인 이상	900	2,200	3,100			

자료: 통일부(201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 실무편람」. p.19.

## 2) 주거지원금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근거하여 주거를 공급받는다. 하나원은 하나원에서 교육 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받아서 한구토지주택공사와 도시개발공사(SH공사 등)에 임대주택 알선을 요청하여 퇴소 전까지 주택배정을 완료한다(통일부, 2012: 21). 1인 세대 기준으로 1,300만원을 지원하며 세대원 5인 이상 최대 2,000만원까지 주거지원금을 지급한다. 배정받는 주거 규모는 25.7평 이하(85제곱미터)이다.

주거지원금 중 실업주보증금을 제외한 잔액은 5년 후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임채주택 보증금은 통일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도시개발공사의 주택관리부서에 직접 지급한다. 거주지 신청시 특정 지역의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서울시, 경기도, 인천광역시를 제외한 지방거주자에게는 '지방거주장려금'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

〈표 II-1-4〉 북한이탈주민 지방거주 장려금

단위: 만원

구분	기준	금액
지방거주장려금 (2년후 지급)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미지급
	광역시(인천시 제외, 주거지원금의 10%)	130
	기타지역(주거지원금의 20%)	260

자료: 통일부(201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 실무편람」. p.20.

제20조항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은 2년간 통일부장관의 허가없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알선된 주택의 소유권·전세권 또는 임차권 변경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 3) 생계 및 의료급여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사회보장지원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그리고 국민연금이 있다.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자에게 한해서 지급되는 지원이므로 여기서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살펴보겠다. 거주지를 배정 받은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은 생계급여를 받으면서 남한에서의 생활을 시작한다. 정착지원시설(하나원)의 보호가 종료된 경우에도 생활이 어려운 탈북민은 본인 신청 하에 5년 범위 내에서 생계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된다(「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표 II-1-5〉 2012년도 최저생계비 기준

단위: 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최저생계비	553,354 (942,197)	942,197 (1,218,873)	1,218,873 (1,495,550)	1,495,550 (1,772,227)
현금급여기준	453,049	771,408	997,932	1,224,457
가구규모	5인	6인	7인	
최저생계비	1,772,227 (2,048,904)	2,048,904 (2,325,580)	2,325,580 (2,602,257)	
현금급여기준	1,450,982	1,677,506	1,904,031	

- 주: 1)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1인 증가시마다 276,677원씩 가산
- 2) 8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기준: 1인 증가시마다 226,525원씩 가산
- 3) ( )은 근로무능력자 가구에게 적용되는 최저생계비 기준

자료: 통일부(201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 실무편람」. p.64.

생계급여는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 동안은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 해당기간 만료 후(거주지 전입 후 7개월~3년)에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현금을 지급한다(통일부, 2012: 64). 북한이탈주민의 특례 사항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5년, 근로능력자가 있는 가구는 3년을 특례 기간으로 정하고,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주거급여 지급하며 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하다(통일부, 2012: 64).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은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지정되어 의료급여의 혜택을 받는다(「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의료급여법」 제3조 7항; 통일부, 2010: 66).

#### 4) 취업지원 장려금

북한이탈주민에게 취업은 남한사회에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이에 정부는 2006년부터 통일부와 노동부는 정착지 이전 단계인 하나원에서부터 직업훈련의 예비반 성격의 '기초직업적응훈련' 과정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노동부·기업체·직업훈련기관과 협력하여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에 맞추어 '맞춤형 직업훈련-취업연계 프로그램'도 추진하고 있다(김선화·윤여상·허영철, 2010: 40).

정착장려금 차원에서 지원하는 취업지원금은 크게 직업훈련장려금, 자격취득장려금, 취업장려금이 있다. 직업훈련장려금은 거주지보호기간(5년) 중에 총 50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과정을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북한이탈주민에게 '1회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통일부, 2012: 42). 자격취득장려금은 직업훈련을 500시간 이상 수료했거나 독학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자격취득 장려금 20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지급대상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자격기본법」에 근거한 자격을 취득한 경우이다.<sup>3)</sup> 취업장려금은 거주지보호기간(5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북한이탈주민에게는 최대 3년까지 취업장려금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정착 초기 현금 수요를 감안하여 희망자에 한해 1년차 취업장려금 550만원을, 6개월 단위로 250

3)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통일부(201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 실무편람」을 참조 바람.

만원씩 2회 지급받을 수 있는 선택권 부여를 2011년에 새롭게 도입하였다(통일부, 2012: 47). 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 자격증에 시험절차가 도입됨에 따라 자격취득장려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되었으며,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대상 근로자인 공무원, 사학연금 적용자 등의 경우도 취업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신청자가 사업자 대표와 친족인 경우에 취업장려금 지급을 제한하는 범위를 '4촌 이내→1촌 이내'로 개정하는(통일부, 2012: 47) 등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기존의 제한들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었다. 그러나 이상의 취업지원금 정책은 2005년 1월 1일(하나원 70기부터) 이후 입국자에게만 적용된다.

〈표 II-1-6〉 북한이탈주민 정착장려금

구분	기준	금액(만원)	비고
직업훈련 장려금	총 500시간 미만	-	미시간
	총 500시간	120	
	총 500시간~1220시간	120시간×20만원	
자격취득 장려금	*1년과정, 우선선정직종	200	추가지급
	직업훈련장려금 수혜자	200	신청횟수 1회
	독학으로 취득한 자격	200	
취업장려금	6개월 동일업체 취업	250	
	1년차	550	(‘10이전) 450
	2년차	600	(‘10이전) 500
	3년차	650	(‘10이전) 550
총액(최고액) 2,440			

자료: 통일부(201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 실무편람」. p.41.

이외에도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주는 고용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는 고용지원금 지급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다. 그러나 사업주가 고용지원금 혜택을 3년까지 받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이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를 해야 한다(김선화·윤여상·허영철, 2010: 40).

### 5) 학자금 지원

북한이탈주민이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일반대학이나 교육대학은 거주지 보호기간(5년) 중인 만 35세 미만인 사람이 입학할 때 학비지원을 하고 있다. 학비지원의 범위는 본인에 한해 국립대학교는 전액, 사립대학교는 50%이다. 산업

대학과 전문대학, 기술대학, 사이버대학, 기능대학 및 그 이외에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에 입학하는 경우 연령과 관계없이 거주지 보호기간인 5년 이내에 학비를 지원한다. 한편 탈북청소년들의 사회적응, 일반학교 편입 지원을 위해 탈북청소년 특성화 학교인 한겨레 중고등학교를 운영·지원하고 있다(김선화·윤여상·허영철, 2010).

## 6) 거주지에서의 인력지원서비스

우리정부는 거주지 배정 후 이상에서 고찰한 금전적 지원정책 외에도 북한이탈주민이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인력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인력서비스제도로는 보호담당관, 정착도우미, 전문상담사제도가 있다.

우선 보호담당관은 크게 거주지보호담당관, 취업보호담당관, 신변보호담당관으로 구분된다. 거주지보호담당관은 각 지방자치체별로 지정하며 탈북민의 거주지 편입 및 각종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취업보호담당관은 전국 54개 고용센터에 전문 직업상담사로 구성된 취업보호담당관을 지정, 북한이탈주민의 진로지도, 직업훈련, 취업알선 및 상담 등을 담당한다. 신변보호담당관은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약 730명의 신변보호담당관을 지정,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 및 정착지원을 돕는다.

〈표 II-1-7〉 북한이탈주민 지원 보호담당관 종류

구분	내용
거주지보호담당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거주지보호담당관을 지정, 탈북민의 거주지 편입 및 각종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
취업보호담당관	전국 55개 고용지원센터에 전문 직업상담사가 지정, 취업알선 및 상담 등의 역할을 담당
신변보호담당관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약 730명의 신변보호담당관을 지정, 신변보호 및 정착지원활동 담당

자료: 통일부(201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 실무편람」. p.79~81.

다음으로 정착도우미는 2005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기존의 정부중심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이 최초로 민간에게 위탁되어 시행하게 된 사업이다(김선화·윤여상·허영철, 2010: 52).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편입 후 초기 1년간 북한이탈주민 1세대당 정착도우미 1~2명이 전담하여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지원하

는 체계이다. 구체적인 지원업무는 임대주택 계약·입주 절차, 아파트 이용 안내, 입주 전 시설물 점검, 전입 및 생계·의료급여 신청업무 안내, 가계부 작성법, 가전제품 구입 및 사용 안내, 건강관련 안내, 지역사회 편의시설 안내 등이며 월 2회 가정방문 및 전화상담을 실시하는 등 ‘가까운 이웃’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통일부, 2012: 105). 2012년 1월 기준 대한적십자사(14개 지사) 및 종합사회복지관, 하나센터 등 27개 단체 소속 자원봉사자 총 1,500여명이 전국에서 활동 중이다.

끝으로 전문상담사는 2010년부터 도입, 운영되고 있는 가장 최근에 실시하는 인력지원서비스사업이다. 북한이탈주민이 탈북 및 제3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겪은 심리적 충격과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적응 초기부터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도입된 제도이다(김선화·윤여상·허영철, 2010: 54).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표방하는 전문상담사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심리·정서 상담 이외에도 의료·교육·복지·취업지원 등 전문적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필기시험과 면접을 통해 선발된 전문상담사는 집중연수를 받은 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소속되어 하나센터, 정착도우미 사업기관 등 북한이탈주민 지원기관이나 단체에 배치되어 활동하게 된다. 2010년 1월부터 배치되어, 현재 100여명의 전문상담사가 전국 16개 시도에서 활동 중이다(통일부, 2012: 108).

## 7) 거주지에서의 지원 기구

### 가)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하나원 퇴소 후 거주지에서의 체계적인 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2009년도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거주지 적응교육’조항(제15조제2항<sup>4)</sup>)이 신설되었다. 거주지 적응교육과 탈북민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도록 전문성있는 기관, 단체, 시설은 지역적응센터로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2009년도 상반기에 서울북부, 경기서부, 대구 등 3개 지역에서

4)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게 거주지에서 별도의 적응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으며(제15조제2항), 지역적응교육은 거주지 보호기간 중 최초 1년 이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시행령 제30조제3항).

시범사업 실시를 시작으로 2012년 현재 전국적으로 3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표 II-1-8 참조).

〈표 II-1-8〉 전국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30곳

시·도	하나센터	운영단체	소재지
서울 (4)	동부	한적 서울지사(관악봉사관)	관악구 성현동
	서부	가양7종합사회복지관	강서구 가양3동
	남부	한빛종합사회복지관	양천구 신월4동
	북부	공릉종합사회복지관	노원구 동이로
부산	부산	부산YWCA 새터민지원센터	동구 초량3동
대구	대구	북한이주민지원센터	달서구 감삼동
인천(2)	남동	하이사회복지센터	남동구 논현동
	부평	삼산종합사회복지관	부평구 삼산동
광주(2)	서부	광주전남북한이주민지원센터	서구 치평동
	북부	한적광주·전남지사	북구 임동
대전	대전	생명종합사회복지관	동구 판암2동
울산	울산	울산중구종합사회복지관	중구 남외동
경기 (6)	동부	청솔종합사회복지관	성남시 분당구
	중부	군자종합사회복지관	안산시 단원구
	서부	덕유사회복지관	부천시 원미구
	북부	한국청소년가족상담교육원	포천시 소흘읍
	서북부	우림복지재단	고양시 일산서구
남부	평택YMCA	평택시 비전동	
강원(2)	동부	동해지역자활센터	동해시 발한동
	서부	자유총연맹 강원지부 명륜종합사회복지관	춘천시 삼천동 원주시 명륜2동
충북	충북	한적 충북지사	청주시 흥덕구
충남(2)	서북부	천안쌍용종합사회복지관	천안시 서북구
	중남부	자유총연맹 충남지사	공주시 웅진동
전북	전북	전주YWCA	전주시 완산구
전남	전남	한적 광주·전남지사(순천봉사관)	순천시 가곡동
경북(2)	동부	창포종합사회복지관	포항시 북구
	서북부	경북이주민센터	구미시 원편동
경남(2)	동부	한적 경남지사(창원봉사관)	창원시 용호동
	서부	한적 경남지사(진주봉사관)	진주시 상평동
제주	제주	한적봉사회 제주지사협의회	제주시 용담1동

16개 시·도 총 30곳

자료: 통일부(201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 실무편람」. p.78.

요컨대 하나센터는 거주지에서 실시하는 ‘최초 지역적응교육기관’으로서, 초기 3주간 60시간의 집중교육과 1년간 사후지원을 통해 신속한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자활기반 조성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초기 3주간 집중교육으로는 초기 정착지원교육, 진로탐색과 직업준비교육, 개인역량강화교육, 인생설계교육 등이 실시되면 사후 1년간 지원사업으로는 교육 및 진학지원, 진로 및 취업 지원, 생계 및 의료지원 안내, 심리·안정지원, 법률 지원 등이 제공된다(통일부, 2012: 74-75). 하나센터의 주요 목적은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에서의 적응이므로 표준화된 프로그램보다는 지역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겠다. 다음 <표 II-1-9>는 하나센터에서 실시하는 초기집중교육의 예시이다. 참고로 하나센터의 초기집중교육을 받을 수 없는 대상자가 원칙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18세 이하 학생, 65세 이상 고령자, 유아, 주거미배정자 등이다.

하나센터 지정·운영 과정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하나센터의 정착지원 결과의 환류를 통해 지자체의 지원정책과 하나원 교육과정의 지속적인 개선 도모 역시, 하나센터사업 실시의 또 다른 효과라 하겠다(통일부, 2012: 77).

<표 II-1-9>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에서의 초기집중교육 예시

영역	주제	세부내용	교육시간
초기정착 지원교육	일상생활교육	실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및 제도 안내(물건구입, 은행거래, 법률, 경제, 성폭력 등 범죄예방교육 등)	5일 (20시간)
	지역사회이해	지역현황, 정착지원기관, 지역 내 주요기관 소개	
	보호담당관 특강	지역 내 주요기관 탐방(시·도청, 구청, 고용지원센터, 의료기관 등)	
진로탐색 직업준비 교육	근로의욕증진 프로그램	- 생활점검 및 생활설계 - 취업(근로활동) 등 동기와 목적 정리	5일 (20시간)
	직장생활이해	- 직업의 종류와 필요성, 직장문화 등 강의: 대인관계, 갈등해결방법, 의사소통방법 훈련 등 포함	
	직업훈련 프로그램	- 직업훈련프로그램 탐색 및 방문 - 이력서 작성, 모의면접 훈련	
개인역량 강화교육	자기이해	- 자기이해·자아존중감 증진프로그램 - 정신건강 예방교육	3일 (12시간)
	의사소통향상	- 표준말 교육(발음교정, 외래어교육, 의사소통 방법 등): 필요시 1:1 심화교육 지원	
	사회및문화체험	- 지역내 자원봉사활동, 복지시설 방문 - 지역내 문화시설관람 등	

(표 II-1-9 계속)

영역	주제	세부내용	교육시간
인생설계	성공사례소개	- 모범적인 선배 북한이탈주민 또는 내국 인과의 대화 - 인생 성공사례 영상물 상영 등	2일 (8시간)
	초기상담	- 하나원 인계자료와 심층면담을 통한 북한이탈주민의 욕구와 문제, 능력 파악	
	전문가 상담	- 개인별 심층 상담을 통해 인생방향 제시	
합계			15일 (60시간)

주: 초기집중교육 수료자에게는 60시간을 직업훈련장려금 지급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수료기준은 48시간 이상 출석임.

자료: 통일부(201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 실무편람」. p.74.

#### 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1997년에 설립된 재단법인 북한이탈주민후원회가 모태가 되어 2010년 9월 23일에 개정된 법률(「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해서 새롭게 탄생한 재단법인이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2만명 시대에 맞는 범국가적 공감대 형성과 새로운 정착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정착지원체계의 중심축으로서의 정착지원 정책을 실현하고 민간지원 활동의 통합·조정에 책임과 능력을 갖춘 기관을 설립하였다고 재단 설립 목적을 표방하였다(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브로셔, 2010; 김선화·윤여상·허영철, 2010: 59 재인용).

동 법령에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수행해야하는 사업으로는 1)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지원사업 2)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지원사업 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훈련에 필요한 사업 4)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장학사업 5)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전문상담인력의 양성과 전문상담사업 6)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민간단체 협력사업 7)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사업 8)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구축사업 9)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단에 위탁하는 사업 등이 명시되어 있다(동 법령 제30조).

이에 따라 현재 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은 생활안정사업, 자립자활사업, 교육지원사업, 민간단체 지원사업, 연구지원 사업 등이다. 이 중에서 연구지원사업은 지금까지 없었던 사업으로서, 재단 주관 하에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실시하여 북한이탈주민 관련 기초 데이터를 생산하여 더 나은 정책수립에 도움을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음 <표 II-1-10>은 2012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실시하는 사업 중 생활지원사업 내용이다. 본 연구와 관련된 사업으로는 출산지원금과 영유아 보육지원사업을 볼 수 있다. 자녀출산 시 연 1회 30만원 출산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산모도우미 지원서비스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 산모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여성은 일정기간 교육을 받아 산모도우미 또는 영유아돌보미로도 활동할 수 있다. 교육대상은 35~50세 북한이탈주민 여성이다(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홈페이지, 검색일 2012년 10월 24일).

<표 II-1-10>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생활안정 지원사업(2012년)

세부사업명	지원내용
경조사비 지원	- 북한이탈주민 본인 결혼: 10만원 지원 - 북한이탈주민 사망: 직계존비속 등에게 30만원 지원
장제비 지원	-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예산 범위내에서 납골당 안치 지원
<b>출산지원금</b>	<b>- 아이 출산 시 30만원 연 1회 지원</b>
의료비 지원	- 비급여 항목 등 본인부담액의 40%내에서 지원하되, 연1회 200만원 한도 - 중증질환의 경우 비급여 항목 등 본인 부담액의 50%내에서 지원하되, 횟수와 상관없이 연 최대 500만원
장기이식 지원	- 장기이식 환자(간, 심장, 췌장, 신장)의 경우 연 1회에 한해 지원하되, 본인 부담액의 50% 한도 내에서 최고 1,000만원
문신제거비 지원	- 얼굴, 팔, 다리 등 노출된 부위에 한정하며, 치료비 본인부담액 중 70%를 지원하되 1인 1회 지원 최대 70만원
<b>영유아 보육지원</b>	<b>- 북한이탈주민 여성이 출산할 경우 산모도우미 지원 (한 가정당 30일 지원)</b> <b>- 아동이 있는 가정에 학습지 교사 파견으로 학습지원</b>
장학사업	- 장학금 신청기준 및 지급금액 대학원생: 직전학기 성적 75/100 이상 대학생: 직전학기 성적 75/100 이상 중·고생: 정규과정의 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료: 통일부(201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 실무편람」. p.101.

다)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의 구성 목적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의 지방위임에 대비한 지역사회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지역 정착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 정착지원을 위한 지역별 특화프로그램

운영 등에 있다(통일부, 2012: 82). 법적근거는 시행령 제42조의 2(지역협의회 설치·운영), 거주지보호지침 제14조(지역협의회 구성·운영)이며, 북한이탈주민 밀집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지역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특히, 북한이탈주민 100인 이상 거주하는 지자체는 지자체 합동평가(평가지표)에 지역협의회 구성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서 실질적으로 구성,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2012년 1월 현재 수도권 24개, 지방 35개 등 총 59개의 지역협의회가 있다(통일부, 2012: 86).

지역협의회 위원은 보호담당관, 하나센터, 정착도우미기관, 종교·민간단체, 주요 기업체, 대학, 민주평화통일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의 장으로 구성되며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01년도에 최초로 설치된 서울시 노원구의 지역협의회는 현재 지자체 2인, 경찰서 1인, 하나센터 1인, 교수 1인, 복지관 1인, 주민대표 16명 등 총 2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통일부, 2012: 88). 또한 지역협의회 산하 실무협의체를 구성, 실무담당자들에 의한 지속적인 협의 및 사업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김선화·윤여상·허영철, 2012: 51). 지역별 특성에 맞게 지역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는데, 통일부가 예시로 제시한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표 II-1-11〉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주요사업 예시

주요사업	세부내용
거주지에 편입된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역별 실정에 맞는 복지시스템 안내 및 이웃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	- Welcom Union(거주지역 안내서비스): 안내책자 발행 - 가족지원 프로그램: 명절 함께 보내기, 여름캠프, 송년모임, 문화탐방
지역별 북한이탈주민 지원 민간단체와 협력사업 추진	- 남한 가정과 북한이탈주민 가정 간의 가족결연 - 북한이탈주민과 민간단체자원봉사자 간의 멘토프로그램 운영 - 지역내 하나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긴밀한 연계활동 지원
분야별 전문상담 system 구축	- 지역 내 다양한 전문가 단체들과 교류하여 전문상담 및 지원을 위한 전문가(사회복지사, 의사, 변호사, 교사, 상담심리사, 종교인 등) 인력 pool을 구축·관리하고, 상시적 활동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 취업보호담당관 및 지역 내 경제단체 연계, 취업알선을 위한 상담활동 적극 지원

(표 II-1-11 계속)

주요사업	세부내용
각 기관·단체별 지원사례 및 개선 대책 발표·토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협의회 정기모임 내에서 각 지원단체 활동내용 논의 및 사업 공유</li> <li>- 지역내 북한이탈주민의 효과적 정착지원을 위한 지역단위 세미나 개최</li> <li>- 지역협의회 산하 북한이탈주민 지원 우수기관 방문 및 사업 내용 발표</li> </ul>
청소년관리 및 학습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복지관 사회교육프로그램 수강</li> <li>- 진로상담 및 정서상담 실시</li> <li>- 대학진학 안내 및 특별전형 대학입시 설명회개최</li> </ul>
대상별 특화프로그램 개발·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사회적응프로그램(심리정서상담, 여성건강 등)</li> <li>- 노인 정서상담 및 부업소개 등 사회적응프로그램</li> <li>- 지역 병원과 연계된 무료 건강검진</li> <li>- 결혼가정 상담 및 지원 지원</li> </ul>

자료: 통일부(201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 실무편람」 내용을 표로 정리함. p.83-86.

## 2. 선행연구 고찰

### 가. 적응·정착

북한이탈주민 패널 연구를 한 통일부(2009)의 보고서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적응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징을 분석하고, 향후 남북한 주민의 경제적 통합과 통일 정책을 준비하는 패널 자료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제활동상태를 보면, 전체적으로 비경제활동 인구와 일용직 근로자의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정규직 근로자, 계약직 근로자, 실업자의 순이었다. 여자가 남자에 비해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 높았고, 별거, 사별, 이혼을 한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일용직 근로자의 비율이 높았으며, 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은 낮은 편이었다. 배우자의 국적이 남한인 경우에 일용직 근로자의 비율이 가장 낮았지만, 무급가족종사자/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배우자의 국적인 북한인 경우에는 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이 가장 높고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 가장 낮았다. 배우자의 국적이 조선족인 경우에 일용직 근로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실업자의 비율이 가장 낮았다. 비경제활동의 이유로는 근로무능력을 가장 많이 꼽았고, 그 다음으로 학업과 가정일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직과정 중의 어려움을 살펴보면, 노동시장의 특성으로 인한 어려움이 가장 컸고, 그 다음으로 개인의 특성, 가족의 특성을 꼽았다. 가족 특성 중에서 자녀를 돌보는 문제가 가장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고, 개인의 특성으로는 탈북자라는 이유로 또는 경력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노동시장으로 특성으로는 일자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고용이 불안정한 것, 그리고 급여수준이 너무 낮다는 점을 호소하였다. 여자가 남자보다 상대적으로 구직과정 중에 가족특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고,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경우 가정일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반면 결혼을 하고 동거하는 경우는 자녀를 돌보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 전체적으로 가족특성으로 인한 문제를 겪었고, 배우자의 국적이 조선족인 경우에는 자녀를 돌보는 문제를 어려워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입국현황은 여성 새터민의 입국이 증가하고 있고, 가족단위로 입국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연령층이 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자녀를 데리고 입국하거나 남한에 정착해서 자녀가 생긴 여성 새터민의 경우, 남한사회에 적응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자녀양육이나 경제적인 문제로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지원방안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 여성들은 북한에서 거주할 당시 남한 여성들과는 다른 생활문화를 겪었기 때문에 북한에서의 가정생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남한의 새로운 가정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또한 가족단위로 입국하고 취학 전 영유아들의 입국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영유아들의 사회적응과 교육을 위한 정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다른 나라 이주민들과는 다른 차원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다문화 차원으로 이해하려고 하기 보다는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정책이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연계협력체계 구축방안에 관한 행정안전부(2009) 보고서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입국하여 정착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적응의 문제를 도출하여 지역사회에 효과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지역단위 관계기관과 협조 기관 및 봉사자 간의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 역량을 갖추는데 일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먼저 북한이탈주민들의 입국형태는 몇 가지 특성과 변화된 양상을 가지고 있다. 첫째, 가족 단위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이 증가하고 있다. 가족단위 탈북은 노인층과 여성, 청소년, 그리고 유아 북한이탈주민의 증가를 가져와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에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가족단위 입국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

는 이유는 중국 등 체류국가의 단속강화, 북한 내의 남한사회에 대한 정보유입 증가, 북한 내의 이동 용이성 증가, 그리고 먼저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잔여가족 입국 지원이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1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의 단신여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북한여성들이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서 상당히 많이 거주하면서 2~3년 정도씩 타지 생활을 경험하다가 남한으로 입국하기 위한 정보와 자금을 마련한 후 현지인의 조력을 통해 남한으로 입국하는 경우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중국 내 여성 북한이탈주민들은 현지 언어습득능력, 조선족이나 한족과의 동거생활 등으로 현지 적응능력을 상당 수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여성 입국자의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연령층이 다양화 되고 있다. 20~40대 연령층이 70~80%로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미취학연령층과 취학연령층, 그리고 노년층이 20~3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교생활적응과 육아문제 등의 새로운 적응문제와 이들에 대한 사회·복지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다섯째, 국제결혼의 성격을 갖는 입국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북한이탈주민이 조선족이나 중국인과 결혼하여 남한으로 입국을 시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중국 체류 탈북여성의 상당수는 조선족 남성과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남편의 지원을 받아 탈북여성인 아내가 먼저 입국을 한 후 그 자녀와 남편을 입국시키는 경우가 많다. 또한 탈북남성의 경우도 제3국 체류시 자신을 보호하고 지원해준 여성과 혼인관계를 맺고 입국 이후 배우자를 입국시키는 사례가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지역 내 거주 실태를 보면, 수도권 집중 현상이 두드러지고 서울 중에서도 양천, 노원, 강서구 등 임대아파트 단지에 밀집해 거주하고 있었다. 집을 배정받으면 취업이나 학업 등의 이유에 한해서만 주택교환이 이루어지며 1년이 경과한 후에 허용되므로 실제 거주이전이 자유롭지 않은 편이다. 임대아파트의 특성상 노인과 장애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남한 지역주민들과의 교류가 어렵고, 남한에 연고가 없는 북한이탈주민들은 정보와 기회에 연결될 수 있는 사회연결망 부재의 문제를 겪게 된다. 이를 토대로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연계협력체계 운영 방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효과적인 연계 구축을 통해 참여주체들이 팀어프로치를 하고, 거주지 정착 후 지역사회차원에서의 후속적 사회적응교육을 제공하며, 북한이탈주민의 개별적 욕구 대응을 위한 자원봉사자의 모집과 훈련 등을 정책방안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북한이탈주민의 효율적 정착지원 방안에 관한 행정안전부(2010) 보고서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인구학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배경이 변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여성 입국자 및 근로 능력을 가진 연령대 입국자가 증가하는데 비해 학력과 직장 경험을 뒤처지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 경인 지역에 밀집 거주하는 현상으로 인해 정착지원 서비스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었고, 제도의 초점이 '보호'에서 '자립'으로 전환되기 시작하면서 아직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북한이탈주민은 오히려 제도로 인해 소외받게 되고 있었다.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서 살아가는데 힘든 점으로 직업을 갖기 어려운 점, 심리적 문제와 건강 문제, 사회문화적 적응 문제, 가치의 혼란 등이 언급되었다. 그 중 가족문제에 대해 살펴본 결과, 세대 간의 긴장 및 갈등 속에서 부모가 아이들에게 권위를 잃는 문제가 나타났다. 가족동반 입국 이후 일정 기간 적응교육을 거치고 나서 독립된 사회생활을 하는 단계에서 이런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또한 부부 간에도 아내가 남편보다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 속도와 형편이 나은 경우 갈등이 초래되었다. 정착 초기에는 청소, 식당일 등의 일을 구하기 쉽기 때문에 여성이 사회에 더 빨리 적응하고 가족 내에서 유일하게 경제력을 가지게 되는 위치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 '북남-북녀' 결혼의 경우 심리적 안정과 부부간의 결속력이 높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육아문제, 자녀교육문제 등에 부딪힐 때 갈등을 많이 겪게 된다고 한다.

북한이탈주민은 취업을 할 경우 의료 혜택 등 현재 받고 있는 혜택이 줄어들다는 생각에 취업 전선에 뛰어들지 않으려는 경향이 높았고, 4대 보험 적용 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면 최저생계비 지급이 중단되어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 만연되어 있었다. 특히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우 아이들 뒤편까지 포함된 생계비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직장에 나가 월급을 받는 것보다 힘도 덜 들고 수입도 더 많기 때문에 취업을 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또한 직장에 나갈 경우 아이를 맡겨야 하는 또 다른 고민과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책 제언으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미지 개선 노력이 필요하며,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자원봉사자 양성의 제도화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필요한 예산 마련 및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포괄적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 문제를 다문화 영역에 포함시킬 수는 있지만, 당사자인 북한이탈주민의 반발과 불만을 감안해 북한이탈주민 문제를 공식적 차원에서 다문화 개념과 달리 접근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2010년도에 설립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통일부로부터 연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2010년 이후부터는 통일부가 아닌 지원재단에서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재단이 설립된 2010년 첫 해에 많은 조사들이 실시되었다. 우선, 「북한이탈주민 기초설문조사 분석보고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 사회적 적응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동일 표본을 유지하고 반복 조사하는 패널조사(종단 연구)의 기초자료로서 의의를 지닌다. 주요 연구내용은 크게 12개 부분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주거실태, 가족실태, 경제활동 실태, 신체건강, 정신건강, 외상 음주습관, 가까운 사람들, 적응의식과 상호인식, 범죄피해, 범죄피해 예방, 피해 경험 등이며 2000년 이후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중 지역,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만 65세 이하 북한이탈주민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2010년 7월 23일부터 9월 5일까지 45일 동안 실시되었다.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면접을 실시하는 대면면접조사를 사용하였다. 이 중에서 본 연구와 밀접한 혼인여부, 구직의 어려움, 구직 경로 등의 조사결과를 살펴보겠다. 혼인상태는 '미혼'이 41.1%로 가장 많았고, '결혼' 32.8%, '이혼/별거' 17.7%, '사별' 6.3%순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출생지는 북한 출신 39.3%, 조선족 29.9%, 남한 출신 18.8% 중국 한족 10.4%를 차지했다. 지난 4주 동안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운 이유로는 '자녀를 돌보는 문제 때문에'가 2.22점으로 가장 높았고 '가정일 때문에' 2.00점, '가족을 간병해야 하기 때문에' 1.4점, '가족의 반대로' 1.29점 순으로 집계되었다. 지난 1주일 동안 36시간 미만 근무한 이유에서도 '육아'가 '정규근무시간이 36시간 미만'(21.4%) 다음을 차지해서 육아가 구직활동의 저해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직장을 취업한 경로로는 '신문 벽보 등의 구인광고를 통해' 21.7%로 가장 많았고 '가까이 지내는 남한 사람을 통해'가 17.0%, '가까이 지내는 북한 사람을 통해' 12.7% 순으로 응답해서 복지관, 고용지원센터와 같은 공적 기관이 아닌 개인적 차원에서 취업정보를 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마다 실시하는 패널조사임에서 자녀 및 자녀양육에 관한 질문이 거의 없다는 게 아쉬움이 크다.

김선화·윤여상·허영철(2010)의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정착방안 활성화 방안」에서는 2000년 정착지원 체계(법을 포함한 제도)의 변화과정, 정착지원 체계의 내용 및 평가 분석, 유사 대상 집단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여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정착지원 체계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 도출 등의 주요 연구 내용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1) 하나센터를 전국에 30개를 설치함으로써

지역사회 거점의 실질적인 실행구조(조직)를 구축했으며 2) 지역중심·생활밀착형 서비스·맞춤형 서비스 제공의 기본적인 장치를 마련했으며 3) 거주지내 정착지원 업무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할 수 있는 기초 토대를 마련하여 향후 역할분담과 협력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구조를 마련했으며 4) 관주도형 정착지원의 비효율성을 해결하고 거주지 내에서 민관 협동 체계를 마련하는 등 그동안 추진한 정착지원체계 구축에 대한 평가를 내렸다. 활성화 방안으로는 정책집행 실무자와 정책 대상자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한 정책개발의 필요성, 다양한 거주지 정착지원 체계들 간의 통합과 조정이란 구심체로서 역할 수행기관의 역량강화의 필요성,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수준에 다양화에 따른 전문적이고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모색의 필요성, ‘거주지 보호단계’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후지원 체계의 통합시스템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통일연구원에서 수행한 2003년도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실태조사(이금순 외)에 따르면 대부분은 초기정착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며, 이를 극복하고 정착기반을 마련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경제적 어려움, 취업, 사회적 편견, 건강, 학업문제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욕구는 계층별·세대별·성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사회적응과정에서 겪는 일반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청소년, 여성, 노인 등이 갖고 있는 특정 집단별 수요에 적합한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필요성을 근거로 2005년도 3차 연구에서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 중에서 가족 단위의 프로그램을 보면, 주요 목표에 따라 가족갈등 치유 프로그램, 가족안정성 강화를 위한 여성교육, 남한가족과의 결연사업 및 가족모임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관계 습득 및 가족단위 지지자 확보 지원 등으로 세분화하여 제시하였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여성은 가족 내에서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가족관계의 중개자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가족의 경제적 원조 역할도 담당하면서 가족원이 남한사회에 적응하는데 전반적인 여건을 조성해 주는 중요한 역할 수행자임을 인지하고, 이들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노원구 공릉사회복지관의 “북한이탈주민가족의 가족안정성 강화를 위한 여성교육프로그램).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적응에 대한 인식 유형을 살펴보기 위하여 신원식과 배지철(2010)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서 적응한다는 것을 어떻게 개념화하고 있는지를 Q 분류를 사용하여 파악한 후 이를 유형화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사회 적응에 대한 인식 유형을 다음의 네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경제적 자립 지향형'으로 남한사회에서의 적응을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이 가장 중요하며 경제적 자립을 위해 취업과 관련된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이라고 차별대우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유형으로, 경제적 자립이 될 때 남한생활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둘째, '사회적 인정 지향형'으로 한국사회에서의 소속감과 인정을 받고자 하는 유형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국가에서의 제도적인 지원 및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제공 등이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셋째, '현실만족형'으로 자신의 현재생활을 과거 생활과 비교하여 자신의 현재 상황이 더 좋다고 판단하여 스스로 기대수준을 낮추는 유형으로, 현재 생활 상태를 만족하여 유지하고자 하는 입장이다. 넷째, '장기적인 안정 지향형'으로 북한에서의 지위와 사고방식을 고집하면 뒤쳐질 수 있다고 생각하여 단기간에 남한사회에 적응하기는 어렵거나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성공적인 정착을 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으로, 자신의 노력이 남한사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신원식과 배지철(2010)은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적응에 대한 각기 다른 인식 유형에 따라 정부나 관련기관의 지원 방안과 복지적 개입이 다르게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김화순·최대석(2011)은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단순히 정착지원이라는 도구적 가치를 넘어 사회적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일관된 탈북민 정착정책의 새로운 가치와 전략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을 대표하는 인물로 보여지는 사회단체나 기업의 임원으로 일하거나 성공적으로 남한사회에 정착했다고 알려진 북한이탈주민을 선정하여 탈북민개념, 정착 청사진, 정책우선순위,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포커스그룹 면접을 실시하여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로는 탈북민의 개념과 전달체계의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였던 반면, 정착청사진과 정책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생각이 비슷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김화순·최대석(2011)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였다. 첫째, 이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적응과 정착지원이라는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남북주민을 주체로 하는 사회통합이라는 패러다임으로 전

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하였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적응 특히 일자리 대책 수립을 위하여 단계별 직업통합 로드맵을 마련할 수 있는 TF(Task Force)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결혼 경험자를 중심으로 탈북 여성들의 남한 사회 적응 문제를 살펴보기 위하여 조영아·전우택(2005)은 11명의 여성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남한 생활 적응의 어려움에 대한 내용을 심층 면접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탈북 여성들은 남녀 간의 역할과 지위가 달라짐으로 인하여 생기는 부부갈등, 중혼이나 동거와 관련하여 생기는 갈등, 남한 남성과의 결혼 생활에서 생활 방식의 차이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부관계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 교육에 대한 부담 및 남한 교육 상황을 잘 알지 못함으로 인한 어려움, 부모 봉양 및 영유아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부담, 직업훈련 및 직장생활의 어려움, 만성질환 등의 건강상의 문제와 같은 적응상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게다가 탈북과정에서의 심리적 외상이나 두고 온 가족의 지원 및 남한 입국 시도, 신분 노출에 대한 불안과 남한생활에서 느끼는 심리적 위축감과 같은 심리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조영아·전우택(2005)은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의 남한사회 적응을 돕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의 제공을 제안하였다. 부부·가족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자녀 교육을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포함한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 심리적 후유증을 극복할 수 있는 치료적 개입 프로그램, 취업지원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며, 이러한 지원은 가족 형태별로 차별화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영선·구혜완·한인영(2011)의 연구도 조영아·전우택(2005)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북한이탈여성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북한이탈여성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여성만을 대상으로 했던 학술 연구들을 중심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내용 분석 결과, 북한이탈여성들은 대부분 중국 등 제3국을 거쳐 남한에 입국하는 데 중국과 같은 체류지에서 인신매매, 매춘, 폭행, 구걸 등 인권유린의 경험을 많이 하고, 북한에서 결혼을 하였지만 중국 내 정착을 위해서 이중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심리적 불안정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자녀를 국내로 데려오는 비율도 높았으며, 여성임으로 인하여 결혼, 출산, 자녀양육, 시부모 봉양과 같은 다양한 문제를 안고 살아야 하는 특수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 없이 한부모 가정을 이루는 경우도 많아서 이들 가정의 경우 경제적 자립이 필요하나 적절한 시스템이 부족으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

는 상황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여성의 심리정서적인 특성으로는 신체화, 강박증, 대인민감증, 우울, 불안, 적대감, 공포불안, 그리고 신경증 등의 증상이 일반여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탈북과정에서 경험했던 심리적 외상과 남아있는 북한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남한 입국 시도를 위한 부담과 같은 심리적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나. 육아

본 연구소는 2009년도 일반과제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개발 및 시범적용」 1차년도 연구에서 취약계층의 한 영역으로 북한이탈주민을 다루기 시작했다. 2009년도 7~8월 두 달 동안 영유아 자녀가 있거나 영유아기를 남한에서 보낸 아동 중 초등학교 1, 2학년 자녀를 둔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부모 167명과 이들 자녀 220명의 전반적인 육아실태를 설문조사하였다. 자녀 국적은 남한 태생이 67.3%로 가장 많으며 북한, 중국 태생 순이었다. 현재 결혼 상태는 '제3국에서 결혼한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음'(22.8%), '북한의 배우자와 현재 살고 있음'(18.6%), '남한에서 처음 결혼'(18.0%) 순으로 나타났다. 동거를 포함해서 미혼 상태가 13.8%이고 이혼·별거 11.4%로 여러 유형의 결혼상태가 탈북 가정에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양육자는 어머니가 98.3%이며 취업하지 않은 모가 93.3%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취업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는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기관이나 사람 없음' 24.7%, '적당한 일이 없어서' 17.5%, '건강상의 이유' 16.9% 순으로 응답해 다른 연구결과와는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육아지원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68.5%, 이용기관은 어린이집 96.0%, 유치원 3.2%로 어린이집 이용자가 절대적으로 많았으며, 하루이용시간은 8시간~10시간미만이 57.4%로 장시간 이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책방안으로 1)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육아지원을 위해서 관련 부처 간(통일부, 복지부, 교과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함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육아지원을 위한 지원기관내에 전문인력배치가 필요함 3) 북한이탈주민 대상의 맞춤형 부모교육 실시 4) 북한이탈주민 밀집지역 내의 취약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 5) 하나원에서부터 체계적인 육아지원교육프로그램의 제공 등을 제시하였다.

2010년 2차년도 연구에서도 취약계층의 한 부분으로 다루었는데, 이 연구에서는 개발한 영유아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이 주목적으로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탈북가정은 실험집단 15명(영아 1명, 유아 14명), 비교집단 18명

(영아 2명, 유아 16명)에 그친 아쉬움이 있다. 영유아 프로그램의 효과는 사전검사와 동일하게 나왔다.

이상의 두 차례에 걸친 북한이탈주민 대상 자녀양육 관련 연구는 영유아기에 초점을 두고 심층적으로 고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취약계층의 한 부분으로 다룸으로서 탈북민 연구가 부각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sup>5)</sup>

이인숙·박호란·박현정·박영혜(2010)는 하나원에 입소한 105명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북한 이탈 어머니들의 자녀 양육행동과 양육효능감, 적응스트레스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파악하고 자녀 양육행동과 다른 변수들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북한 이탈 어머니들이 인지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으로는 거부/제재 양육행동이 온정수용, 허용방임 양육행동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북한 이탈 어머니들은 아동에 대한 부정적 평가 또는 비난, 부정적 감정 표현, 적대적 훈육, 무시와 같은 양육 행동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자신들을 평가하였다. 양육효능감에서는 '부모로서 모든 책임을 잘 해내는 것은 나의 능력 중의 하나이다'라는 항목에서 가장 점수가 높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결코 좋은 부모가 될 것 같지 않다'는 항목에서도 마찬가지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즉, 북한 이탈 어머니들은 양육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부족하며 자책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적응 스트레스의 경우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지각된 적대감이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향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은 중증도이상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이 79.5%였으며, 대상자의 75%에서 증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되었다고 보고함으로써 증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암시하는 결과로 해석하였다.

이부미(2005)는 유아 및 아동을 둔 탈북 부모들이 남한 사회에 도착한 초기 1~2년 사이에 직면하는 부모역할의 어려움과 변화과정을 참여관찰과 심층면접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이부미(2005)의 연구에서는 탈북 부모들의 남한사회에서 겪는 어려움을 가정에서의 부모-자녀 관계와 학교와 부모와의 관계의 변화에 적용해야 하는 문제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가정에서의 부모-자녀관계에 있어서

5) 2011년 기본과제 「통일에 대비한 영유아 양육에 관한 연구」는 북한의 양육제도와 실재를 파악한 연구로서, 탈북민을 연령별(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로 표집, 설문조사 199명 심층면접조사 30명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1990년 중후반 이후 북한의 양육제도가 붕괴되었음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부모세대 탁아소, 유치원 경험 '있다'가 각 82.8%, 89.7%였다면 자녀세대는 '있다'가 32.3% 29.0%로 급감하였다.

는 북한사회에서 경험하였던 가부장적 가족 문화, 고정된 성 역할, 수직적 가족 관계에서 오는 경직된 부모 자녀관계가 남한사회에 들어오면서 부드럽고 허용적인 관계로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탈북 부모들은 두 방식간의 차이에서 자신들의 적절한 양육방식을 찾는데 어려움과 혼돈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학교생활에서는 남한의 경쟁적인 학습문화에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주거나 지원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부미(2005)는 탈북 부모들은 남한사회에서 부모역할을 재정립하여 적응해가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고, 이러한 과정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감안하여 이 시기에 탈북 부모들의 역할 적응을 도울 수 있는 부모역할 적응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박정란(2009) 연구는 여성 탈북민의 급증에 초점을 맞춰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성 새터민들의 자녀돌봄과 일을 다루었다. 조사대상은 2005년도 이후 입국한 여성 새터민 300명 이상 신뢰수준 95%±5 목표 설정, 최종 유효 응답자는 296명이다. 제3국에 돌보아야 할 자녀가 1명 이상이 있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42.7%가 응답했으며, 남한에서 돌보아야 할 자녀가 있는 가정 중에서 모자가정이 30%를 차지했다. 정기적으로 육아 비용을 지불한다는 응답은 61.1%로 나타나 과반수 이상이 정기적으로 아이들 돌보아 주는 비용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하루 일과 중 아이를 돌보기 위한 시간으로는 2시간이 26.9%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1시간 13.5%, 10시간 11.5% 6시간도 11.5%로 응답하였다. 취업모 중 하루 근로시간은 10시간이 26.9%로 가장 많았고 12시간은 21.8%로 그 다음 순위를 차지했다. 어머니 외의 대리양육자는 없다가 81.7%로 부모나 친지 등의 가족관계를 통해 자녀양육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비혼상태의 여성 새터민이 경제적 다급함으로 자녀양육보다 경제활동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훈련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 그 이유로는 '건강 때문이다'가 47.6%로 가장 많이 응답했고, 자녀양육이나 집안일이 19%를 차지했다. 육아의 부담이 없는 경우, 취업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대다수였으며 여성 새터민들의 취업률 향상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원으로 '자녀양육지원'을 가장 많이 꼽았다(45.6%). 이에 취업지원과 더불어 육아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원틀이 필요하다고 피력하면서 자녀돌봄과 일 양자 통합 지원체계 구축과 활성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새터민 한부모 가족 보육-취업 원스탑 서비스 확대 실시, 2) 여성 친화적 새터민 취업 지원체계 및 내용 구축,

3) 한부모 가족에 대한 공적 보육서비스 우선 이용 확대 4) 아동·청소년 대상 학업지료를 포함한 '돌봄'서비스 확대를 제안하였다.

박현정·김윤수·박호란(2011)는 새터민 어머니에게 필요한 양육 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근거이론을 토대로 하여 새터민 어머니들의 아동 양육경험의 변화과정을 서술하고 탐색함으로써 새터민 어머니의 양육경험 변화 과정을 살펴보았다. 하나원에 입소한지 8주 이상 된 새터민 어머니 중 학령기 아동을 데리고 남한으로 입국한 19명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새터민 어머니의 양육 경험을 설명하는 핵심 범주는 긍정적인 양육추구이라고 제시하였다. 어머니들은 북한에서의 생활고 등의 일련의 사건들과 사회체계의 제제로 인한 힘든 현실을 경험하였으며, 이러한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 남한으로 이탈하였고, 이후 새로운 정보와 환경을 맞이하면서 어머니의 역할에 대한 재인식을 통해 변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를 수용함으로써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긍정적인 건설적 보완을 이루어 가는 반면, 새로운 환경에서 경험하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양가감정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북한 이탈 어머니들은 탈북과정에서 제3국 등의 체류 중 아동을 방치하면서 보낸 시간이 많았으며, 양육에 관한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자녀와 함께 지내고 성장하는 방법에 대해 익숙하지 못하여 지난날의 상처를 안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상황도 보고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박현정·김윤수·박호란(2011)는 새터민 어머니들의 현재 양육형태뿐 아니라 과거의 삶과 경험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를 통해서 적절한 양육태도 중재프로그램의 개발 및 제공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 다. 결혼과 가족

장혜경·김영란(2000) 연구는 다양한 북한이탈주민 가족의 가족안정성 정도와 구체적인 생활실태를 통한 사회적응 정도를 살펴보고, 여성은 한 가정의 가족안정성을 나타내는 가족적응력과 결속력에 중요한 역할수행자임을 고려해 볼 때 탈북 여성의 역할이 어떠한 함의를 가지는 지를 분석하여 통일 대비 가족 및 여성정책 분야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였다. 1994년에서 1999년 사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가족(부부, 부부+자녀, 한부모 가족) 26사례가 면접조사에 참여했으며, 설문조사에는 최종 39가족이 응답했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인과 남편 모두 남한에서 무직이 가장 많았고 여성의 무직 비율이

더 많았으나 남편의 근로소득에 비해 부인의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아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의 경제적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가족안정정도는 높게 나왔는데 이는 불확실하고 어려운 생활 여건 하에서 가족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가족원들 간에 서로 위해주고 보살펴주는 힘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회적응과정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해 남편의 평가는 긍정적이었으며, 남편의 의논상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은 자녀의 학교생활, 학업, 진로 등 자녀문제를 가장 많이 걱정하고 있는 등 북한이탈주민 가족의 안정성, 사회적응 측면에서 여성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가족단위가 남한사회 적응에 긍정적인 면들이 많음을 보고하고 있다. 가족이 보육하는 자원 중 고정적인 수입 등의 경제적 자원은 가족안정과 사회적응의 중요한 변수로서 무엇보다도 강조되어야 하는 데, 이러한 측면에서 탈북 여성들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배려를 제안하였다. 정책방안으로는 가족경제의 자립 지원정책, 가족관계 강화 방안, 가족차원의 남한사회에 대한 이해 및 인식 제고,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효율성 강화 및 가족단위 지원, 남한사회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변화와 이해 증진 방안, 가족경제 및 가족관계 강화를 위한 여성역할 증진 관련 정책 등을 제안하였다.

이미화 외(2011) 「탈북여성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 개발」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의 수탁과제로 수행되었다. 탈북 여성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또한 가족 전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부모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탈북여성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주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탈북여성의 교육욕구조사를 파악한 후, 이를 토대로 모든 탈북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정서지원교육프로그램, 20~40대 탈북여성을 위한 취업지원교육프로그램, 20~50대 탈북여성을 위한 자녀양육지원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끝으로 탈북여성에 대한 남한사회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탈북여성 실태조사 및 정착지원 방안을 연구한 여성부(2009)의 보고서를 살펴보면, 임신-출산, 육아-자녀교육, 결혼-가족관계, 건강-체력 및 심리적 안정-정서적 관계망 등 여성 새터민이 인지하는 애로사항에 대해 알 수 있다. 먼저 임신-출산에 관한 애로사항을 보면, 여성 새터민들은 임신 과정보다 출산 이후 산후조리와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토로하였다. 북한과 달리 검진을 위해 병원 방문 횟수가 너무 많아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출산 후 가족 없이 혼자 산후조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북한에서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비용이 아이에게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힘들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출산 이후 직장생활을 병행하기 어려워졌다는 지적도 많이 제기되었다.

육아-자녀교육에 관한 애로사항으로는, 자신이 성장기에 부모를 통해 배웠던 생활방식이 자녀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활용할 수 없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점에서 육아와 자녀교육이 어렵다고 호소하였다. 아이가 질문을 해도 대답을 해줄 수가 없고, '아이 중심'으로 돌아가는 남한의 상황과 '엄마 방식대로 끌고 나가는' 여성 새터민의 성향으로 인해 부모와 자녀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을 토로하였다. 특히 여성 새터민이 한부모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경우 자녀교육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양육과 가정의 생계 유지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사실상 자녀를 방치하게 되는 경향이 있고, 아이가 아빠를 찾거나 주변에서 이상한 시선을 보내는 경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자녀들이 육아지원기관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남한의 아이들처럼 사교육을 받을 수 없다보니 충분히 뒷바라지를 해줄 수 없다는 생각에 걱정이 많았고, 자녀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알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결혼-가족관계의 어려움을 살펴보면, 여성 새터민의 숫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가족과 함께 입국하는 사례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북한에 있을 때 이미 가정이 해체되기도 하고 중국에서 결혼생활을 하다가 혼자 국내에 입국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여성 새터민이 만나는 배우자의 유형은 조선족(한족) 남성, 남성 새터민, 남쪽 남성으로 구분되는데 각 유형에 따라 여성 새터민이 겪게 되는 가족관계의 어려움이 다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족이나 한족 남성이 배우자인 경우, 중국에서 살면서 자녀를 출산한 뒤 여성 새터민이 먼저 국내에 입국하여 가족을 데려오는 사례에 해당된다. 이 경우는 대부분 자녀 때문에 남편을 데려오게 되는 것으로 국내에 입국한 남편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인 능력에 실망을 하게 된다고 한다. 남성 새터민을 배우자로 만나는 경우, 서로 상대방의 아픔을 이해하고 상처를 건드리지 않아 위안이 되기도 하지만 남성 새터민이 북한에서 살던 것처럼 자신만의 생활방식을 유지하게 되면서 갈등을 겪게 된다고 한다. 반면에, 남쪽 남성을 배우자로 맞이하면 경제적인 안정을 추구할 수는 있지만 여성 새터민을 무시하고 쉽게 보는 성향 때문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배우자인 남성은 자신을 이해해도 시댁식구나 주변 사람들이 '이북여자'라고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 마음고생이 심하다고 한다.

여성새터민이 토로하는 애로사항 중에서 건강문제나 체력이 약하다는 점이 부각되어 나타났다. 북한에서 경제난으로 겪었던 병이 잘 안 없어지기도 하고, 북송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체력이 약하고 시간이 지나도 기력을 잘 회복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심리적 안정-정서적 관계망에 관한 여성 새터민의 애로사항은 입국 초기에 겪게 되는 불안이나 외로움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많다는 점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해소되기는 하지만 가족없이 혼자 입국한 여성들은 취약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성 새터민이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정서적 관계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그냥 받아들이거나 술이나 약을 찾기도 하고 종교활동을 통해 해결을 하려는 성향을 보인다고 한다. 심층면접 대상자인 여성 새터민들이 현재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정착지원 정책의 내용으로 지적한 사항은 취업과 경제적 지원의 확대, 탈북인에 대한 인식 제고, 자녀교육에 필요한 지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자녀교육 관련 지원을 살펴보면, 자녀는 새터민인 자신과는 달리 이 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자녀들이 방황하거나 빠뜨려져 나갈 때 의논할 곳이 없고, 한국사회의 학교 관련 정보도 전혀 모른다는 점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 새터민의 정착 실태 및 욕구도 조사를 바탕으로 언어-발음-역량 교육 프로그램, 여성 새터민을 위한 임신-출산-육아 전용 바우처 제공 등 여성 특화 생활밀착형 지원 방안에 대한 정책 제언을 하였고, 새터민 엄마를 위한 자녀들의 진학상담 프로그램, 새터민 엄마와 자녀가 함께 하는 현대사 교육 프로그램 등 여성 새터민 자녀교육 지원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 3. 이론적 논의

#### 가. 빈곤탈출 노동정책과 여성의 빈곤화

부양자녀수가 증가하게 될 경우, 여성경제활동은 더욱 어려워지며 경제상태도 취약해 진다고 보고 있다. 부양자녀수, 요보호자의 존재 등의 가족 특성이 여성 가구주의 노동시장 참여 및 노동시장 내 경제적 지위 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Holden & Smock, 1991; Maulin, 1990; Smock, 1994; 박정란, 2009 재인용). 국내 연구에서도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며, 특히 6세 미만 자녀의 존재는 여성의 경제활동에 더욱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김태훈, 2000 박수미, 2002; 박정란, 2009 재인용). 취업 모의 경우 여성 내에서도 차별적이어서, 미혼 여성을 선호하는 노동시장에서 적합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렵다. 일자리를 구하는 경우에도 저임금이거나 고용환경이 열악한 직종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경제적 빈곤을 벗어나기 어렵다(김영란, 1999 김동춘 외, 2000; 박정란, 2009 재인용).

일반적으로 빈곤 정책은 일을 통하여 빈곤을 탈출하는 정책을 강조한다. 과거에 비해 여성들이 점차 노동시장에 많이 진입하지만 여성 빈곤층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며, 빈곤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는 여성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몰성인지적 정책으로 인해 제도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성 빈곤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근로빈곤정책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여성 근로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박정란, 2009).

#### 나. 이민 여성의 가족 관계 및 결혼 만족도

전통적인 가정에서 남성의 역할은 가족부양, 여성의 역할은 주부로서 가사를 담당하며, 비전통적인 역할은 가정에서 역할을 분담하며 남녀평등을 지향하는 것으로 여성이 집안에서 비전통적일 수록 결혼의 질에 부정적인 측면이 증가한다(박정란, 2009). 이는 비전통적인 여성은 직장을 통한 가족의 부양자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가정 내에서의 가중한 역할부담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하며 공평하지 못하다고 인지할 것이며, 이것은 결혼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이다(박정란, 2009). 다시 말해서 가정 내에서 남녀 간의 상호보완적인 역할이 없어지며 여성은 결혼생활의 부부관계에서 받는 것 보다 주는 것이 훨씬 많으므로 손해를 보았다는 느낌, 심한 경우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 내에서 성역할의 변화는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여성이 남편과의 관계에서 공평하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이 이익을 본다고 생각할 때, 결혼만족도가 높았다(조정문, 1995). 이와 같이 현대사회의 취업모는 가계 경제의 중요한 역할도 담당하면서 가사의 대부분의 역할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불공정하다고 느낄 것이며 가정에서의 기여도에 불균형 및 불공정이 있다고 생각할 때 결혼만족도는 떨어질 것이다.

여성이 가사분담이 공평하다고 느끼는 정도로 배우자가 그 역할을 수행하지 않을 때, 여성의 결혼만족도는 떨어질 것이며, 가사분담이 불공평하다고 느낄 경우 결혼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Voydanoff & Donnelly, 1999; 박정란, 2009 재인용). 전통적인 여성보다 평등을 추구하는 여성의 경우 불공평에 대한 인지가 결혼의 질에 영향을 미쳤으며(Greenstein, 1996; 박정란, 2009 재인용), 가사노동분담을 고정하다고 느낄 경우 결혼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Lavee & Kalz, 2002; 박정란, 2009 재인용). 김미령(2008) 연구에 의하면 모든 연령대에 결혼 및 부부관계에서 남편에 대한 인식은 결혼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고, 부부가 평소에 대화를 많이 하며 서로 비슷한 견해를 갖고 부부생활에 만족하고 사랑하는 것이 결혼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부가 같이 여가나 스포츠 활동 등을 하는 것이 결혼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한편, 이민자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게 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착 초기에 일반적으로 여자가 새로운 사회에 더 빨리 적응을 하기 때문이다. 여자들은 새로운 사회에서 더 낮은 신분의 직업(청소부, 식당 설거지 등)을 구하기 쉽고, 그런 일을 함으로써 이주 초기에 가족 내에서 유일하게 돈을 버는 사람이 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현상은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남자들, 가장들에게는 매우 큰 좌절감을 주는 일이다. 가족 내에서의 남성의 권위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남자, 아버지로 하여금 더욱 독재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를 가지게 하고, 돈을 버는 다른 가족들을 비난하는 경향을 가진다고 보고하였다(Timbelake & Cook, 1984; 장혜정·김영란, 2000 재인용).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북한에서는 전투적인 혁명적 어머니상과 남편에게 절대 복종하는 순종적이며 자녀양육에 헌신하는 현모양처 여성상, 어떻게 보면 상호 대처될 수 있는 두 개의 여성관을 갖춘 여성이 '바람직한 여성상'이다. 이러한 문화에 익숙한 탈북 남성은 많은 남한 여성들이 가정 내에서 누리는 평등적인 지위에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으며, 탈북 여성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의식을 수용하지 못하면 부부 및 가족관계는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탈북 남편은 부인에게 절대적 순종을 요구하는 데 부인은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면 의외로 갈등은 커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장혜정·김영란, 2000 재인용).

#### 다. 이민자의 정체성

이민자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신규 이민자는 새로운 문화권에서 자

기(self) 개념의 많은 부문에 대해 영향을 받아서 개인적 정체성과 사회정체성에 대해 중요한 재정의와 재구성을 해야 함과 동시에, 주류 문화에 적응하는 것을 자신들의 집단 정체성, 즉 원문화에 대해 가지고 있는 사회정체성에 대한 위협으로 지각할 수도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이들의 지원정책의 방향과 성격이 정해질뿐더러 우리 사회에서 이들이 어떻게 자리매김하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북한을 떠나 남한 사회에 정착하고 있는 탈북자들에게 보내는 남한 국민들의 시각은 상이하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굶주림과 폭압을 피해 중국을 경유하여 한국에 온 북한 주민이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북한체제에 항거하여 모든 것을 뒤로한 채 죽음을 무릎 쓰고 북한을 탈출한 정치난민으로 보는 사람도 있으며, 남북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 남한에서 재사회화에 성공하지 못하면 사회의 큰 짐이 될 수 있는 존재 등 북한이탈주민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표 11-2-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각계의 관점들

분류	전문가	일반국민	탈북자 사회
탈북자는 누구인가	-북한의 가족, 직장 등 연고를 가지고 있던 자, 북한탈출 후 제3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자 -유엔HCR의 보호를 받아 한국으로 정착한 생계형 난민	-북한공산 빨갱이들 중 한국을 동경해 탈북한 자 -굶주림과 폭압을 피해 중국을 경유하여 한국을 찾아 온 불쌍한 북한주민	-김정일 독재체제에 불만을 품고 체제붕괴를 목적으로 북한을 탈출한 정치난민 -통일이 되면 고향으로 돌아가 자유로운 세상을 건설할 북쪽 사람
북한주민인가? 남한주민인가?	-헌법상 명시되어있고 국적을 취득한 남한 국민 -하지만, 북한의 공민이었던 점을 간과할 수 없음.	-대한국민 국민임이 명확하게 인식되지 않음. -외국인 노동자, 중국조선족과 다름이 없음.	-윗동네에서 아랫동네로 내려온 한핏줄의 국민 -남북통일을 앞당기는 대한민국 국민
한국사회에 독인가? 독인가?	-같은 언어와 감정을 가지고 있어 일반인민자들 보다 더 바람직함? -재사회화에 성공하지 못하면 큰 짐일 것임.	-남북통일을 생각할 때, 한 몫할 수 있는 사람들. -확실한 신원증명이 어려워 사회에 위협이 될 수 있음.	-북한의 붕괴와 통일을 실현하는 데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음. -남남갈등의 해소와 남한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일조할 수 있음.

(표 II-2-1 계속)

분류	전문가	일반국민	탈북자 사회
바람직한 활용방안은?	-북한실태정보수집 -통일예비실험, 여행연습 -북한의 변화 촉진	-3D업종을 비롯한 각종 산업인력의 확충 -결혼적령기, 출산적령기 인구 증가에 일조 -북한실상 이해증진	-향후 통일동량지대로 준비? -단순이민자가 아닌 통일선봉부대로 활동 -북한실상전달, 안보 의식고취, 통일교육에 기여

자료: 김홍광(2009). 탈북자들의 자아정체성의 굴곡과 사회정착과의 관계. p.31.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은 그들을 명명하는 명칭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다음의 표는 북한이탈주민을 명명하는 명칭의 변천사이다.

<표 II-2-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명칭의 변천

명칭	제정시기	평가
실향민	1950년	-
월남귀순자	1962년	-
월남귀순용사	1978년	-
탈북자	1993년	대체로 문제없이 활용되고 있으나, 이 말에 쓰인 者(놈자)의 자훈의 영향으로 어감이 좋지 않다고 지적
귀순북한동포	1995년	'귀순'이라는 앞 글자는 체제우위를 강조하며 동시에 '변절자' '반역자'라는 느낌을 받을 소지가 크다고 지적
북한이탈주민	1997년	글만체로서 명칭이 길고, '이탈'이란 글자는 사회적으로 이탈, 일탈자를 지칭하는 부정적인 의미가 짙다고 지적
새터민	2005년	'북한체제를 거부하고 자유를 찾아 온 사람'이란 의미가 사라져 탈북자의 정체성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지적

자료: 김홍광(2009). 탈북자들의 자아정체성의 굴곡과 사회정착과의 관계. p.33.

한국전쟁 이후 공군 조종사의 귀순이 두드러지면서 이들을 '귀순용사'로 칭송하였다. 1990년대 들어 북한 경제난이 심각해지면서 북한을 이탈해 남한으로 들어오는 주민이 늘어나자 탈북자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일각에서는 탈북자라는 용어가 어감이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용어를 변경할 것이 제기하였고, 이에 2005년 1월 9일 통일부는 한국 거주 탈북자를 순화 용어인 '새터민'으로 바꾸었다. 그러나 통일부는 2008년부터 가급적 '새터민'이란 용어를 안 쓴다고 발표하면서 현재 '북한이탈주민'이 공식용어로 사용되고 있다(김홍광, 2009).

최근 조사에서 북한이탈주민은 자신을 '북한출신의 남한사람'이라는 규정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남한 사람', '북한사람' 순으로 응답하였다. 흥미로운 사실은 '북한출신 남한사람'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지만, 북한이탈주민이 여전히 자신을 '북한사람'으로 여기는 경우와 '동포'라고 여기는 경우가 낮지 않았다는 점이다(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2010). 북한이탈주민 자신이 인식한 정체성은 북한 사람과 남한 사람이 혼재되어 있는 듯하다.

한편, 남한주민은 북한이탈주민을 어떻게 인식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2010년 한국인의 국민정체성 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응답자 중 43.9%가 북한출신 남한사람, 42.9%가 북한사람, 11.2%가 남한사람, 1.2%가 동포로 인식하고 있었다. 두 집단의 인식 차이는 남한주민의 대다수는 북한이탈주민을 주로 북한출신자(북한출신 남한사람 또는 북한사람)로 보는 반면, 북한이탈주민 자신은 남한사람이라는 점을 부각한다는 것이다.

〈표 11-2-3〉 북한이탈주민의 자기 인식과 남한주민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차이

구분	북한이탈주민		남한주민	
	빈도수	유효백분율	빈도수	유효백분율
북한출신 남한사람	591	50.6	447	43.9
남한사람	291	24.9	114	11.2
북한사람	178	15.3	437	42.9
동포	107	9.2	12	1.2
합계	1,167	100.0	1,019	100.0

자료: 윤인진·채정민(2010).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상호인식: 정체성과 상호문화적 적응을 중심으로. p.57.

자신의 자녀에게 '남한사회에 문물을 잘 받아들이도록 해 주겠다'는 질문에 87.1%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자녀에게 '북한의 풍습을 잊지 않도록 가르치겠다'라는 질문에 22.5%만이 '그렇다'고 응답하여(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2010) 본인에 비해 자녀는 남한 사람으로 정체성을 확립해서 키우려는 의지가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 4. 소결

### 가. 정착지원제도에 대한 시사점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를 법령과 정책 현황들을 살펴보았다. 고찰한 내용들 중심으로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0년대 중후반부터 탈북민 지원정책이 확대, 강화되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이 1997년에 제정되었지만, 2008년도 이후에 몇 차례에서 걸쳐 법조항들이 개정 또는 신설되었다. 법적 근거를 토대로 2010년도에는 전국의 지역적응센터인 하나센터를 전국적으로 30개를 개소하였으며, 탈북민의 지원사업을 총괄하는 허브기관으로서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설립하여 탈북민의 정착과 지원서비스를 관리·감독하는 전달체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2만명 시대라는 사회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정부의 의지와 노력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확대, 강화되고 있는 탈북민의 정착지원사업이 남성 탈북민 중심의 지원서비스라는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정착지원사업 중에서 정부는 취업지원정책을 그 어느 지원사업보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대개 거주지 단계에서부터 정착지원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에 비해 취업지원은 하나원에서부터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법률 개정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이나 세제 감면을 해 주거나(제 17조의 4 세제혜택), 공무원 특별임용요건을 완화하여 북한이탈주민을 공무원으로의 임용을 확대하고(제18조 특별임용), 공공기관 평가 시 북한이탈주민 고용률을 반영하는 조항(제18조의 2 공공평가 반영)을 신설하는 등 취업지원정책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취업서비스 정책의 수혜자는 남성인 가능성이 높다. 2010년도에 개정된 제18조 특별임용조항을 보면, “북한에서의 자격이나 경력이 있는 사람 등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북한이탈주민의 대부분은 북한에서도 무직이거나 가난한 노동자들이었다. 다시 말해서 특별임용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사람은 탈북민 중에서 아주 극소수일 것이며, 설사 그 대상자로 선정된다 하더라도 여성보다는 남성이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하겠다.

정부가 탈북민 대상으로 취업지원정책을 강화해 나가고는 있지만, 탈북 여성들이 그 혜택을 누리기에는 현실적 장벽이 크다. 대부분의 평범한 탈북 여성들은 신체적 어려움과 자녀양육 등으로 취업 자체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우리사회에서 안정적인 정착과 적응을 위해서는 탈북민 대상의 취업지원을 중시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방향은 맞지만, 정책 대상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탈북 여성이 입기에는 “몸에 맞지 않은 ‘좋은’ 옷”을 제공함으로써, 취지는 좋았으나, 결국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셋째, 따라서 여성적 관점의 지원서비스는 부수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다.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특성을 반영한 가정지원서비스가 없지는 않으나 탈북민 지원정책의 중심은 아니다. 탈북민의 다수가 여성인 만큼 취업과 같은 거시적인 정책이 아니라 심리상담, 의료, 육아, 부모교육 등의 미시적인 정착지원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신체적 어려움으로 취업하지 못하는 탈북 여성이 많은 만큼 의료지원서비스를 강화하여 재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겠다. 또한, 탈북을 거치면서 가족을 잃기도 하고, 인신매매로 팔려가기도 하며, 붙들려서 복송되는 등 형언하기 어려운 경험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신체적 치료 뿐 아니라 심리적 치료를 반드시 해야 하는 사례를 초기 단계부터 발굴하여, 형성된 트라우마 치료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하겠다. 내재적 문제를 치료하기 않은 상태에서 정착과 적응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특히 여성의 경우 자녀양육을 하면서 심리적 불안, 우울 등의 부정적인 정서가 자녀에게 전이될 수 있으므로 건강하고 행복한 북한이탈주민 가정을 위해서라도 탈북 여성의 심리상담서비스는 취업지원서비스 못지않게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겠다.

넷째, 보호대상 기간이 종료된 입국 후 5년 이상의 탈북민의 지원서비스가 취약하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보호기준 등) 3항에 “보호대상자를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거주지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이나 서비스의 유효기간은 남한 입국 후 5년이다. 하나센터사업에서 실시하는 지역적응교육과 사후지원·관리는 1년 동안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지원사업이나 서비스가 최근에 생겨나서, 현재 기준으로 보호기간 5년이 지난 2007년 이전에 입국한 탈북민들에게는 해당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초기 정착중심의 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김선화·윤여상·허영철(2010)은 초기 정착자들만의 프로그램과 ‘정착과정 전

반에 걸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병행해서 실시할 것을 미국의 "International Institute of New Jersey" 기관을 예로 언급하면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정착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시간의 경과 속에서 그와 관련된 적응 장애요인들이 발견되기 때문에' 초기 단계를 넘어선 정착지원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정착지원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은 정착을 하는 과정에서 결혼을 하거나, 자녀를 낳고 키우는 사례가 많다. III장, IV장에서 고찰하겠지만, 본 연구에서 면담한 탈북민들은 30대 후반~40대의 적지 않은 나이지만 출산을 한 사례들이 많다. 초기 정착뿐 아니라 정착 전반에 거친 정착지원서비스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섯째, 북한이탈주민에게 실시하는 교육시간이 학습하고 습득하기에는 짧은 점이다. 2009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하나센터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이 최초 거주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역밀착생활중심 지원서비스란 점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놓여있다. 그러나 초기집중교육이라고 해서 3주에 걸쳐 60시간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 시간이 너무도 적다.

예컨대 개인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의사소통향상' 프로그램은 표준말 교육으로서 탈북민들에게 매우 필요한 교육서비스이다. 북한이탈주민은 외모는 남한사람들과 비슷하지만 북한 억양과 말씨로 인해 구별되고, 구별이 차별로 이어지면서 남한사회의 적응에 걸림돌이 되는 상황에서 억양과 말씨 교정은 중요한 교육서비스이다. 그런데 앞서 <표 II-1-9>를 보면, 개인역량강화교육영역에 배정된 시간이 3일 12시간인데 이를 각 세부주제별로 할당하면 '의사소통 향상'은 하루 4시간이 배정된다. 수 십년 동안 체득된 억양과 말씨를 불과 몇 시간 교육으로 교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착 초기단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시기의 정착지원서비스를 강화한 것은 의의가 크다. 그렇지만 이념과 체제, 모든 환경이 다른 사회에 적응·정착하기에는 절대시간이 필요하며, 개인에 따라 소요시간이 다를 수밖에 없다. 비슷비슷한 지원서비스를 형식적 수준에서 제공하기 보다는 핵심적인 프로그램—개인마다 필요한 프로그램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구성하여—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의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여섯째, 정책 수혜대상이 명확하지가 않다. 특히, 정책대상이 개인이 아니라 가정 또는 아동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지원하는 출산지원금의 대상이 통일부(2012)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 실무편람」에는 ‘아이를 출산하였을 경우’로만 명시되어 있어서, 북한이탈주민 여성이 출산한 경우인지 혹은 북한이탈주민 가정에서 출산한 경우도 포함되는 지가 불확실하다. 이는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법적 내지는 합의된 정의의 부재로 인한 애매함이다. 우리가 북한이탈주민 출신의 남자가 남한 여성 또는 다른 국적의 여자와 가정을 이룬 경우를 북한이탈주민 가정으로 간주한다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제공하는 산모도우미지원은 수혜대상이 될 수 없다. ‘북한이탈주민 여성이 출산한 경우 산모도우미 지원’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 가정이지만 출산한 여성이 북한출신이 아니면 제외될 여지가 있다. 현행 법령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정의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사람’(제2조 정의)이라 되어 있다. 따라서 서비스 지원대상을 북한이탈주민 여성 또는 이들 여성이 출산한 자녀로만 국한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

#### 나. 선행연구 및 이론적 논의에 대한 요약 및 시사점

지금까지 고찰한 선행연구들 중에서 북한이탈주민 가정 특성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 가족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가족관계가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에서 결혼, 제3국 체류기간 동안 결혼 또는 동거, 남한 입국 후 결혼 또는 동거, 그리고 남한 입국 후 북한이나 중국에 남아있는 가족을 데려오는 경우 등으로 복잡한 가족관계를 형성하면서 심각한 가족갈등, 가족해체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한부모 가정이 많은 것도 이러한 내포된 문제에서 야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경제적 어려움이다. 장명림 외(2009) 연구에서 대부분의 탈북 가정은 기초수급을 받으면서(88.6%) 생활하고 있었다. 높은 실업률, 고정적인 가구소득원이 없는 경우가 많은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은 가정의 위기를 낳는 또 하나의 주요한 이유이다. 셋째, 북한에서의 학력이나 직업이 남한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취업의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지적 열등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았다. 특히, 자녀로부터 ‘엄마는 그것도 몰라’라는 식의 무시로 수치심을 겪게 되고 이는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된다. 넷째, 남한에서 자녀출산을 한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정이 많아지고 있다. 탈북여성의 대부분이 20~40대 가임기 여성이란 점에서 이들 가

정의 자녀출산은 증가할 추세이다. 다섯째, 가족단위가 남한 사회 적응에 긍정적인 측면이 많고, 가정 내에서 여성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연구결과에서 가족 및 여성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여섯째, 북한이탈주민 여성은 탈북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결혼하는 과정에서, 남한 문화에서 자녀와의 새로운 관계맺음 등에서 신체적·심리적·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일곱째, 자녀교육에 대해 열의와 부담을 동시에 갖고 있다. 북한과는 다르게 사교육, 조기교육이 극성인 남한 교육과 문화에 대한 경험 부재로 자녀교육에 어려움과 두려움을 갖고 있다.

이어서 고찰한 이론적 논의는 돌봄노동과 빈곤화, 이민 여성의 가족관계 및 결혼 만족도, 이민자의 정체성의 주제로 살펴보았다. 육아와 같은 돌봄노동은 노동시장의 진입을 방해하거나 진입하더라도 열악한 직업을 갖게 됨으로서 빈곤을 가속화하는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탈북 여성의 취업 정책은 성인지적 관점에서 이들 근로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주를 통해 접하는 새로운 사회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낮은 직업군에 빠르게 진입하면서 경제권을 갖게 되는데 이는 가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문화(북한)에 살았던 남성은 경제력으로 가정 권력을 획득한 여성의 위상을 인정하지 못하고 여성은 부양뿐 아니라 육아, 가사일까지 전담하게 됨으로서 결혼만족도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이주 후 원가족은 해체 위기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다. 원가족을 유지하고 있는 탈북 가정에 대해서 이러한 관점을 기반으로 가족단위 지원정책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탈북 전후를 기점으로 원가족이 해체되고 새롭게 가족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은 탈북 가정은 가정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가족단위가 남한사회 적응에 긍정적인 면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녀양육도 육아지원기관 이용과 더불어 가족 내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자녀양육지원정책 수립 시, 가족유형별에 따른 다양한 양육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하겠다. 끝으로 북한이탈주민, 그리고 그 자녀를 어떻게 규정하느냐는 정책방향과 성격을 규정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남북한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인식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이며, 자신의 자녀만은 남한 사람으로 키우려는 의지가 강한 탈북 부모의 바람을 자녀양육정책에 어떻게 담아내야 할 것인지 등 활발한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 Ⅲ.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특성

본 장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가정이 어떻게 형성, 해체, 재구성되는지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고찰하였다. '가정'이 자녀양육의 일차적이고 기본적인 공간이란 점에서 가정 형성 과정을 살펴보는 작업은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양육 실태 본질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선결과제이다. 따라서 탈북 전·후로 북한에서의 가정 형성 여부 및 제3국에서의 결혼 및 출산 여부, 남한 입국 후의 결혼 및 출산 여부 등을 살펴봄으로서 탈북가정의 어려움, 어머니로서의 탈북여성의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자녀양육의 어려움 등을 파악하였다.

#### 1. 통계 본 북한이탈주민 특성

##### 가. 인구학적 특성

〈표 III-1-1〉 북한이탈주민 입국자 성별 추이변화

단위: 명, %

구분	~'98	~'01	'02	'03	'04	'05	'06
남(명)	829	563	506	469	626	423	509
여(명)	118	480	632	812	1,268	960	1,509
합계(명)	947	1,043	1,138	1,281	1,894	1,383	2,018
여성비율	12%	46%	56%	63%	67%	69%	75%
구분	'07	'08	'09	'10	'11.1	합계	
남(명)	570	612	666	578	41	6,392	
여(명)	1,974	2,197	2,261	1,798	138	14,147	
합계(명)	2,544	2,809	2,927	2,376	179	20,539	
여성비율	78%	78%	77%	76%	77%	69%	

주: ~2011년 1월까지의 입국자 기준

자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홈페이지(www.dongposarang.or.kr: 검색일 2012년 4월)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성별을 보면, 여성이 압도적으로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0년대만 하더라도 탈북 여성의 비율은 10%대에 불과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탈북 여성의 비율이 점점 많아졌고 현재 평균 약 70%를 여성

이 차지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탈북민은 30대가 가장 많고 20대, 40대 순이다. 0~9세 아동 비율은 4%에 불과하다. 탈북민의 77%가 여성이며, 가임기 연령대가 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북한이탈주민 여성이 탈북 후 제3국이나 남한에서 출산한 가능성이 높다.

〈표 III-1-2〉 북한이탈주민 입국자 연령별 특성

단위: 명, %

구 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계
누계	793	2,381	5,644	6,575	3,220	989	937	20,539
비율	4	12	27	32	15	5	5	100

주: ~2011년 1월까지의 입국자 기준

자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홈페이지(www.dongposarang.or.kr: 검색일 2012년 4월)

북한이탈주민의 북한에서의 직업을 보면, '무직'이 절반가량으로 가장 많고, '노동자'가 38%로 2순위이었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서도 제대로 된 직업을 갖지 못해 생활고를 겪었고, 탈북의 주요 이유가 '경제적 어려움'임을 알 수 있다.

〈표 III-1-3〉 북한이탈주민 재북 직업

단위: 명, %

구 분	무직 부양	노동자	관리직	전문직	예술 체육	봉사 분야	군인 및 공무원	계
누계	10,248	7,901	381	439	187	798	585	20,539
비율	50	38	2	2	1	4	3	100

주: ~2011년 1월까지의 입국자 기준

자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홈페이지(www.dongposarang.or.kr: 검색일 2012년 4월)

북한이탈주민의 북한 최종 학력은 고등중학교가 70%로 압도적으로 많다. 고등중학교가 의무교육 최종단계이므로 이 단계까지는 이수한 결과라 하겠다. 소수이기는 하지만 전문대 9%, 대학이상 8%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표 III-1-4〉 북한이탈주민 재북 학력별

단위: 명, %

구 분	취학전 아동	유치원	인민 학교	고등중	전문대	대학 이상	기타 (불상)	계
누계	552	186	1,270	14,477	1,873	1,503	678	20,539
비율	3	1	6	70	9	8	3	100

주: ~2011년 1월까지의 입국자 기준

자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홈페이지(www.dongposarang.or.kr: 검색일 2012년 4월)

북한이탈주민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은 서울이 30%로 가장 많고, 경기 26%, 인천 9% 순이다. 탈북민의 약 65%가 서울 및 수도권에서 생활하고 있다. 거주지 선택은 북한이탈주민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지만, 서울의 선호도가 높아서 최근에는 추천으로 거주지를 배정하고 있다.

〈표 III-1-5〉 북한이탈주민 거주 지역별

단위: 명(%)

지역	서울	경기	인천	부산	경남	충남	대구	경북	충북
인원	5,588 (30%)	4,939 (26%)	1,733 (9%)	767	700	690	617	654	573
지역	광주	강원	대전	전남	전북	울산	제주	계	
인원	504	468	431	429	360	226	122	18,801명	

주: ~2011년 1월까지의 입국자 기준, ※사망, 말소, 이민자와 주소 미등록, 보호시설수용자 제외  
자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홈페이지(www.dongposarang.or.kr: 검색일 2012년 4월)

## 나. 경제활동실태

2011년도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실시한 생활실태조사에서<sup>6)</sup> 북한이탈주민(성인) 경제활동 실태를 보면, 탈북민의 경제활동 인구는 4,028명, 비경제활동 인구는 3,101명으로 집계되었다.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취업자는 3,541명이고 실업자는 487명이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6.5%로 일반국민의 경제활동 참가율 61.0%보다 낮으며, 실업율에서도 12.1%로 일반국민 3.7%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1).

경제활동상태를 성별로 보면, 탈북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2.2%, 실업률 12.8%로 탈북민 전체보다 열악한 취업상태를 보여주었다. 탈북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9.3%, 고용률 61.9%, 실업률 10.6%로 탈북여성보다 취업상태가 나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남성중심적 노동시장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탈북민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탈북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 수치는 탈북 여성이 노동시장의 진입과 지속적인 취업활동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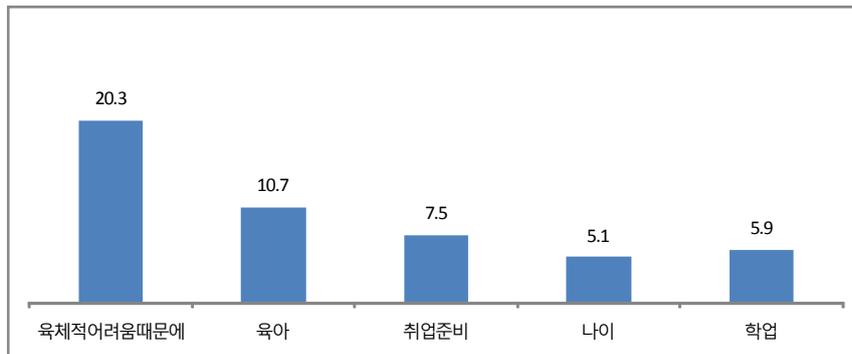
6)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실시한 본 실태조사의 조사대상자는 1948년 1월1일부터 2010년 12월까지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중 19세 이상자이며 조사방법은 방문면접조사로서, 2011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실시하였다.

〈표 III-1-6〉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상태 성별 비교

구분	사례수(명)			2011년 북한이탈주민(%)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경제활동인구	4,028	1,246	2,782	-	-	-
취업자	3,541	1,114	2,427	-	-	-
실업자	487	132	355	-	-	-
비경제활동인구	3,101	553	2,548	-	-	-
관별불가	431	109	322	-	-	-
경제활동참가율	-	-	-	56.5	69.3	52.2
비경제활동참가율	-	-	-	43.5	30.7	47.8
고용률	-	-	-	49.7	61.9	45.5
실업률	-	-	-	12.1	10.6	12.8

자료: 2011 북한이탈주민 생활실태조사 기초분석 보고서(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홈페이지, 검색일: 2012년 6월)

지난 1개월 간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 “육체적 어려움 때문에”가 20.3%로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육아”가 10.7%로 그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취업 준비 중”(7.5%), “나이가 어리거나 많아서”(5.1%), “학업”(4.9%) 등의 이유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민의 70%가 여성이란 사실에서, 구직을 하지 않는 이유는 탈북여성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근로하기에는 힘든 육체적 어려움과 육아는 탈북여성들의 낮은 경제활동을 보이는 주요 이유인 것이다.



자료: 2011 북한이탈주민 생활실태조사 기초분석 보고서

[그림 III-1-1] 북한이탈주민이 지난 1개월간 구직하지 않은 이유(%)

## 다. 가족실태

2011년도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실시한 생활실태조사에서 북한이탈주민(성인)의 가족실태를 보면, 현재 결혼 상태가 35.3%, 미혼이 27.7%, 이혼 13.0%, 사별 10.5% 동거 9.2% 순이었다. 남성의 경우 결혼상태가 40.9%, 미혼상태가 30.9%. 이혼 11.6%로 결혼을 한 경우가 많았다. 여성은 결혼상태가 33.4%, 미혼상태가 26.6%, 이혼 13.5%로 혼인 상태는 남성과 비슷했으나 수치 면에서 이혼, 사별, 별거의 비중이 높았다. 동거도 남녀 모두 약 9%대 정도로 나타났는데 사실혼 상태로 생활하는 사례도 꽤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북한이탈주민은 혼자 사는 경우보다는(27.7%)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경우가(44.5%) 더 많다고 하겠다. 입국년도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2005년 이전에 입국한 경우는 결혼 상태가 42.0%, 2008년 이후 입국한 경우의 31.7%보다 많이 나타나서, 입국 후 시간이 지나면서 결혼을 하는 사례가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혼 상태도 2005년 이전 입국의 경우 이혼이 15.9%로 가장 많아서, 남한 사회에서 정착을 하는 과정에서 결혼도 하지만 이혼도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결혼과 이혼, 또는 적지 않은 동거 비율은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복잡다단한 측면을 시사한다.

〈표 III-1-7〉 북한이탈주민 현재 혼인 여부

단위: 명(%)

	결혼	동거	미혼	별거	이혼	사별	무응답	합계
전체	2,670(35.3)	699(9.2)	2,093(27.7)	222(2.9)	985(13.0)	793(10.5)	98(1.3)	7,560
성별								
남자	780(40.9)	171(9.0)	589(30.9)	52(2.7)	221(11.6)	69(3.6)	26(1.4)	1,908
여자	1,890(33.4)	528(9.3)	1,504(26.6)	170(3.0)	764(13.5)	724(12.8)	72(1.3)	5,652
입국년도								
2005년이전	768(42.0)	136(7.4)	363(19.9)	45(2.5)	290(15.9)	202(11.1)	24(1.3)	1,828
2005-2007년	788(35.5)	219(9.9)	557(25.1)	57(2.6)	296(13.3)	279(12.6)	26(1.2)	2,222
2008년이후	1,114(31.7)	344(9.8)	1,173(33.4)	120(3.4)	399(11.4)	312(8.9)	48(1.4)	3,510

자료: 2011 북한이탈주민 기초설문조사 보고서

남한에서의 결혼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 7,660명 중 24.8%인 1,878명이 결혼했다고 응답했다. 남한에서 결혼한 경우, 배우자의 출신지역은 중국 35.6%로 가장 많았고, 북한 34.0%, 남한 27.2%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응답자 성별에 따라 배우자 출신지역이 다른 양상을 보였다. 탈북남성은 북한출신 여성과 결혼했다가 64.4%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중국 출신 22.0%, 남한 출신 10.2%로 남한여성과의 결혼이 가장 적었다. 이에 비해 탈북여성은 중국 출신 남성이 40.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남한출신 32.7%, 북한출신 24.1%로 나타나서, 남한 남성과의 결혼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III-1-8〉 남한에서 결혼한 배우자 출신지역(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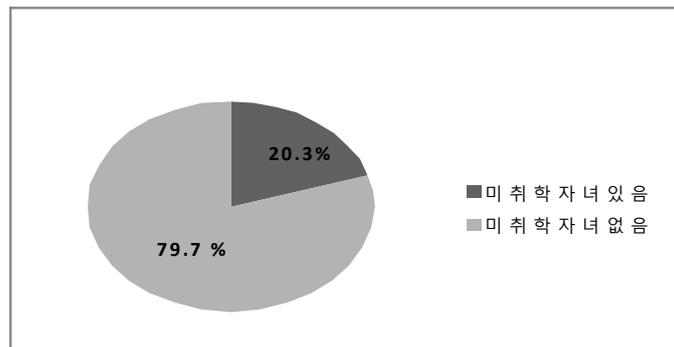
단위: %(명)

	중국출신	북한출신	남한출신	계
전체	35.6	34.0	27.2	100.0(1,878)
성별				
남자	22.0	64.4	10.2	100.0( 464)
여자	40.0	24.1	32.7	100.0(1,415)

자료: 2011 북한이탈주민 생활실태조사 기초분석 보고서

## 라. 영유아 자녀 육아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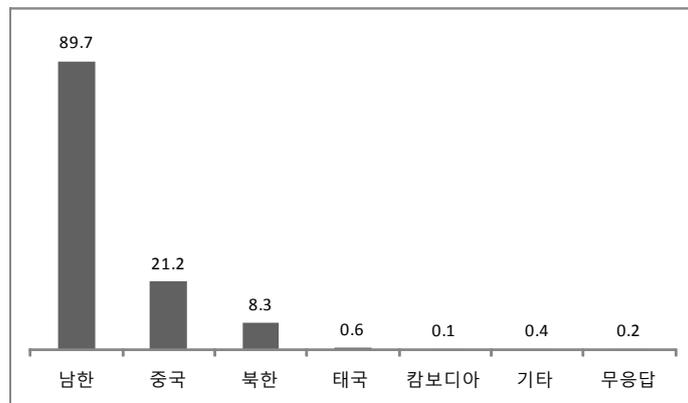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족은 전체의 20.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2011 북한이탈주민 생활실태조사 기초분석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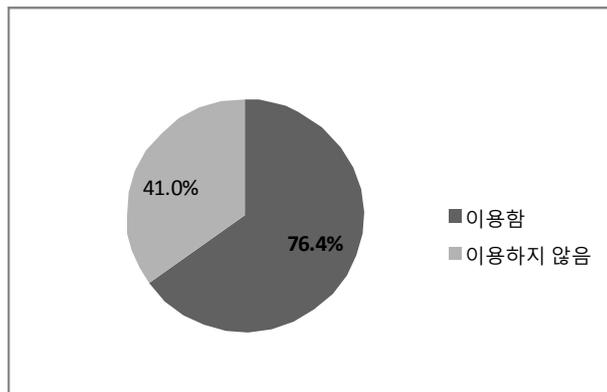
[그림 III-1-2] 북한이탈주민 가정 미취학 자녀 유무

미취학 자녀의 출생지역은 남한에서 태어난 사례가 89.7%로 나타나서 대부분 미취학 자녀는 남한출생임을 알 수 있다(그림 III-1-3 참조). 미취학 자녀의 76.4%가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복수응답) 보고되었다(그림 III-1-4 참조). 정리하자면, 현재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취학 전 자녀가 있다면 대부분 남한에서 태어났으며 대부분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료: 2011 북한이탈주민 생활실태조사 기초분석 보고서

[그림 III-1-3] 북한이탈주민 가정 미취학 자녀 출생국(%)



자료: 2011 북한이탈주민 생활실태조사 기초분석 보고서

[그림 III-1-4] 북한이탈주민 영유아자녀 어린이집 이용여부

## 2. ‘기아탈피 탈북형’과 ‘기획탈북형’ 가정

탈북을 하는 주된 이유는 ‘가난을 벗어나고자’와 ‘이미 가족이 남한에 와 있어서’ 및 ‘북한체제가 싫어서’(자유를 찾아서) 등을 꼽을 수 있다. 2010년 북한이탈주민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45.8%가 ‘식량부족과 경제적 어려움’을 탈북이유로 가장 많이 꼽았으며, ‘북한체제가 싫어서’ 15.3% ‘자유를 찾아서’ 7.3%, 가족을 따라서 6.5% 순으로 나타났다(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0: 138).

‘경제적 어려움’으로 탈북한 전자의 경우를 ‘기아탈피형’, ‘북한체제가 싫어서’ 또는 ‘남한에 가족이 와 있어서’ 탈북한 후자의 경우를 ‘기획탈북형’이라 명명할 수 있는데 현재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특성은 탈북이유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가정유형 분석들은 유용하다.

### 가. ‘기아탈피 탈북형’ 가정

대개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시작한 1990년대 중후반에 북한을 넘어 온 피면담자들의 대부분은 ‘기아탈피형’에 해당된다. ‘기아탈피형’은 탈북의 최초 이유가 남한으로의 입국이 아니기 때문에 탈북 후, 제3국—탈북 후, 지리적으로 중국을 경유해야 하므로 장기적으로 체류하는 제3국은 중국이라고 해도 무방—에서 지내는 시간이 상당히 길다.

‘기아탈피형’은 중국에서 ‘원치 않은’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다. 다시 북송되지 않기 위한 방편으로 결혼을 자의반 타의반으로 도구로 이용하는 데, 이른바 ‘인신매매’로 결혼을 하는 경우이다.<sup>7)</sup> 본 연구의 피면담자들은 대부분 이 유형에 해당되었다(사례 2, 사례 3, 사례 4, 사례 9, 사례 13, 사례 15, 사례 26 등). 이러한 경우는 북한에 결혼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7) 이순형 외(2009)는 남한에 입국하는 탈북민의 여초현상을 북한의 내부상황뿐 아니라 중국의 급속한 도시화와 지역 간 불균등한 경제발전으로 중국 내부적으로 혼인시장의 불균형에 기인한다고 설명하였다. 남한에서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오디면서 농촌의 여성인구가 모두 도시로 떠나 버려 농촌의 혼인시장 문제를 야기했듯이 중국 농촌에서도 비슷한 데 북한하고 집경하고 있는 중국 동북지역은 중국 내에서도 여성이 가장 부족한 지역으로서, 탈북여성은 이러한 중국 동북 지역의 혼인시장 성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되고 있다. 중국에서 탈북여성은 불법체류자 신분이기 때문에 나이 많은 한족이나 조선족 농촌남성은 큰 비용이 들지 않고 탈북여성을 살 수 있으며, 탈북여성 수가 증가하면서 거래액은 낮아지는 추세라 한다(이순형·김창대·진미정, 2009: 42-43).

인신매매로 결혼을 하는 중국의 남자들은(조선족, 한족 모두) 장애인 등 정상적인 결혼이 어려운 남자들이라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중국에서는 결혼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뭐 장애라던가, 아니면 뭐 집이 곤란해 서라던가, 여러 가지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탈북여성) 선택이 되는 거죠.(사례 9)

돈으로 샀으니까 물건이나 같아요. 뭐 다행히 사람이 좋아서, 남자가, 신랑이 좋아서 잘해주면 괜찮고 뭐, 근데 거의 그런 사람 없어요. 거기가면 최고 못사는 사람 아니면 병신 아니면 뭐, 한족들 그런 경우에는 진짜 사람이 때리거나, 거의 모자란 사람들 이런 데다 보내주니까(사례 10).

사례 9는 탈북 후 복송을 당한 후에, 인신매매를 ‘자발적으로’ 선택하였다.

제가 한 번 잡혀나갔잖아요. 두 번째 잡혀왔을 때는 무조건 시집은 간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중국의) 안쪽으로 들어가야만 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사례 9)

사례 17은 돈을 벌기 위해 2001년에 탈북했다가 인신매매로 팔려가서 중국사람과 결혼생활을 강제로 하면서 자녀 2명을 출산했고, 우연히 한국회사에서 일하게 되면서 남한으로 입국한 경우이다.

**원래는 중국에서 돈을 벌고 북한에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인신매매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도망도 쳤지만, 잡혔고, 제가 임신이 안되자 임신 시키는 약까지 먹어가면서 임신 시켰어요. **딸 아이 낳았어요.** ……나보다 12살도 더 많은 남자였어요. 양육강식을 한 거죠. 제가 그 당시 21살이었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도망갈 생각밖에 안했어요. …… 제가 너무 비참하게 살고 있는 거죠. 아이 둘하고, 벅짚으로 된 집에서 살고 있고, 그러니까 저한테 중국 돈 100원을 주면서 곧 도망가야 된다고, 여기서 살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가면 잘 살수 있다고 하면서 희망을 주더라고요.** …… 저는 아이 아빠라고, 남편이라고 생각해 본적이 없어요. 중국 사람이긴 하지만, 북한 여자하고 같이 살았으니까요. …… 한국사람이 많은 텐진에서 한국회사에서 주방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거기서 인터넷을 통해 한국을 접했고, 탈북자 동지회, 순희 동지회라든가 그런 탈북자 사이트를 접했어요. 거기서 탈북자들의 활동을 보고 눈을 뜨게 되었어요(사례 17).

사례 17은 단독으로 남한 입국 후, 딸 아이를 데려오기 위해 중국의 남편을 초청했으나 결국 이혼했다. 딸 아이는 중국에서 살고 있다. 사례 10도 탈북 후, 자신도 모르게 인신매매로 팔려가서 불행한 결혼을 하였다. 남편과 같이 살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임신을 하면 그때마다 임신중절을 했다고 한다.

제가 탈북했을 때(1998년) 그때가 제일 북에서 진짜 많이 (중국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이들이 멀다 하고 (탈북자들) 잡으러 오니까 언제, 나는 그 나이에는 애를 낳겠다, 이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근데 낳게끔 사람들이 유도를 해요, 이제. 애를 빨리 가지게끔, 임신이 되게끔. 뭐 이제 시어머니들인가 이렇게 말해갖고 임신 되면 이제, 바로바로 가지게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이제 양튼, 기회가 안 되서 그런지 생기면 바로바로 병원에 가서 바로바로 (임신중절 수술을) 해버렸어요(사례 10).

중국에서 인신매매로 결혼했다고 해서 입국 후, 모든 가족이 해체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의 사례 13은 인신매매로 중국 한족)와 결혼을 했으나, 입국 후 남편은 초청하여 혼인신고를 해서 같이 살고 있는 경우이다.

그때(탈북)까지만 해도 남한에 올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냥 중국으로 탈북 하는 줄만 알았어요.…… 탈북 할 때는 오빠가 친구보고 부탁해서 언니한테 좀 데려가 달라고 해서 중국에 왔는데, 그때 언니한테 전화를 했더니 못 받았고, 자기 들끼리 속덕속덕하더니, 저는 중국말을 모르니까 못 알아들었어요. 언니하고 연락이 안 되다 보니, 저는 허튼 곳으로 갔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를 중국 돈으로 2만원에 판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애기 아빠가 나를 2만원에 산거지(사례 13).**

다음 사례 3은 중국에 와 있는 사촌들에게 팔려서 다리 하나가 불편한 조식족 장애남자와 결혼한 경우이다. 이 사례 역시, 여성이 입국한 후 남편을 초청해서 지금까지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사례이다.

(돈 벌러) 중국에 왔는데 사촌들이 많았어요. 우리 엄마 형제들이 중국에 있었거든요. 엄마가 고향이 중국이에요. 그런데 사촌들이 돈이 원지 다 팔아먹더라구요. 우리 언니도 팔아먹고 그래가지고 뿔뿔이 헤어졌어요.……그래도 우리는 친척이라고 조금 사는 집에 팔고, 돈 좀 받았더라구요(사례 3).

이처럼 인신매매로 원치 않는 결혼을, 그것도 정상인과의 결혼이 아니지만 몇몇 사례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연민과 아이 아빠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결혼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는 남편이 경제적 능력은 낮지만, 가정적인 경우가 많았다. 사례 3과 사례 12의 배우자 모두 이러한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다.

우리 남편은 정말 100점 남편이에요. 다 잘해요. 일요일날 되면 쓰레기 분리수거 다하고 내가 쓰레기 묶어서 밖에 내놓으면 나갈때면 그냥 안뒤요. 무조건 내다 버리고……애들한테도 음식을 쓰레기 못 버리게 해요. 우리 남편이 저와 애들한테 너무 잘해요(사례 3).

새끼 아버지이고, 저 사람두 불쌍한 사람이에요. 신랑이 사고 수준이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나두 내가 팔려가 살았지만 어쨌든 엄마두 없구 아버지두 없구……서로 의지할 데 없으니깐 이렇게 사는 거죠. 내가 해달라는 건 다 해줘요. 내가 이렇게 나와두(일하러 강원도에 내려가 있어도) 집안을 깨끗하게 거두고 있어요. 둘이서 살면서 크게 싸우고 이런 거 없어요. 한 가지 스트레스 받는 건 아이들이 밖에서 나가 당해도 아빠로써 말 한마디라도 (상대방에게) 따끔하게 해 주면 내 아들의 위신이 올라가구 그러겠는데 그러질 못해서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사례 13).

## 나. ‘기획탈북형’ 가정

‘기획탈북형’은 탈북의 이유가 ‘가족이 이미 남한에 와 있어서’ 또는 ‘북한체제가 싫어서’ 이므로 처음부터 남한 입국을 목적으로 탈북을 감행한다. 따라서 중국 등의 제3국에서의 시간이 짧으며 북한의 가족과 함께 오는 경우가 주를 이룬다(사례 1, 사례 6, 사례 11, 사례 24, 사례 30). 이 때 대부분은 가족단위로 탈북은 위험하기 때문에 부부나 가족구성원은 시차를 두고 입국을 한다.

탈북해서 한 달도 채 못되서 남한에 온 사례 1은 북한에서 남편과 이혼하고 친정부모가 먼저 남한에 와 있어서 남한행을 결심하고, 딸아이와 같이 탈북하였다. 동생이 먼저 온 사례 24는 2010년 12월에 탈북해서 이듬해 2월에 입국하였으며, 친정식구 모두가 남한에 와 있었던 사례 3도 2007년도 7월에 탈북해서 10월에 입국한 전형적인 기획탈북 사례이다.

탈북해서 중국에서 얼마있지 않았어요. 여기(남한) 엄마 아버지가 계시니까. 브로커비는 엄마아빠가 먼저 왔으니깐 나는 금방 왔어요(사례 1).

탈북한 이유는 경제적 것도 좀 그렇고 동생이 (남한에) 먼저 와 있었어요(사례 24).

한국에 형제가 있었어요. (친정)부모님도 계셔서 언젠가는 내가 (남한으로) 갈 거로 생각했죠(사례 30).

사례 7과 사례 11은 ‘북한체제가 싫어서’ 내지는 ‘가족 중 북한 반체제 행적이 있어서’ 남한에 온 대표적인 사례이다. 사례 7은 친오빠가 북한에서 경제력이 있는 가정에서 성장했지만, 친오빠가 군대에서 총살을 당하면서 탈북한 사례이며, 사례 11은 시할아버지가 국군포로 출신이라 소위, 토대가 좋지 않았는데 남편이 절도혐의를 받아 탈북을 했고, 먼저 탈북한 남편의 도움으로 남한에 온 경우이다. 사례 11은 2006년 4월에 탈북해서 2006년 9월에 입국해서 탈북하고 입국까지 시간이 약 5개월 정도 소요됐으며, 북한의 아들과 같이 왔다.

엄마 아빠가 근로력이 좀 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좀 살겠다는 의지가 좀 세거든요. 아빠가 당원이고 식료상점에서 20~30년을 근무하셔서 경제생활이 좋았어요. ……우리 오빠가 총살되고 이렇게 되었으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이북에서도 문제시 되거든요(사례 7).

2006년 4월 15일에 탈북해서 2006년 11월 30일에 하나원을 수료했어요. 아들과 같이 왔어요. 남편은 나보다 1년 반 전에 먼저 왔구요. 남편은 북한에서 공동재산인 염소 2마리를 훔치다가 들켜서(탈북을 했어요)……(사례 11).

사례 30은 친정식구 모두가 남한에 이미 와 있는 경우라 탈북 후 입국까지 시간이 1년이 채 안 걸렸다. 사례 6도 남편이 먼저 남한에 와서 부인과 아들을 입국시킨 경우이다. 그런데 북한 또는 중국에서 형성된 원가족이 유지되는 '기획탈북형'도 남한에서 와서 가족위기를 겪는 경우가 많다. 사례 6과 사례 30은 남한에서 이혼을 했고, 사례 11은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 중에 있었다. 이혼의 주요 이유는 남편의 외도 및 가부장적 태도와 폭력에 있다. 사례 6은 남편이 중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북한여자와 결혼을 해서 아이까지 낳았지만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남한에 와서 알게 되고, 이혼에 이르렀다. 또한, 충격이 너무 커서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았다.

남편이 저를 많이 잡았죠……근데 그 여자(남편과 결혼한)가 낸데 찾아와서 이혼을 하라고 요구했어요. 두 번째를 또 임신했다……저는 이혼하고 정신을 잃었죠……(사례 6).

사례 11과 사례 30은 남편의 폭력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었다. 사례 11은 남편의 잦은 폭력을 못 이겨 여성쉼터 등지에 아이들과 함께 피신을 했고 초등학교 큰 자녀는 지방의 학교로 전학을 보낸 상태이다. 남편폭력이 자녀에게까지 이어지기 때문이다. 사례 30은 남편의 폭력으로 결국 이혼을 하였는데, 경찰출동을 해서야 부부싸움이 해결된다는 점에서 폭력 수준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겠다.

애 아빠가 자꾸 그래요. 너 많이 달라졌다고, 저쪽에서 살던 내가 아니래요. 이제 여기 오니까 이 물먹어서 다 그렇게 바뀐다고 날보고 계속 그러더라구.……심하게 싸우고 나서 친정으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애기 눈에 밝혀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애기 땀에 또 갔죠. 그래서 저희 오빠랑 이번에 혼내겠다고 어디 구류장에 넣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12를 불렀거든요. 근데 경찰이 이게(부부싸움 한 지가) 일주일 지난 일이라 사건처리 하기 어렵고, 60년대는 이렇게 살았지만, 여자들이 남자한테 목 매여서 살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산다고(사례 30).

사례 11과 사례 30이 모두 북한의 배우자인데 이 경우, 북한에서의 가부장적이고 전통적·고정적인 성역할 태도를 특징으로 하던 북한에서의 습관이 부부간 주요 갈등 요인이다. 북한에서는 가부장적이고 억압·순정의 수직적인 부부관계가 가능했겠지만, 부부관계가 보다 평등하고 이혼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남한 사회에서 억압적인 부부관계를 수용하며 살기란 쉽지 않다고 하겠다. 중국에서 원치 않는 결혼을 한 경우가 많은 '기아탈피형' 가정에서 남편이 가정적인 경우는 지금까지도 원만한 부부관계와 가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표 III-2-1〉 기아탈피탈북형과 기획탈북형 가정의 특성 비교

	기아탈피 탈북형	기획탈북형
탈북이유	경제적 곤궁 *탈북 시 남한입국이 목적이 아님.	애초의 탈북의 주요 목적이 남한 입국임.
제3국 체류기간	대개 4~5년 이상	짧게는 한 달 이내, 길게는 1~2년
제3국에서의 결혼 여부	제3국에서 결혼한(인신매매) 경우가 많고, 자녀를 출산하기로 함.	거의 없음.
남한 입국 후	- 원가족을 <sup>8)</sup> 유지하는 경우(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음)도 있지만 가정불화(배우자 폭력)로 인해 가족이 해체되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경우가 많음.	

### 3. 경제적 특성

본 설문조사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월 평균 근로소득은 100만원 이하가 57.0%를 차지했다(표 I-3-6 참조).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액은 제외된 소득이다. 동일 조사에서 55.0%가 현재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다고 했다. 참고로 2009년도 조사에서도(장명림 외, 2009) 조사대상자의 88.6%가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에서의 경제적 빈곤은 기아탈피 탈북형이나 기획탈북형 가정 모두 동일하게 겪고 있었다.

8) 여기서 원가족이란 남한 입국 전에 형성된 가족을 의미함. 따라서 북한에서 형성된 원가족이 남한에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북한에서 이혼·별거한 경우는 중국에서 결혼으로 형성된 가족을 원가족이라 하겠음.

## 가. ‘먹고 살기 위해’ ‘두고 온 가족을 위해’ 노동의 연속

어느 조사를 막론하고 북한이탈주민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은 ‘경제적 어려움’을 1순위로 꼽힌다. 북한에서도 중국에서도 어렵게 살아온 이들 탈북여성의 삶이 남한에 와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요즘은 친구가 소개해 줘서 택배회사 포장 하는 회사에 가서 일해요. 시간당 5천원씩 준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은 그걸 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벌어 가지고 내 자식들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돈이 따라줘야 해주고 말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잖아요. 그래서 저도 시간만 있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번에는 00에 핸드폰 케이스 만드는데 가서 거기서 시간당 4500원씩 받고 4일 일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애들 준비 시켜서 어린이집 데려다 주고 버스타고 20분 가서 하루 종일 앉아서 붙이고 저녁 6시 되면 퇴근해서 버스타고 집에 오면 7시에 애들 데려와서 씻기고 밥 먹고 너무 힘들어요. 너무(사례 4).

아이를 혼자 키우는 엄마들이 솔직히 힘들어요. 생계비(기초생활수급) 70만원을 5년만 주다가 딱 끊어버리거든요. 그것을 주다가 안 주니까 (유홍)업소 쪽으로밖에 돌 수 밖에 없어요. 5년 동안은 생계비 70만원에 결혼정보회사에서 130만원 해서 200만원으로 살았거든요.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여자들이 와서 50~60%, 40대까지 그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요. 저는 말이로 태어나서 북한에 돈을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가거든요(사례 17).

탈북여성들이 돈을 버는 것은 자신과 자녀를 위해서만 아니라고 한다. 북한에 있는 부모님이나 가족, 중국에 두고 온 자식들의 양육비, 입국비용 등을 마련해야 하므로 이 정도를 충당할 수 있는 정도의 돈을 벌어야 하며 때로는 정부로부터 받는 정착지원금도 절약하기 위해 거주지를 지방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어른들은 대충 먹자하고 애들 위주로 먹이려고 하는 데 넉넉하게 먹이지는 못해요. 북한에 내 집이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모아서 내 집에 보내줘야 되니까요. 북한에 있는 오빠한테 보내줘야 해요(사례 4).

(영양사 자격증 취득 후) 어린이집에 들어가서 영양사로 두 달 정도 일했어요. 그런데 월급이 50만원인가 너무 작아서 도저히 안 되겠는거예요. 저희들 욕심이라기 보다는, 왜 한국분들보다 돈을 더 벌어야 되냐면요? 북에 계시는 부모님한테 돈을 안 보내면 굶어 죽어요. 북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사례 17).

저는 애기도 중국에 있었고 남편도 데려와야 하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지원금을 적게 쓸 수 있는 지역으로 거주지를 신청했어요(사례 9).

## 나. 자격증 취득에 주력, 여전히 미취업

많은 탈북여성들이 남한 입국 후 자격증 취득을 위해 직업학교나 학원을 다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사례 13, 사례 17). 현재 유흥업소에 다니고 있는 사례 17의 경우 초기 정착단계에서는 각 종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였다.

대전에 있을 때,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를 했어요. 사이버대학을 다니면서 보육교사 자격증 2급을 땀어요. (사례 13).

요리사 자격증도 따고, 한식 양식 자격증, 컴퓨터 자격증, 영양보호사자격증도 다 땀어요. 제 나름에 열심히 노력했어요. 저도 유흥업소 다니는 여자라고 놀림을 받는 것보다 당당히 무엇을 해보려고 노력했어요.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따려고 대학도 다니고 있거든요. 지금 잠깐 휴학계 했지만요(사례 17).

그러나 직업학교(학원)를 다니는 또 다른 주요 이유는 자격취득금을 받기 위해서였다.

요리사 자격증을 딸 때는 돈이 월급처럼 많이 나왔어요. 6개월 동안은 한달에 90만원씩 나왔어요. 그리고 요리학원을 6개월 다닐 때에는 43만원이 더 나왔어요. 자격증을 따면 200만원 정도 나왔고, 그리고 6개월만 다니면 한달에 20만원씩 120만원 정도 더 나왔어요. 이 돈 때문에 학원을 다니고 자격증을 땀 거예요. 이 때 돈을 좀 모았어요(사례 17).

자격증을 따야만 자격취득금이 나오니까, 정착금을 예전에는 많이 주던 거 이제는 공부를 하면 준다, 이렇게 해서 배우기도 하지만요. 무슨 졸업한 거 이렇게 해서 아마 저희가 500백만원 받은 것 같아요(사례 30).

그러나 자격증 취득의 이유를 차지하고라도 자격증이 실제 취업에 도움이 거의 되지 못하고 있었다.

영양사 자격증을 따고 어린이집에 영양사로 두 달정도 일했어요. 그런데 월급이 50만원인가 너무 작아서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사례 17).

취득한 자격증(컴퓨터)을 활용해서 직업을 갖지는 못했어요. 지금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사례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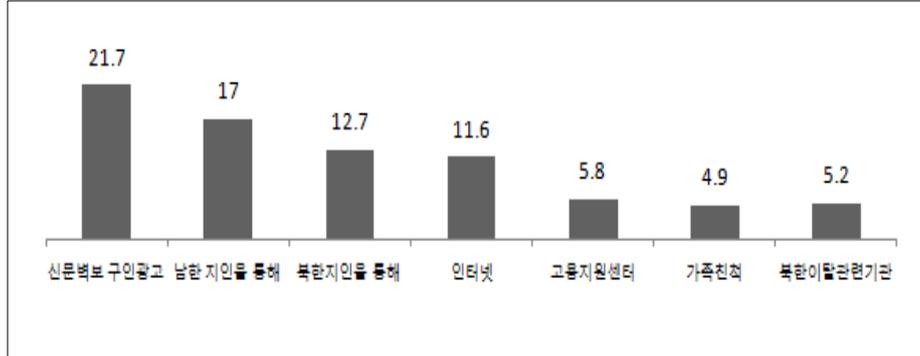
4개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례 17도 지금은 자격증과는 무관한 일에 종사하고 있었다. 보육교사자격증(2급)을 취득해서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로 근무한 사례들은 있으나(사례 13), 낮은 임금과 육아 등의 이유로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대상 교육에서 직업교육을 적용교육 못지않게 간주하고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실효면에서 미지수이다. 북한이탈주민 담당 실무 및 연구경험이 있는 담당자 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서비스 설문조사에서, 담당자들은 하나센터(지역적응센터)가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23명(82.2%)이 보고하였다(김선화·윤여상·허영철, 2010: 94). 그러나 본 연구의 면담조사에 참여한 영유아 자녀가 있는 탈북모들은 하나센터에서 제공하는 일자리는 현실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업이 거의 없다고 한다.

(하나센터에) 몇 번 갔어요. 근데 거기(직장) 우리가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가는 데도 아니고, 또 이렇게 **우리하고 (근로)시간이 딱 맞는데도 아네요. ……저는 일단 애기가 달려 있고, 가정주부잖아요. 지금 금방 나온 사람들은 독신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데나 오래도 되고, 가래도 되고 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저는 일단 가정을 가진 주부니까, 내가 또 일하는 시간도, 짜야 되잖아요. 애기 데려다 주고, 그 시간을 맞춰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데가 적더라고요(사례 9).

북한이탈주민 가족의 낮은 소득은 이미 여러 연구들에서 규명된 사실이다. 본래 기초생활수급은 하나원 퇴소 후 6개월까지만 조건 부과를 면제하고 지급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조건부 수급권자로 편성하고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보호기간이 대부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초생활수급에 의존하고 생활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은 이들 가정의 주요 소득원이다. 또한, 대부분 법적 보호기간인 5년이 지나기 때문에 국가의 공식적인 취업지원서비스의 일차적인 대상자는 아니다. 본인이 원하면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지만, 이들에게 정부제공의 공식적인 취업서비스는 거리가 있어 보였다.

추가 가구 소득원인 일용직이나 부업을 얻게 되는 주요 경로가 '신문 백보'(21.7%) '가까이 지내는 남한, 북한 사람을 통해서'(29.7%), '가족이나 친척을 통해'(4.9%) 등의 사적 경로이다. '고용지원센터를 통해'(5.8%) '북한이탈주민 관련 기관을 통해'(5.2%) 등과 같이 공적전달을 통한 서비스 이용자는 일부에 그쳤다(그림 III-3-1 참조).



주: 이외에 학교(직업훈련원)나 교사/동창, 동문을 통해, 종교기관, 복지기관 등이 있음.  
 자료: 2010 북한이탈주민 기초설문조사 분석보고서

[그림 III-3-1] 북한이탈주민 취업 정보 경로

탈북민은 일반 국민보다도 실업률이 4배 가까이 높으며, 탈북여성은 탈북남성보다도 실업률이 높다(표 III-1-6참조)는 통계에서 나타났듯이 탈북여성이 남한에서 취업한다는 것은, 그것도 원하는 직장에 취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게 엄연한 현실이다. 취업의 장벽으로는 탈북민, 장애, 질병, 육아 등을 꼽을 수 있겠다. 영유아 자녀가 있는 탈북가정은 어린이집의 이용시간과 근로시간이 맞아야 취업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일자리를 찾기도 어려울뿐더러 찾았다 하더라도 취업이 바로 되는 것도 아니다.

저번에 면접 보러갔어요. 그런데 이력서를 써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북한에서 왔다고 새터민이에요 그러니까 “아 새터민 이세요?”해서 “예”. 그랬더니 이력서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력서 쓸 거 없다고 그랬더니 북한에서 공부 어디까지 했냐고 해서 (고등)중학교까지 했다고 했어요.……여기와서(남한와서) 뭐 했냐고 해서 여기와서 이따금씩 알바한다고 하니까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알았다고 이력서 제출하고 합격되면 전화주겠다고 며칠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렸어요. 근데 전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베희시장엔 계속 그 기업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베희시장에, 그래서 내가 다시 또 전화 했어요. 너무 화가 나 가지고 “아니 일하겠다는 사람 일 안 시키고 왜 계속 사람 구한다고 쓰냐고 내가 일 잘 하겠으니까 나 좀 써 달라”하니까 안된다는 거예요(사례 4).

솔직히 말해 애 키우는 동안에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애 딸린 엄마를 받아주는 데도 없거니와, 더구나 우린 여기 사람이 아니로 새터민이니까 면접에서 떨어질 때가 많아요. 그게 제일 그렇더라고요(사례 9).

일반사람도 면접을 하더라도 취업을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이러한 경험은 탈북민이라고 해서 특별히 겪는 일은 아니지만, 탈북민은 자신이 북한출신이라고 해서 취업이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물론, 이러한 이유도 노동시장에서 작용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실제 크게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하루라도 돈을 벌어야만 하는 이들에게서 취업은 절박해 보였다.

부부 모두 근로능력이 없는 사례 3—남편 장애인, 본인은 당뇨합병증—은 기초생활수급을 월 100만원 정도 받지만, 이 돈으로는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로는 부족해서 끊임없이 부업을 하는 상황이다.

우리는 남편이 장애인이고 내가 이래서 한달에 100만원 생계비가 나와요. 그래도 매달 관리비, 핸드폰비, 세금까지 하면은 100만원 모자라요. 우리가 놀면 안돼요. 빛 안지고 살고 살자니깐 막 그러는거예요(부업을 해야하는 거예요). 내가 손이 아픈 것도 그게 다 내가 밤에도 잠을 안자고 일을 해서 인대에 염증이 생겼대요. 인대를 너무 사용해서…… 손을 못 굽혀요. 식당을 가자고 해도 이 손을 써야 하는데(손을 못 써서)……(사례 3).

#### 4. 심리·정서적 특성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심리·정서적인 면과 경제적 측면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두 영역이다. 본 설문조사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자아존중감, 우울감, 결혼만족도 양육스트레스 등 심리·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취업'으로 확인되었다. 직업유무에 따른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우울감, 결혼만족도, 양육어려움 차이를 F검정한 결과, 직업유무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가 어떤 집단 간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Scheffé 사후 검증한 결과, 어머니가 취업을 한 경우 자아존중감이 높은 반면, 무직이거나 주부인 경우 우울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을 하거나 주부인 경우 결혼만족도가 높았고, 무직인 경우는 결혼만족도가 낮았다. 직업을 갖고 있는 탈북모의 경우 자아존중감, 결혼만족도가 높으며 우울감이나 양육의 어려움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13이다. 후술하겠지만, 사례 13은 입국 후 오랫동안 심한 우울증으로 앓으면서 남편과 이혼하고, 자녀양육에도 어려움을 심각하게 겪었지만, 원하던 대학공부를 하게 되면서 우울증이 많이 개선되었다.

〈표 III-4-1〉 직업유무별 모의 자아존중감, 우울감, 결혼만족도, 양육어려움 차이

단위: 점

구분	자아존중감 M(SD)	우울감 M(SD)	결혼만족도 M(SD)	양육어려움 M(SD)
취업	3.28(.38) <sub>b</sub>	1.64(.68) <sub>a</sub>	4.16(.90) <sub>b</sub>	3.04(.74)
무직(실직)	2.86(.21) <sub>a</sub>	3.27(.80) <sub>b</sub>	1.94(1.09) <sub>a</sub>	3.96(.59)
주부	2.98(.36) <sub>ab</sub>	2.72(.97) <sub>b</sub>	3.70(.94) <sub>b</sub>	3.32(.72)
F	5.49**	11.23***	8.75***	3.23*

주: a, b, c 집단 간 차이가 있음을 의미함.

\*  $p < .05$ , \*\*  $p < .01$ , \*\*\*  $p < .001$ .

경제적 자립이 탈북여성에게 긍정적으로 미친다는 또 하나의 조사결과는 현재 기초생활 수급여부 변인이다. 수급여부에 따른 조사대상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우울감, 결혼만족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자아존중감, 우울감, 결혼만족도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수급을 받지 않는 경우가 수급을 받는 경우보다 자아존중감과 결혼만족도가 높았고, 우울감이 낮았다.

이상의 내용은 장명림 외(2009) 연구에서 ‘소득계층에 따른 어머니의 자존감, 우울감, 결혼만족도 점수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와 유사하다. 장명림 외(2009)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초수급가정의 어머니보다 차상위 가정과 3층이상 가정의 어머니가 자신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었고, 우울감이 낮았으며, 배우자가 남편·영유아의 양육자로서 역할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장명림 외, 2009: 152). 경제적 수준이 어머니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I-4-2〉 현재 기초생활 수급여부별 자아존중감, 우울감, 결혼만족도 차이

단위: 명(%), 점

구분	자아존중감		우울감		결혼만족도	
	명(%)	M(SD)	명(%)	M(SD)	명(%)	M(SD)
기초생활수급 받음	55(55.0)	2.89(.34)	55(55.0)	2.88(1.01)	40(40.0)	3.33(1.08)
기초생활수급 안받음	45(45.0)	3.19(.36)	45(45.0)	2.18(.87)	40(40.0)	4.06(.83)
T		-4.23***		3.67***		-3.36***

\*\*\*  $p < .001$ .

이처럼 탈북가정에서 경제력은 심리적·정서적 안정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많은 탈북민들은 북한에서나 중국에서 살면서 경제적 여유로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제력에 대한 갈증은 짐작이 된다. 북한이탈주민 대상의 설문조사에서 남한에서 직면한 가장 어려운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이 단연 1순위이다. 높은 월급과 안정성이 보장되는 직업을 구하기 위해 입국 후, 각 종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앞에서 고찰했듯이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해서 관련 직업계에서 활동하는 탈북모들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남한에 와서 대학을 다니고 싶었던 사례 16은 연년생 자녀를 출산하면서, 하고 싶은 공부를 못하게 되자 심한 우울증을 앓은 사례이다. 오랜 우울증 증세로 정신과 상담과 약물치료를 받아왔다. 그러다가 2012년 3월부터 원하던 대학교에 전액학비지원으로(보호기관 5년 미경과) 다니게 되면서 많이 좋아졌다고 한다.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7년 동안 아이를 키우면서, 대학에 가고 싶었는데 못가니까 자신감도 떨어지고 힘들더라고요. 존재감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저란 존재 가치가 없었어요. 아이를 낳다보니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미기도 했어요. 의사선생님은 약을 더 먹어야 한다고 했는데 제가 끊었어요. 내 의지로 해보겠다고 했어요. 대학교에 들어가서 우울증이 많이 사라졌어요. 예전에는 아이들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한다고 생각해서 화가 많이 났었어요. 아이키우는 데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었어요. 제가 15층에 살았는데 정말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어요(사례 16).

사례 16과 같이 남한에 와서 초기에 심리·정서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들을 보면, 북한이나 중국에서의 생활이 힘들지 않았다는 공통점을 발견하게 된다.

엄마가 중국사람(조선족)이에요. 그래서 **중국에 있을 때, 힘들게 살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한국에 오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됐어요. 싱글이었을 때는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아이 두 명이 있으니 제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제약이 많더라고요.……아이를 낳고, 또 아이가 아프다 보니, 직업학교 신청도 했지만 결국은 다니지 못했어요. 그게 수없이 반복되면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중국에 있을 때에는 외로워서 아이들을 많이 낳아서 북적북적 거리면서 사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아이를 낳고 보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사례 16).

사례 6도 누구나가 부러워하는 '본보기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이 크게 없었다. 그런데 남한에 먼저 간 남편이 브로커를 대 주면서 아들과 왔지만, 남편이 북한여자와 결혼을 해서 아이까지 낳은 사실을 알게 되고, 이혼을 하면서 심한 우울증을 앓은 경우이다.

저는 북한에서 본보기 직장에 다녔어요. 누구나 들어가지 못해서 그랬었어요. ……저는 탈북을 안 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밀수를 하다가 탈북을 했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동거하고 아이까지 낳고 살고 있는 사실이) 너무 충격이고, 진짜로 그게 우울증이겠죠, 우울증인지는 몰랐는데 이게 방에서 나오기 싫더라고요, 방에서. 우리 집이 방이 두 칸(개)인데 그 작은방에 가구 하나도 집에다 하나도 해 놓지도 않고 땅 바닥에 있는데 걸지 못하겠더라고요, 걸지 못하고 화장실 가는 것도 막 기어 나왔다니까요(사례 6).

## 5. 결혼 상태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주요 특징 중에 하나가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혼인신고를 해서 가정을 형성하면 생계급여가 감소되거나 중단될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이들은 생계급여가 나오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과 같이 산다고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다(이순형 외, 2009: 58).

우리 사람들이 혼인 신고를 안 하는 거예요. 수급하고도 관련 되니까. 예전엔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감시도 많이 했었어요. 막 전화도 하고, 방문도 하고, 그런데 항의가 들어왔나봐요. 우리가 원래부터 감시 속에 살았는데 여기까지 와서도 그래야 되겠냐고, 그리고 지금 남편과 계속 살 수 있는 보장도 없잖아요. 최근에는 항의가 그리 없었어요. 저같이 아이들이 있을 때에는 특히 더 심하죠. 이분들도 알긴 아는데 알면서도 그냥 눈 감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탈북자가 말을 한 대요. 나는 수급자 짜르고 저 집은 왜 수급비를 주느냐 그렇게 해서 집에 조사도 나오고, 저희는 조사가 안 나왔었는데, 조마조마하고, 탈북자들이 항의를 하고 그랬나봐요(사례 6).

남편(남한 출신)과 산지는 3년 정도 되었지만 결혼등록은 아직 안 했어요. 그래서 애기도 내 앞으로 되어 있고, 결혼사지만 찍어놨지 결혼등록은 아직 안했어요. 결혼등록을 하면 (수급에서) 짚린다고 하더라구요(사례 22).

사례 10은 편법적으로 생계급여를 타는 사례들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였다. 자신은 생계급여에 의존해서는 자립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고 적은 소득으로 살아가는 데 수년 간 편법적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를 비판하였다.

확실히 힘든 사람들은 그럴 수도(혼인신고를 안하고 생계급여를 탈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생계급여를 타기 위해 이용하는 거죠. 7, 8년을 (생계급여를) 탄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너무 심하다 그런 게 좀 있죠(사례 11).

일반적으로 동거나 사실혼 관계가 법률혼 결혼관계보다 지속기간이 짧고 불안정성이 높다는 연구를 통해 잘 알려진 사실이다(Thornton, Axinn, & Xie, 2007; 이순형 외, 2009: 38 재인용). 주로 생계급여 때문에 혼인신고를 못하지만, 이러한 사실혼 상태가 탈북가정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 본 연구의 심층면접조사와 설문조사에 참여한 탈북여성들의 절반 가까이가 한부모 가정이었다. 탈북민들은 낯선 땅에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끼리 만나서 새롭게 가족을 형성하지만, 동거나 사실혼 관계에서는 안정성이 낮기 때문에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이순형 외, 2009: 58). 또한 남한에서 만난 남자들이 대개 저소득층 출신이라 학력이나 경제력이 낮기 때문에 경제적 안정을 원하는 탈북여성에게는 곧 불만의 요인이 되며, 가정해체의 위기에 이르게 된다. 다음의 사례들은 모두 사실혼 관계였다가 현재 이혼한 상태이다. 사례 18은 동거기간이 6개월이 채 안되었다.

솔직히 중국에서 살던 남편 데리고 와서 잘 사는 사람 몇 명이 안 되더라구요. 왜냐하면 여기 남한 남자들은 연애할 때 잘 해 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잘 속아요. 그런데 남한 남자들도 형편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거의 하나도 없이 돈도 없고 해서 우리 같은 집에 얹혀살아야 하고, 나가라고 하면 안나가고 그런 사람들이……(사례 11).

남편을(남한출신) 처음 만날 때에는 가정적이고 착하고 그랬는데,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월급도 적고, 회사도 부도나고, 밖으로만 다니고, 술을 좋아하니까 아이들한테는 신경도 안쓰고……(사례 15).

남편(남한출신)은 (북한에서) 같이 온 언니 소개로 만났어요. 순간에 들통 날 거짓말을 잘 하더라구요. 모아 돈 돈도 없고, 잘 벌어오지도 않고, 그리고 도박을 그렇게 해요. 도저히 못 살 게서 쫓아냈어요(사례 17).

아는 분 소개로 만나게 되었어요. 4~5개월 같이 동거하다가 성격이 안 맞아서 남자친구가 (집을) 나갔어요. 시부모님이 제가 북한에서 왔다고 별로 안 좋아하는 눈치였어요. 제가 시댁에서 저를 반대하는 것이 싫었어요. 아빠가 없는 게 마음에 걸리지만 저는 아이만 키우면서 혼자 살고 싶어요(사례 18).

부부관계가 원만한 가정들은 대개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가정들이다(사례 5, 사례 10, 사례 29). 남한남자와 결혼을 한 사례 29는 배우자가 가정적이고 직업도 안정적이라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저희 남편 최고예요. 모든 면에서요. 건설회사를 다니는데 정규직이고 성격도 너무 착해요. 제 말을 잘 들어줘요. 그리고 얘기를 많이 해요. 저희는 항상 밥 먹

고, 한 1시간 넘게 밥을 먹어요. 다 대화를 충분히 하고, 예전에는 대화를 안 하다 보니까 계속 싸웠어요. 근데 이젠 싸울 일이 없어요. 말을 계속 하다 보니까 (사례 29).

그러나 법률혼과 결혼만족도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았다. 사실혼 상태에서도 배우자와 잘 사는 사례도 적지 않다. 자상하고 가정적인 조선족 남자와 살고 있는 사례 6도 사실혼 상태이지만 배우자와 결혼생활에 매우 만족하고 있었다.

남편이 잘해주고 애한테 너무 잘해요.……어제 잠을 좀 자려고 하니깐, 정작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누워있는데, 시험공부(사회복지사 공부 중) 한다고 청소를 안해서 베란다가 정말 엉망이에요. 어제 신랑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뭐냐고 해서 지금 베란다 청소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하지말라고, 아프지만 말라고, 토요일에 오면서 세탁기 돌리고, 일요일엔 빨래하고, 설거지 하고 가요. 중국 사람들은(조선족) 요리를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 부러워하죠(사례 6).

## 6. 남한생활의 만족도

많은 탈북여성들이 남한에서도 경제적 곤궁을 겪고 있지만, 북한에서 가난과 감시와 억압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남한의 생활에 만족하는 경우가 많았다.

내가 대한민국을 왜 좋아하냐면. 내가 하고픈 말을 하고 살아서 좋아요. 속에 품고 있으면 그게 다 병이 되는거예요. 작년에 우리 엄마가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대 우리 엄마는 그게 다 화병이 된 거예요. 북한에서는 말을 맘대로 못하잖아요. 속에 쌓아두고 쌓아두고 그게 결국은 병이되어서.....얼마나 살기 좋아요. 내가 우리 남편이 장애인이고 내가 아파 이래도 내가 부지런하면 돈을 벌 수 있잖아요. 이 나라 땅은.....내가 하고픈말 맘대로 하고.....여기가 너무 좋은거예요.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우리 북한은 안그래요. 말한마디.....정말 조심하고 주의해야해요. 진짜 같이 말해놓고도 가서 이렇게 고발하면은 우리는 감옥에 가고 못나가고 그래요. 근대 말도 마음대로 하고 이러니깐 그게 너무 좋은거예요. 아무리 스트레스 받는다 해도 북한만큼은 안받아요. 북한은 자고 일어나면 생활, 총학, 강연회, 학습 내가 뭘 못했나...사람 얼마나 피곤하게 만드는지 몰라요...(사례 3).

2011년 북한이탈주민 대상 조사에서도 남한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문항에서 응답자(7,560명)의 69.3%가 만족한다고 나타났다. 보통이다가 25.7%이며 불만족은 4.8%에 그쳤다. 대부분의 탈북민은 남한 생활에 만족하다고 볼 수 있는데 만족하는 이유로는 '내가 일한 만큼의 소득을 얻을 수 있어서'가 48.0%, '북

한생활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47.2%,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서' 40.4%(이상 복수응답 결과) 순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에서도 경제적 어려움이나 배우자와의 이혼, 별거 등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남한에서의 생활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었다. 특히, 남편과의 관계가 좋은 가정의 경우가 만족도가 높았다(사례 29).

북에서 탈북 한 것은 후회 안해요. 그런데 중국에서 여기(남한) 온 것은 어떨 때 보면은 뭐라고 할까, 사람들 시선. 특히 모르겠어요. 이북에서 직접 온 사람들은 자신감이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에서 숨어 살다가 여기 오면 이제, 일할 때 자신감이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북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처음에는 북한사람이란 말이 부담이 많이 되서 내가 중국에서 사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그 사람들은 나 북한사람인줄 모르고 조선족인줄 알 텐데, 그 때가 좀 나을 텐데 이런 생각도 많이 들죠(사례 10).

(폭력적인 남편으로 가정생활은 행복하지 않지만) 남한의 자유가 좋아요. 처음에 와서는 생활총화라는 게 없어서 좋다구 그랬어요. 처음에는 정말 그런 게 없으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북한에서 살라면 못 살 것 같다고 그래요(사례 11).

저는 본인만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 것 같아요. 저는 만족해요(사례 18).

저는 만족해요. 여기서 불만족하다 그러면,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많은데, 요즘은 막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이혼하고, 특히 북한에서 사는 사람들 생각하면 저는 너무 행복한 거죠. 정말 행복한 거죠(사례 29).

## IV.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양육환경과 양육실태

본 장에서는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양육 환경을 물리적 환경과 정서적 환경으로 나눠서 고찰하여, 두 환경 모두 자녀양육의 환경으로서 열악하고 적절치 못한 것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기 시작한 시기, 이용시간, 기관선택 방법 등을 알아보며, 임신과 출산, 사교육 등 기타 육아지원서비스의 수혜 실태를 살펴보았다.

### 1. 양육환경

#### 가. 물리적 환경

##### 1) 특정 지역에 밀집 거주: 남한사람들과의 교류 제약

북한이탈주민의 일반 특성에서 언급했듯이, 이들은 수도권 지역에만 62.4%가 밀집해서 거주하고 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남한 사람이 49.2%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이탈주민의 밀집도는 상당히 높다고 하겠다. 새로운 환경에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경우 대부분 집성촌 형태가 나타나기 마련이다. 안산시, 구로구 등지에 외국인노동자나 중국 조선족들의 거주지가 형성되는 게 그 예이다. 그러나 이방인의 밀집 거주는 정책적으로 의도되기 보다는 대개 자연스럽게 형성된다는 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거주 형태와 차이가 있다. 물론 북한이탈주민의 밀집 거주 형태는 장·단점이 있다. 같은 이주민이라 하더라도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이주민과는 달리, 탈북민은 남한을 적대시 하는 교육을 받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외국인 이주민을 바라보는 시선과는 분명히 다른, 사회적 시선—예를 들어 간첩으로 오인할 수 있는—이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한 북한이탈주민의 신분보호는 필요하다. 특히, 초기 정착적응기에는 탈북민끼리 밀집해서 사는 데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이와는 반대로 북한이탈주민의 밀집 거주는 남한사회로의 동화를 지연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질)남한 엄마들하고는 교류가 있으세요? (답) 그건 전혀 없어요(사례 1).

애들과는 달리 남한엄마들은 (친해지기가) 조금 힘들죠. 우리집도 모이면 다 북한사람들만 모여요(사례 3).

주로 만나거나 전화하는 사람은 다 북한 사람들이예요. 남한 분들하고 친하게 되는 거는 쉽지 않아요.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모임 나가도 다 북한 사람들이고……(사례 10)

아이 키우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이 장난감이나 학원 정보 같은 것은 가끔씩 북한 엄마들 만나서 정보를 얻어요. 남한 엄마들하고는 안 만나요(사례 12).

한편, 북한사람들하고의 교류를 썩 내키지 않는 사례들도 있었다. 북한사람들 모임에서는 남한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한다.

저는 남한 어머니들하고 교류를 많이 해요. 북한 사람들하고는 대화를 잘 안해요. 교육정보나 그런 것은 남한 엄마들이 더 잘 알잖아요. 북한 친구가 2명이라면 남한 친구는 8명이에요. 그리고 북한에서 왔다고 안하고 강원도에서 왔다고 해요(사례 17).

북한사람들끼리 만나면 별로 정보가 없어요. 북한에 대한 그런 것이 나오다 보니까 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그게 대화가 안되는 거예요(사례 23).

또 북한사람들끼리 있다보면 북한 말씨를 계속 쓰게 되는데 부모가 북한출신이란 사실을 남한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알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북한사람들과의 만남을 가급적 하지 않으려는 사례도 있었다.

북한사람들이 00단지에 모여 사니까 북한 말만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하잖아요. 만약 아이가 친구를 데리고 왔을 때, 너네 엄마 이상하다고 하면 어떻게 할지, 그래서 큰 아이가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억양을 여기 말투로 고치고 싶어요(사례 16).

북한이탈주민의 이러한 욕구를 반영하고 남한 사회의 빠른 적응정착을 위해 하나센터에서는 남한사람들과 북한사람들을 일대일 멘토 멘티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는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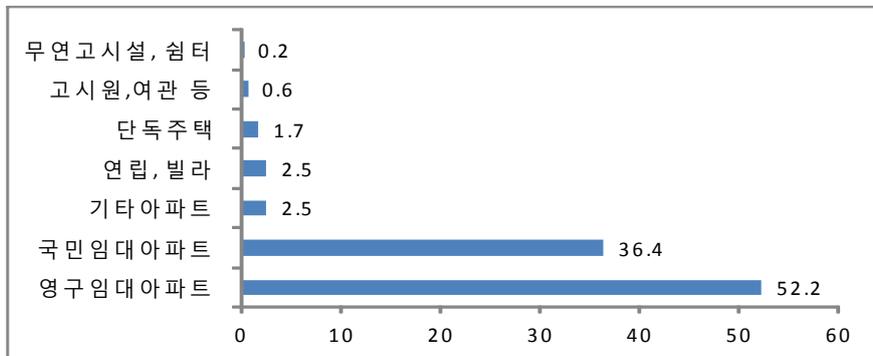
하나센터라는 곳에서 남한 사람 한사람과 새터민 한사람씩 일대일 붙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서로 친분도 갖고 그렇게 하라고 했는

데, 그분들도 바쁘니까 전화 한번씩 오는 정도고 집을 찾아오는 분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 흐지부지 해 지고, 실제 프로그램은 있지만 제대로 실행이 안되고 있어요(사례 23).

입국 후, 한 곳에만 거주하지 않고 여러 도시를 옮긴 경우—예를 들어 대구에 살다가 인천으로 이사한 사례 16이나 화성에서 살다가 인천으로 옮긴 사례 17, 부산에서 살다가 인천으로 옮긴 사례 18, 대전에서 살다가 인천으로 옮긴 사례 29), 북한이탈주민이 밀집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사례 19 빌라 거주—, 남한사람들과의 교류가 많은 피면담자들—사례 15, 사례 17, 사례 23—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북한 말씨나 억양이 거의 사라졌다는 점이다. 즉, 억양이나 말씨로 ‘북한 사람’으로 구별할 수 있는 요소가 없어졌는데 이는 남한 사회에 좀 더 빠르게 동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제라 할 수 있겠다.

## 2) 임대주택에 집중 거주

북한이탈주민 가정은 하나원 퇴소 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법 제20조에 근거하여 주거를 지원받는다(통일부, 2012: 21). 이 때 대부분 영구임대 또는 국민임대아파트를 배정받는다. 2011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에서도 영구임대아파트와 국민임대아파트의 거주자가 88.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2011 북한이탈주민 생활실태조사 기초분석 보고서

[그림 IV-1-1] 북한이탈주민 거주주택 형태(%)

일반국민도 아파트에 거주하지 못하는 가정이 많은 데 북한이탈주민에게 아파트를 거주 주택으로 배정하는 정책은 상당히 혜택이 크다고 하겠다. 대부분

북한이나 중국에서 생활한 주택에 비해, 한국정부가 북한이탈주민에게 제공한 아파트는 이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규모와 공간이다. 성년이 된 조카까지 같이 생활하는 사례 1은 생활하기에 전혀 불편하지 않다고 했다.

북한에서는 산다하는 집이 부엌 하나 방 두 개 그걸지 않으면 부엌에 방 딸린 방 하나……그렇게 살아와서 그런지 나는 지금 불편하다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사례 1).

그러나 처음에는 아파트라 생활하기도 편하고 만족했지만 임대아파트 특성상, 장애인이나 독거노인들이 주로 거주를 해서 자녀를 키우는 데 주변 환경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sup>9)</sup>

(아파트) 정문 나갈 때는 창피할 정도예요 노인들이 앉아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항상 앉아 있어요 근데 길가에 나가면 맨 그런 사람들이어서 맨 처음엔 이런 아파트, 엘리베이터 처음 보잖아요 그래서 되게 좋다 했어요. 그리고 싱크대 이런 건 낫설잖아요 우리 부엌이었어요 거기선 나무에 석탄을 올리고 검은 가마 솔에다 밥을 해요 처음엔 되게 익숙되지 않더라고요 지금은 익숙해졌어요. 제가 와서 있던 사람들이 다 (다른 지역으로) 나갔어요. 제가 마트에 갔는데 마트에 아저씨가 여기서 살면 애들을 교육이 안된다고 돈 벌어서 다른 데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 있는 집들은 진짜 다 나갔어요. 살면서 보니까 막 이상한 사람들만 사는 것 같은 거예요. 밤에도 소리 지르고 침을 뱉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장애인들이니까……(사례 11).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는 임대아파트 0단지는 장애인이 함께 거주하는 단지라 한다. 같은 임대아파트라 하더라도 0단지는 장애인 아파트, 0단지는 전세 반임대반 0단지는 전세아파트로 구분된다고 한다. 즉, 몇 단지에 사느냐에 따라 주거형태를 알 수 있는데 이를 안 친구 엄마가 장애인 임대아파트 아이하고는 놀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단지에 배정받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친구와 그의 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된다.

우리 0단지에 영구 임대가 있는데 장애인들이 몇 명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딸이 다른 단지에 사는 아이들과 몇 번 놀았는데 아이들이 민지랑 안 노는 거예요. 민지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단지 전세 아파트에서 사는 엄마가 놀지 말라고 했대요. 그 아이집에 한 번 놀러 갔는데, 물어봤나봐요. 몇 단지에 사냐고. 0단지라고 하면 장애인 아파트예요. 그런데 애네 아버지가 장애인이라고 하니까 몇 번 놀다가 엄마가 개네 량은 놀지 말라고 하더라요. 왜 하니까 우리 엄마가 놀지 말라고 했대요. 못 한다고……(사례 5).

9) 그러나 연구진이 방문한 국민임대아파트의 주거 환경이 쾌적한 곳도 많았다.

임대주택의 또 다른 문제는 협소함이다. 북한이탈주민이 배정받은 국민임대 아파트는 25.7평 이하(85제곱미터)인데, 가족수에 따라 배정받는 평수가 달라진다고 한다. 가장 큰 평수의 구조는 큰방 1개, 작은방 1개, 거실 겸 부엌, 화장실 1개로 구성되어 있다. 사례 3과 사례 12처럼 확대가족이거나 자녀가 성장하면서 활동성이 많아지면 이 정도의 공간은 협소할 수 있다. 그러나 피면담자들에게 협소한 공간으로 인한 불편함을 직접적으로 듣지는 못했다(직접적으로 질문하지 않았음).

거주 공간의 협소함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사례 3과 사례 29처럼 부부관계가 좋은 화목한 가정이거나 부모와 자녀 관계가 좋은 가정에서는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공간이 협소하다 보면, 부부싸움 등 가정폭력이 자녀에게 고스란히 노출된다는 점이다.

솔직히 말해 17평이라는 게 아이들 노는 데는 진짜 많이 비좁잖아요. 전기 이런 거 다 작은 방으로 피신 시켜놓고 하니까 TV 하나만 마루에 있는 거죠. 그래도 tv가 자리를 차지하잖아요. 근데 밥상까지 있으니까 애가 뛰어 놀자니 어디서 뛰어놀아, 그러다 아빠 밥 먹는 데로 가다가 흥어팩을 발로 밟았던 말이에요…… 근데 대번에 애를 콧 밀어놔 버리는거예요. TV 옆에 화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부딪쳐서 다치면 어떻게 되요, 모서리가 있는데, 심장이 덜컹 하는 거예요. 순간 너무 화가 나니까 아빠를 때려 버렸어요(사례 9).

남편이 술만 마시면 애하고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손찌검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때리는 게 10%라면 물건을 던지고 때려 부셔요. 그래가지구 계속 새 것을 사는 거예요. 빛을 지면서요(사례 11).

애들 앞에서든 나한테 막 00뿌리고 손찌검하고 하니까. 그것도 일 년에 한 번 정도면 모를까……(사례 3).

협소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부부싸움과 가정폭력은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밖에 없으며 흥분한 상태에서 가까이 있는 자녀에게 쉽게 폭력을 가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일상적으로 자주 일어난다면 자녀 성장·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 나. 정서적 환경

모든 북한부모들이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양육태도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본인이 북한에서 그러한 양육환경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러한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경향이 있다.

북한의 부모님들은 유아의 특성을 이해하기 보다는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를 고수하는 편입니다(원장 면담 사례 2).

가부장적인 부모뿐 아니라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이혼이나 빗독촉으로 시달리고 있는 일부 부모들도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었다.

우울증에 시달릴 때는 조폭이다 싶을 정도로 많이 때렸어요. 그때는 제 자신이 컨트롤이 안됐어요(사례 13).

부모의 불안한 정서와 현실 속에서 성장하는 자녀들에게서 정서불안이나 문제행동이 나타났다. 사례 13의 경우 부모의 폭력에 노출되었던 첫째 자녀는 지금도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었다.

큰 아이는 지금도(2006년생이므로 만 5세임) 징징거려요. 작은 아이는 불만이 있으면 말로 토로하는 데, 큰 아이는 징징거리면서 그래요. 제가 울지 말고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을 하라고 해요. 저도 징징거리는 모습을 보면 화가 나요. 모든 지 투정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큰 아이랑 마찰이 심해요(사례 16).

이혼과 빗 독촉, 무엇보다 어렸을 때부터 대리양육자와 어린이집의 잦은 변경<sup>10)</sup>으로 인해 부모와의 애착형성이 제대로 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 7의 자녀이 표출하는 문제행동이다.

애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짜증이 많아요, 애기 때부터 저녁에 찾아오면 애가 자지 않고 그렇게 어린 아이인데도 손톱으로 내 얼굴을 쥐어뜯고 그래요. 엄마 얼굴을. 나도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짜증내서 짜증을 막 부리다가도 그제 남에 손에 가 있는 게 안쓰러워서……짜증나니까 스트레스를 엄마한테 밖에 풀 수 있어요? 조금만 짜증나도 얼굴 쥐어뜯고, 쥐어뜯고, 얼굴 쥐어뜯어 놓고. 하, 지금도 애가 신경질, 짜증이 많아요(사례 7).

사례 19의 자녀도 부모와의 애착형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생후 6개월부터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고, 게다가 아버지하고 대화나 감정적 교류가 거의 없어서 문제행동이 나타나는 사례이다.

부모한테 너무나 일찍 떨어지니까 모성애가 많이 적어지고 집에 와서는 엄마한테 막 폭행하려고 하고…… 아빠 말을 근본 안들어요. 아빠는 완전 무시해버려

10) 관련된 면담내용을 보면 “내가 강서구에 있을 때도 동생이 봐주겠다며 노원구로 데리고 가서 낮에는 동생도 자기 일을 봐야 하니까 노원구 어린이집의 두 군데를 계속 엮바꿔가며 맡겼다가 또 애를 데려다가 강서에 넣었다가 가양동에 와서 또 붙였다가(다른 기관으로 옮겨다가) 하, 엄청 돌아다녔어. 지금 다시 노원구의 00유치원에 갔잖아요”(사례 7)

요. 아빠는 눈 뜨면 없고, 저녁에 눈 감을 시간이 되어 들어오고 하니까, 그리고 집에 있는 날도 애한테 이렇게 잘 안 놀아 줘요.……그러니까 애가 아빠를 안 따라요. 지금 제가 쯤 걱정이 그거예요. 아빠가 이렇게 앉아 밥먹어. 이러면 언성이 조금만 높아져도 애가 예잇, 이려고 저쪽에 가요. 그리고 아예 물어버리고, 땡깡부리고……(사례 9).

본 조사의 유일한 아버지인 사례 14는 부인이 한쪽이라 본인이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자신은 딸아이한테 웃지 않는다”고 말해 가부장적인 양육태도로 자녀를 키우는 것으로 짐작된다. 이 자녀도 문제행동을 보이는 데 아버지와의 애착형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이가 고집이 있어요. 밥을 다 얹어두고 해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난리나요. 버르장머리가 없을 때는 화가 나서 때리기도 해요(사례 14).

그러나 아버지는 자신의 양육태도나 방식에는 없는 지 반성하기 보다는 자녀의 문제행동 탓을 외부(어린이집 교사)로 돌리면서 어린이집을 3번이나 옮겼다.

아이가 음식을 얹거나 우유를 내 던지는 행동을 해요. 어린이집에서도 친구와 싸우는 일이 종종 있는데, 제가 추측컨대 교사가 (우리아이를) 때린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데로 기관을 옮겼어요(어린이집을 3번 변경함, 사례 14)

가정폭력에 많이 노출된 아동일수록 폭력성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폭력의 악순환을 이들 가정 대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반면, 화목한 가정의 탈북 자녀들은 건강하고 씩씩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녀의 건강한 성장 발달의 원천은 가정에 있으며 그 원동력은 원만한 부부관계(사례 3, 사례 5, 사례 29) 또는 한부모 가정이라도 주양육자의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성격(사례 30)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빠를 닮아 애가 그렇게 성격이 좋아요. 우울할 때가 없어요. 언제가 밝아요. 학교가서도 상장도 많이 탔어요. 한 학기에 상을 5개씩 우수상, 최우수상……(사례 3).

아이들은 여기에서 자랐기 때문에 잘 적응하고 있어요. 언어도 그렇고 친구들도 많더라구요(사례 5).

엄마 아빠가 안 싸우니까 애기도 너무 쾌활하고 다른 애들처럼 뭐 사달라 뭐 사달라 하지 안해요…착하고 인사성도 밝고 참 요대로만 커졌으면 좋겠어요(사례 29).

큰 아이는 여자애가 그런 지 착해요. 학교에서 친구들과도 잘 지내구요. 우리 아들은 착한데 아직까지 공부는 하려고 안하더라구요(사례 30).

## 다. 부모와 자녀와의 놀이문화 부재

어린이집 원장과의 면담에서 탈북가정 자녀들은 가족하고의 문화적 경험이 적은데 이러한 문화적 경험의 부재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또래 친구들과의 대화를 하지 못함으로써 소외되거나 왕따를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만화영화나 놀이공원등의 이야기를 친구들과 나누지 못해서 친구들과 대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원장 면담사례 2)

본 면담조사에서도 자녀와 주말에 집 근처 공원이나 놀이동산을 가는 사례는 찾기 쉽지 않았다.

어떨 때 보면 아이들을 데리고 휴식이면 가족들이랑 같이 놀라갔으면 좋겠는데……어떨 때 보면 아빠들 하구 노는 아이들보면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사례 13)

애들 아빠가 저대로 된 직장이 없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스트레스가 있다보니까 애들하고 잘 놀지 않아요. 애들은 좀 많이 같이 놀아주고, 그런 거 많이 바라잡아요. 그런 부분에서 많이 부족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엄마한테 많이 매달리고 저도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데 애들 아빠가 해주면 좋겠어요(사례 23).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실이 자녀와 놀이문화를 공유하지 못하는 주요 이유겠지만, 꼭 경제적 이유만은 아니다. 사례 9의 남편처럼 어렸을 때 부모와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고 성장해서 자녀와 놀이문화를 자연스럽게 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애 아빠가 아이와 같이 좀 놀아 주는 게 소원이예요. 남들처럼 휴식할 때 놀이터에 나가서 잠시라도. 어떨 때는 어린이 공원 가자하면 거기가 뭐하나 이래요. 그리고 어린이 공원에 좀 데리고 들어가라 하면, 막 짜증나서, 저는 또 남편이 짜증나 하는 걸 보면 아주 진질이 나서, 아예 내가 해버리면 해버리지, 그 사람을 그거까지 못 시키겠거든요(사례 9).

부인과 자녀와 관계가 좋은 사례 3의 남편은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이지만 주말이면 자주 한강이나 공원으로 가족이 다 데리고 나간다고 한다.

토요일이면 한강도 나가고 선유도 공원도 나가고 오이도 바다 구경도 가고 그래요. 바다가자면 하면 시아버지가 나보다 더 좋아해요. 먼저 나가 차에 들어가 앉아 있어요. 김밥 도시락 싸 가지고 거기 앉아서 먹으면 집에서 먹는 것보다 더 맛있어요(사례 3).

## 2. 육아지원기관 이용 실태 및 특성

### 가. 기관 이용 실태

본 연구에서 면담조사를 실시한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 대부분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었다. 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사례는 이제 갓 태어난 영아(사례 10, 사례12, 사례 18)인 경우가 많았다.

본 설문조사의 대상자 100명의 자녀 152명 중에서 영유아 자녀는 87명으로 집계되었다(표 I-3-7 참조). 87명의 육아지원기관을 살펴보면, 영아는 미이용이 62.5%로 가장 많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민간어린이집 이용이 국공립 어린이집보다 더 많았다. 유아는 90.1%가 기관에 다니고 있었는데 영아때와는 달리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이 43.6%, 민간어린이집 32.7%로 어린이집 이용이 76.3%를 차지했다. 일반적으로 유아기에는 어린이집보다 유치원을 다니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과 다른 현상이다.

〈표 IV-2-1〉 육아지원기관 이용 현황(2012년)

연령별	이용					미이용	계(명)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공립병설유치원	사립유치원	기타		
영아	6.2	25.0	0.0	0.0	6.2	62.5	100.0(32)
유아	43.6	32.7	3.6	5.5	3.6	10.9	100.0(55)

$\chi^2(df) = 115.012(16)^{***}$

\*\*\*  $p < .001$ .

〈표 IV-2-2〉 육아지원기관 이용여부(2009년)

연령별	이용		미이용	계(명)
	이용	미이용		
전체	68.5(122)	31.5(56)		100.0(178)
영아	49.1(52)	50.0(54)		100.0(106)
유아	96.7(58)	3.3( 2)		100.0( 60)
미취학아동	100.0(12)	-		100.0( 12)

$\chi^2(df) = 46.18(2)^{***}$

자료: 장명립 외(2009).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모형 개발 및 시범적용. p.207.

2009년도 장명립 외 연구에서나 2011년 북한이탈주민 생활실태조사(그림 III-1-3 참조)에서도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공통된 결과였다. 그러나 연령별로 기관 이용의 차이를 보인 것도 본 연구소에서 실시한 2009년과 2011년 조사의 공통된 결과이다(표 IV-2-2 참조).

기관 이용을 유형별로 보면, 유치원보다 어린이집 이용이 훨씬 많음을 알 수 있다. 본 면담조사에서도 대부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북한이탈주민의 가정은 기본 보육료가 면제되는 가구소득이므로 국공립과 민간에 상관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기본 보육료는 전액 지원을 받고 있었다. 특별활동비와 현장학습비는 지불하고 있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는 특별활동비와 현장학습비도 지원받고 있었다.

처음 입학비 5만원 내고 (보육료는)정부에서 지원받고 있어요. 특별활동비로 4만 8천원을 내고 있어요(사례 1).

특별활동비 3만 5천원을 내고 놀이동산(현장체험학습) 간다고 하면 입금해 줘요(사례 3).

어린이집 비용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줘서 낸다는 것은 어린이집에서 배워주는 비용(특별활동비)은 내구 있어요. 전의 어린이집은 한달에 99,000원을 냈었는데 지금 옮긴 어린이집에서는 6만 5천원 내고 있었어요(사례13).

특별히 기관에 내는 돈은 없고 우유 값만 내고 있었요(사례 23).

어린이집에 돈을 내는 건 하나도 없어요. 00에 살았을 때는 특기적성비나 현장 학습비로 매 월 7만원씩 냈어요. 그런데 여기로 이사와서는 공립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데 하나도 안 내요(사례 17).

어린이집 이용은 무상이예요. 특별활동비도 없어요(사례 16).

그런데 이상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기관마다 지불하는 추가 비용이 조금씩 다르다. 예를 들어 동일한 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지만 어느 유치원은 분기별 10만원을 일단, 지급하면 다시 통장으로 입금해서 결국 무상으로 다니고 있지만, 다른 병설유치원은 급간식비로 분기별 10만원을 내고 있었다.

병설유치원에 내는 비용은 전혀 없어요. 10만원을 제가 유치원에 내면, 그 만큼 다시 들어오고 그러더라고요. 무료인 데 왜 그렇게 해 주느냐고 했더니 학생은 그런 거 없지만, 유치원은 있다고 하더라고요(사례 12).

병설유치원을 보내고 있는 데 급식비를 3개월에 한번 10만원을 내라고 그러더라구요. 제가 알기는 지원 받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니 이걸 왜 내느냐고 물어봤어요. 그쪽에(유치원쪽에). 그러니까 이거는 다 내야 된대요. 수급자 관계없이, 그래서 다 냈죠(사례 30).

지차제의 재정상태나 기관마다 운영의 차이로 인해 비용지원이 다를 수 있지만, 수요자 입장에서는 그 차이를 이해하기를 쉽지 않다. 어린이집마다 비용 차이가 큰 데 보내고 싶은 기관은 비용이 너무 비싸고 못 보내고 중간 정도의 비용이 드는 기관을 선택한 경우(사례 28), 어린이집 이용비용이 다른 기관에 비해 비싸다고 아는 사람이 말해주서 원장에게 말하자, 보육료 일부를 깎아준 에피소드(사례 6)도 있다.

어린이집을 알아보려고 몇 군데 돌아다녔는데 비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었어요. 지금 다니는 데는 한달에 9만 7천원씩 내요. 적지 않은 돈인데 그래도 중간이에요. 가장 저렴한 데는 한달에 5만 6천원, 여기가 세 번째로 9만 7천원 많은 건 아니에요. 많은 데는 한달에 22만원씩 내거든요. 그래서 못 보냈어요. 맘에 드는 데 환경도 맘에 들고 좋았는데 돈이 부담돼서 못 보내고 있어요(사례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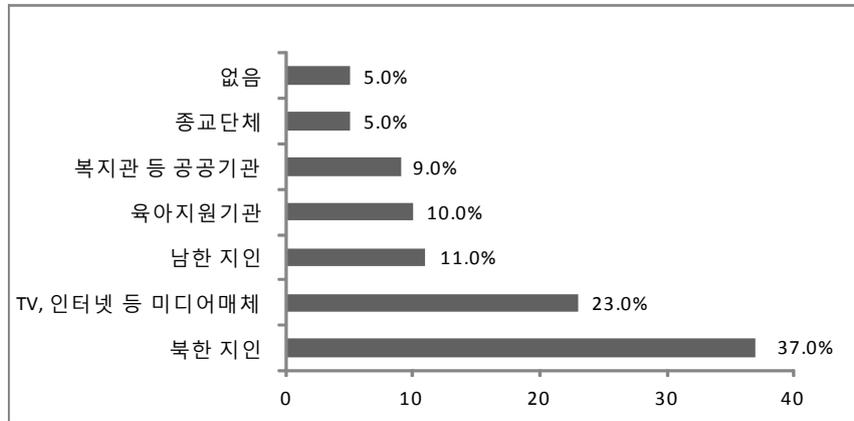
근데 양육이 참 천차만별인데 지금 정부에서 그걸 조금 잘못 한 것 같아요. 수준에 맞게 돈을 내는 건 옳은 것 같아요 저는 전반적으로 다 무료를 원하지 않아요. (보육료가) 다 무료인데 특수교육이라 해 가지고 우리는 10만 7천 냈어요. 차량비로 2만원 내라구 해서 15만 7천인데 어린이마다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우리 동네 애가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말하면 좀 그럴잖아요. 원장 선생님이 눈치를 채시고 2만원 깎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13만 7천원 내구 다녀요(사례 6).

한편, 유치원의 이용이 저조한 주요 이유는 사립유치원은 비싼 교육비와 초·등병설유치원은 입학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내년엔 취학을 해서 몇 달이라도 병설유치원에 보내고 싶었으나 미취업모라 입원 순위에서 밀려 탈락했다고 한다.

병설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려고 했는데 제가 일을 안 하다보니 탈락했어요. 사립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했는데 정부보조금 20만원을 받고 있는데, 40만원을 더 내라고 하니가 둘이(자녀가 2명) 합치면 월 80만원을 더 내야 되거든요.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어요.……(입학 전)한 두달 만이라도 유치원에 보낼까 생각하고 있어요(사례 23).

## 나. 기관 선택 경로 및 선택 기준

본 설문조사에서 육아정보를 주로 얻는 경로로는 알고 지내는 북한주민 37.0%, TV·인터넷 등 미디어 매체 23.0%, 알고 지내는 남한 주민 11.0%, 다니고 있는 육아지원기관 10.0%로 보고되었다. 이는 2009년도 장명림 외(2009) 연구결과와 비슷하다. 2009년 조사에서는 이웃이나 친구에서(38.2%), TV·인터넷 등 미디어 매체(16.3%), 육아지원기관(15.2%) 등에서 주로 습득하고 하였다(장명림 외, 2009: 206: 그림 IV-2-1 참조).



[그림 IV-2-1]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육아정보 습득 방법

40대에 늦둥이 낳은 사례 1은 육아정보를 주변의 친한 북한엄마들로부터 얻는다고 했다. 그러나 본 면담조사에서 육아지원기관의 정보를 탈북 어머니 '스스로' 알아보고, 선택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어린이집이 우리 아파트 옆에 있어요. 누가 거기 가봐라 이게 아니라, 제가 스스로 알아본 거예요(사례 9).

어린이집 선택은 제가 스스로 선택했어요. 직접 어린이집에 가서 건물 구조나 다 보고 선택했어요(사례 16).

지금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단지가 붙여있더라고요.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했더니 상담받으러 오라고 하더라고요(사례 12).

이외에도 하나센터 또는 지인의 추천으로 기관을 선택하기도 했다.

하나센터 선생님이 추천해 준 어린이집을 작년부터 처음 다니기 시작했어요(사례 24).

기관 선택 기준은 비용(사례 23), 재원아수 규모(사례29), 운영시간(사례 13), 시설환경프로그램 등이다.

정부지원을 많이 해 준다고 해서 선택했어요. 복지관 내 어린이집이었어요.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쪽(복지관)에서 많이 지원을 받는다고 하니 까, 우리 애들도 책 같은 거, 재료비 같은 거도 감면해 주고, 다른 데 가면 재료비 많이 받잖아요. 복지관은 정부지원을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사례 23).

예전에 다닌 어린이집은 애들이 한 반에 8명 정도 적은 데를 다녔어요. 근데 학교 가기 전에 많은 친구들이랑 사귀어보라고 일부러 많은 데를 선택했어요(사례 29).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무상이기는 하지만 내가 일하는 데 점심먹고 데려 온다잖아요?(사례 13).

## 다. 기관 이용 특성

### 1) 어린 연령에 이용 시작

설문조사에서는 영아기의 기관 미이용이 더 많게 나왔으나, 면담조사에서는 일찍이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는 사례를 쉽게 접할 수 있었다.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은 고정적인 직업은 없지만 아르바이트 일감이 있거나(사례 9, 사례 11) 직업교육을 받는 경우(사례 13, 사례 17, 사례 28)는 자녀가 어리더라도 어린이집을 보내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애가 2010년 6월에 태어났는데 그 해 12월에 어린이집을 보냈어요(사례 9)

요리학원을 다니게 되면서 00를 낳고 생후 3개월짜리를 놀이방에 맡기고 요리를 6개월 배웠어요(사례 13).

(작은 애가) 돌 지나구 15개월부터 (어린이집을) 다녔어요. 애를 젖 떼고 보냈더니 스트레스 많이 받았나 봐요(사례 11).

생후 4개월부터 3살까지 가정어린이집에 보냈어요(사례 17).

생후 10개월부터 어린이집을 보냈어요. 저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잖아요.……여기서 별자니까 여기 맞춰서 적응할 게 없잖아요. 훈련이

라도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애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저는 직업훈련을 갔어요(사례 28).

다음의 사례 16과 23은 추가 출산으로 큰 아이를 기관에 보낸 경우이다. 사례 23은 기관 미이용 시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세 자녀를 출산하면서 빈혈이 심해 기관을 보낸다고 한다.

18개월부터 보냈어요. 큰 아이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어린이집 보내기 전엔 또래 아이들만큼의 몸무게가 나갔었는데, 어린이집에 보내기 시작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키, 몸무게가 또래 아이들보다 작아요. 큰 아이가 지금도 그래요. 엄마, 나 애기 때 혼자 밥 먹고 그랬지요? 불쌍했지요? 그러다구요. 상처로 남았구나 하는 마음이 많이 들어요. 어린이집에 일찍 보내는 게 안 좋은 것 같아요(사례 16).

어린이집을 안 보내면 양육수당을 받는 거는 알고 있었고 받을까도 생각했었는데 빈혈이 많아서……늦둥이 셋째를 작년에 낳았거든요(사례 23).

## 2) 종일제 이용

〈표 IV-2-3〉 육아지원기관 하루 이용시간(2009년)

단위: %(명)

	5시간 미만	5시간~8시간 미만	8시간~10시간 미만	10시간 이상	일정치 없음	계(명)
전체	0.6	33.6	57.4	7.4	0.8	100.0(178)
연령별						
영아	1.9	28.8	57.4	7.7	1.9	100.0(106)
유아	-	36.2	59.6	6.9	-	100.0( 60)
미취학아동	-	41.7	50.5	8.3	-	100.0( 12)
모직업 여부						
있음	-	41.7	33.3	25.0	-	100.0( 12)
없음	0.9	23.7	60.0	5.5	0.9	100.0(166)

자료: 장명림 외(2009).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모형 개발 및 시범적용. p.208.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은 취업에 상관없이 대개 종일제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었다. 2009년 장명림 외 연구에서도 육아지원기관의 하루이용시간이 8시간~10시간 미만이 57.4%로 가장 많았다. 10시간 이상도 7.4%가 응답했는데 5시간 미만은 0.6%에 불과했다.

본 면담조사에서도 대부분의 경우, 아침 8~9시에 등원해서 오후 5~6에 하원을 하는 종일제를 이용하고 있었다. 이 보다 이용시간이 더 긴 경우도 있었다. 앞서 인용한 사례 11의 작은 애는 생후 15개월부터 어린이집을 보내면서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맡겼다고 했다. 돈을 벌어서 경제적 자립을 하면 폭력 남편과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사례 11은 어린 자녀를 두고도 식당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사례 9와 같이 어머니가 학교를 다니는 경우에도 하루 12시간 정도는 어린이집에 맡기고 있었다.

식당일을 하면서 늦게까지 맡기에 되었어요.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사례 11)

지금 학교를 다니면서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에서 8시까지 맡겨요(사례 9).

## 라. 기관 이용 만족도 및 불만족 사례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탈북모들은 기관이용에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표는 2009년도 설문조사 결과인데, 약 64%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본 면접조사에서도 대체로 기관 이용에 만족하고 있었다.

〈표 IV-2-4〉 이용하고 있는 육아지원기관 만족도(2009년)

단위: %(명)

	별로만족하지 않음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계(명)
전체	6.6	29.5	52.5	11.5	100.0(122)
연령별					
영아	1.9	36.5	48.1	13.5	100.0( 52)
유아	10.3	22.4	58.6	8.6	100.0( 58)
미취학아동	8.3	33.3	41.7	16.7	100.0( 12)
국적별					
남한	4.4	33.0	49.5	13.2	100.0( 91)
북한	12.5	12.5	68.8	6.3	100.0( 16)
중국	15.4	30.8	46.2	7.7	100.0( 13)
기타	-	-	100.0	-	100.0( 2)

자료: 장명립 외(2009).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개발 및 시범적용」. p.211.

원장님이 정말 잘 돌봐줬어요. 혹시 우리 아이를 때리지 않는 지, 창문에서 가만히 들어봐도, 큰소리 한번 내지 않아요. 원장님이 생후 4개월부터 다 길러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이번에 옮긴 어린이집도 좋아요(사례 17).

그러나 몇몇 사례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교사(원장)와 부모 간의 갈등이 있었다.

저는 처음에는 안 믿었는데, 계속해서 물어봤어요. 아이들은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선생님이) 계속 때렸대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같이 다니는 아이한테 물어봤더니 선생님이 아이를 때려서 복도에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린이집에 선생님 되러 갔어요. 20개월짜리 아이가 알긴 뭘 아냐고 했더니, 잠깐 내놓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층에서 구르기라도 하면 어쩔거냐고, 선생님이 책임지실거냐고 막 그랬더니 다음부터는 차량 이동할 때도 안고 다니더라고요(사례 13).

우리 아이가 친구랑 놀다가 장난감을 던져서 그 친구가 조금 다쳤나봐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해줘야 되는데, 저는 몰랐어요. 어느 날 우리 딸이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고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지 해서 담임선생님한테 전화했더니, 그 제서야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 딸이 원장 선생님한테 혼났대요. **원장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제 딸이 던진 장난감에 맞은 남자아이의 집안에서 그 아이를 그렇게 예뻐하고 귀하고, 오냐오냐한대요. 그런데 그런 집안의 아이를 건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잘 생기고, 엄마 아빠도 잘 나가는 아이를 건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이 있었으면 저한테 얘기 해주셨어야죠 그랬어요. 또 제가 미리 알았다라면 그 아이 부모님한테 죄송하다고 사과도 하고, 많이 다쳤으면 치료비도 드렸으면 하는 마음을 이야기 했더니 그럴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저를 알잡아 본 것 같아요. 그 집은 엄마 아빠 스펙이 화려한데, 저의 집의 아이는 별나지 않은 아이라고 보는 게 너무 황당하더라고요(사례 15).**

사례 12는 초등학교 교사하고 갈등이 있었던 사례이다. 북한출신이란 선입견 때문에 교사가 자신의 자녀를 부당하게 대했다고 보고 있었다.

**선생님들이 북한 애라고 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선생님이 아니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기분 나쁜걸 있지만, 표현을 안하죠. 초등학교 선생님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안 좋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 그 순간 00이가 북한 아이라서 차별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00이의 이야기를 들어봤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00가 잘못했대요. 그러더니 전화를 딱 끊더라고요. 전화를 끊으니 기분이 너무 나쁘고 섭섭하더라고요. **이 선생님이 북한 사람이라고 날 어리숙하게 보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친구가 자기를 먼저 자기를 기분 나쁘게 해서 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편견을 가지는 것 그 자체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말을 한 건데, 3학년 때에는 담임선생님한테 북한에서 왔다는 말을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 드렸어요(사례 12).

다음의 사례는 어린이집에서 땀에 적은 옷이나 음식 쓰레기가 묻은 옷을 갈아입히지 않아서 불만족스러웠고 자신이 북한에서 왔다고 밝히면서 자녀를 잘 부탁한다고 했지만 교사는 신경을 써 주지 않았다는 섭섭함을 토로하였다.

어쨌든 구립을 보내고 나서 후회 많이 했어요. 내가 괜히 보냈나……두껍게 입고 간 옷도 그냥 하루 종일 입고 애가 옷을 적시면 그걸 다 벗겨야 되잖아요.……애가 옷이 젖어서 그냥 와요(사례 9).

지저분한 옷 갈아 안입히고 이런 거 보다도, 거기는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선생한테 말은 안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입학할 때 제가 그랬지, 전 북한에서 온 사람이고**, 전 여기 말도 잘 모르고 아이도 나이 들어 낯아서 아이가 연약하다, 그리고 애가 남들보다 손이 많이 가는 아이라고, **이렇게 얘기까지 했는데도 신경을 안 써주더라고요**(사례 9).

### 3. 자녀양육의 어려움

#### 가. 대리양육자 부재

본 설문조사 결과, 자녀국적별 양육의 어려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자녀국적을 불문하고 양육의 가장 어려움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가장 많이 꼽았다(54.6%). 다음과 학습지도의 어려움(14.5%), 북한과 다른 양육 문화(12.5%), 믿고 맡길만한 대리양육자 또는 기관 부재(10.5%) 순이었다.

〈표 IV-3-1〉 자녀국적별 양육의 어려움 정도

단위: 명(%)

구분	남한	중국	북한	전체	$\chi^2(df)$
전체	107(70.4)	26(17.1)	19(12.5)	152(100.0)	
북한과 다른 남한의 양육 문화	12( 6.6)	2( 7.7)	5(26.3)	19( 12.5)	20.23(14)
경제적 어려움	63(34.6)	13(50.0)	7(36.8)	83( 54.6)	
학습지도의 어려움	11( 6.0)	5(19.2)	6(31.6)	22( 14.5)	
순탄치 않은 부부관계	0( 0.0)	0( 0.0)	0( 0.0)	0( 0.0)	
어린이집 또는 학교 부적응	3( 1.6)	1( 3.8)	0( 0.0)	4( 2.6)	
부모와의 대화 단절	1( 0.5)	0( 0.0)	0( 0.0)	1( 0.7)	
믿고 맡길만한 기관·대리양육자 없음	13( 7.1)	3(11.5)	0( 0.0)	16( 10.5)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선입견	0( 0.0)	1( 3.8)	1( 5.3)	2( 1.3)	
기타	1( 0.5)	1( 3.8)	0( 0.0)	2( 1.3)	
무응답	3(42.9)	0( 0.0)	0( 0.0)	3( 2.0)	

이와 같은 결과는 장명림 외(2009) 연구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장명림 외(2009)는 저소득층 가정의 부모를 대상으로 영유아 양육의 어려움에 관해 조사

한 결과, 1순위로 영유아의 교육·보육비 부담을 꼽았고, 2순위로 영유아를 돌봐줄 대리양육자 부재를 꼽았다. 그 다음으로 사교육비를 제외한 양육비 부담, 주거 공간 협소 및 미흡, 영유아 학습지도 방법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에서는 자녀양육의 어려움에 있어서 대리양육자의 부재는 순위가 밀려나왔지만, 북한이탈주민 여성이 취업을 못하는 주요 이유이므로 취업을 위해서는 선결되어야 할 문제다. 친정가족이나 시댁이 함께 입국한 경우도 각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거나 취업, 건강 등의 이유로 자녀를 맡기기는 쉽지 않아 보였다(사례 10, 사례 27).

작은언니가 근처에 살고는 있지만, 시력이 안 좋아서 아이를 맡길 수가 없어요(사례 10).

아이 둘만(2004, 2006년생) 집에 두고 새벽까지 일하는 경우가 많아요(사례 15).

누가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아이를 안고 식당에 가서 일을 할 수도 없고, 참 답답해요. 차라리 돈이라도 많으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을 구하면 그만큼 돈도 없어요. 지금은 어린이집이 무료가 되어서 초비상이 걸린 거예요(사례 27).

사례 20은 남편과 이혼을 하면서 친정어머니랑 동거하고 있지만 대리양육자 역할을 해 주지 않는다고 했다.

친정엄마랑 같이 살고 있지만 엄마들이 자식을 안 봐주어요. 제가 엄마 집에 들어 온 것 자체부터가 눈치고, 그리고 엄마도 자기 삶이 있어야 되잖아요. 엄마도 지금 살기 힘든데, 엄마도 그냥 자기 삶을 살고……(사례 20)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시간에 일을 하거나(사례 13, 사례 19) 기관 이용 후, 대리양육자에게 아이를 맡길 때는 대리양육자에게 지불하는 비용 이상의 수입을 벌어야 하는 데(사례 17) 탈북여성들에게 그런 직업을 구하기란 쉽지 않다.

원래는 쪽 어린이집 교사를 하고 싶었는데, 월급이 박봉이고, 아침부터 밖에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와야 되고, 집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집안일을 해야 되니까요. 아이들한테 신경을 못 쓰더라고요. 그리고 학습지도 못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일은(화장품 영업판매), 아침에만 일 나가니까 제 여유시간이 있어서 좋아요. 어린이집은 너무 바빠서 잠깐 나갔다 올 수도 없어요(사례 13).

일을 하고 싶지만,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올 사람도 없어요. 어린이집에 10시 보내고 4시 반에 데리고 오는 데 그 시간에 맞는 일자리도 없어요. 그리고 식당 일을 해서 돈을 10만원 벌면, 수급비에서 10만원을 제외 하더라고요(사례 19).

다음 사례 17은 저녁에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경우인데, 자녀의 세끼식사를 어린이집에서 해결하고 대리양육자의 집에서 잠만 재우는 데 월 50만원의 비용을 지불한다고 한다. 참고로 이 어머니의 월수입은 300~400만원이다.

어린이집 다녀오고 나서, 제가 일 나가기 전에 1,2시간 정도 얼굴을 봐요. 할머니한테 맡겨요. 할머니집이 옆집이거든요. 어린이집에서 찾아서 할머니가 돌보는 거죠. 매달 50만원을 드려요. 어린이집에서 아침 점심 저녁을 해결 해주고요. 자는 것만 할머니 집에서 자는 거죠(사례 17).

대리양육자의 부재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도 일을 할 수 없는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았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더라도 아이가 하원할 시간에 맞춰서 퇴근을 하고 데리러가는 것도 여의치 않고, 대리양육자를 구하더라도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웬만한 월급으로는 감당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였다. 또한 어머니가 아이를 혼자 양육하는 한부모 가정이 많기 때문에 양육과 경제활동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이 새터민 어머니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문제였다.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고 남한 문화에 적응을 하기 위해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새터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대리양육자가 없는 상황에서 경제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 나. 북한과 다른 남한의 양육문화

남한에서는 아이들을 너무 감싸면서 키워요. 북한은 감쌀 수가 없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남한에서는 유치원이 끝나면 아이를 데려오는 데 북한은 그렇지 않아요. 유치원이 여기서 거리가 걸어서 20분 걸려요. 그 거리를 아이 혼자 다녀와요. 부모는 일해야 하니까. 학교 갔다 와서도 아이 혼자 놀고, 아이들 끼리 놀고 그래요. 북한 엄마들은 아이가 유치원에 처음 갈 때, 학교에 처음 입학할 때만 학교에 가요. 한 번 데려가면 길을 아니까, 저희도 다 그렇게 컸어요(사례 12).

북한에서 유치원은 차량운행이란 게 없기 때문에 20분 이상의 거리도 유아가 혼자서 걸어서 다닌다(이윤진 외, 2011: 108). 북한 부모들도 자신이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자녀에게도 그렇게 하기를 바라거나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원장면담에서 북한 아이가 걸어서 가깝지도 않는 거리를 혼자서 걸어오는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고 했다.

남한에서는 양육을 하는데 있어서 경제적 부담이 크기는 하지만 양육환경이 좋기 때문에 남한에서의 생활을 만족하였다(사례 14, 사례 16).

(북한과 남한이) 어린이집 보내는 것은 같아요. 북한에서 아이 키울 때는 비용이 많이 안 들어요. 70-80년대 까지만 해도 정부에서 배급 다 주고, 아이들을 다 맡아 키워주고 해서 좋았어요. 여기(남한)는 아이들을 맡길 곳은 많은데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죠. 아이를 키우는 데는 한국이 나아요. 남한에서 키우는 거에 대해 만족해요. 힘들어도 감안하고 키워야죠(사례 14).

(아이가)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애 먹여 살리느라고 교육을 못하지 않았을까요. 저희 엄마가 그러셨거든요. 장사하고 그러실 때는 막 며칠씩 집을 나가서 안 들어오시고 하다보니까 많이 엄마가 보고 싶고 좀 그랬어요. 여기서(남한) 주말에 애랑 어디 놀러갈 수도 있고, 뭐 볼 것 많잖아요(사례 29).

(북한은) 큰 동에 자그마한 유치원이 딱 한 개 있으니까 애들이 막 바글바글 하거든요. 여기(남한) 오면, 돈만 있으면 애들 더 훌륭히 키울 수 있는 것 같고. (북한은) 무상으로 배워준다고 열심히 안하거든요. 근데 남한은 애들이 공부를 게을리 안하고 내 자체도 애들 열심히 시키거든요(사례 30).

반면 사례 16과 사례 27의 부모는 남한의 경우 사교육이 심하고 아이들이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다는 점에서 북한에서처럼 자유롭게 양육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컸다. 남한에서는 아이를 자유롭게 양육시켜야지 하는 마음이 들면서도 주위의 부모들이 높은 교육열을 보이면 우리 아이가 뒤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불안감이 들기 때문이다.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한국에 많고요.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곳은 북한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남한은 어린이집부터 공부를 시키는데, 북한은 유치원때 자유롭게 생활하거든요. 북한은 사교육은 없는 것 같아요. 북한과 남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떠나서 북한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어요. 여기는 자유가 없고 공부를 하든 뭐하든 어디에 묶여야 되잖아요. 북에선 공부를 못한다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거든요(사례 16).

북한은 어린이집은 크게 돈이 안 들어요. 근데 선생님한테 아이를 잘 봐달라고 뇌물 좀 들어가요. (남한은)아이들한테 너무 스트레스를 주는 것 같아요(사례 27)

사례 7의 경우도 사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부모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한국 부모들이 애가 머리가 좋든 아니든 공부를 하든지 안하든지 무자비하게 시키잖아요. 그러면 학원비는 학원비대로 들어가고, 부모들은 그 돈 벌기위해서 얼마나 힘들어요(사례 7).

자녀양육 방식에 있어서도 남한과 북한간 차이가 있다고 느끼는 사례도 있었다(사례 19, 사례 20, 사례 28). 대체적으로 북한은 부모-자녀간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권위적인 부모 양상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남한의 양육방식이 더 적절한 것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북한에선 부모와 아이가 대화를 많이 안하죠. 여기(남한)는 아이들의 말을 많이 듣는데 북한은 부모 생각으로 아이를 일방적으로 키우는 것 같아요. 교육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은)무조건 아이들에게 하라는 식으로 하거든요(사례 19).

자식 잘 보달라고 뇌물 주는 거는 (북한이나 남한이나) 똑같은데, 여기(남한) 부모들은 애들한테 조용히 말하거든요. 근데 북한은 안 그래요. 일단 저질렀다 하면 때리기부터 해요. 불쌍하죠. 확실히 이 방식(남한 양육방식)이 애들한테 좋은 거예요(사례 28).

북한 사람들은 자녀교육이 중요하다는 걸 몰라요.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잘 몰라요. (남한은)자녀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사례 20).

북한과 남한의 양육문화를 비교해 본 결과, 대체적으로 남한의 환경이 아이를 양육하기에 더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부모의 양육방식 역시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자녀의 자율성을 존중해준다는 점에서 남한의 방식이 자녀의 발달에 더 좋을 것 같다고 하였다. 하지만 남한의 경우, 지나친 교육열로 인해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고, 부모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에서 북한처럼 아이를 자유로운 환경에서 양육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 다. 발달단계별 어려움

〈표 VI-3-2〉 자녀국적별 걱정되는 발달단계

구분	남한	중국	북한	전체	단위: 명(%)	
					$\chi^2$	(df)
전체	107 (70.4)	26(17.1)	19(12.5)	152 (100.0)	5.39(8)	
신체발달(키, 몸무게 등)	24 (22.4)	6(23.1)	8(42.1)	38 ( 25.0)		
인지발달(두뇌발달)	8 ( 7.5)	1( 3.8)	2(10.5)	11 ( 7.2)		
언어발달(읽기, 말하기, 쓰기 등)	26 (24.3)	6(23.1)	3(15.8)	35 ( 23.0)		
사회성발달(친구사귀기 등)	20 (18.7)	6(23.1)	3(15.8)	29 ( 19.1)		
정서발달(감정표현, 감정조절 등)	19 (17.8)	7(26.9)	2(10.5)	28 ( 18.4)		
무응답	10 ( 9.3)	0( 0.0)	1( 5.3)	11 ( 7.2)		

자녀국적별 가장 걱정되는 발달단계는 신체발달이 25.0%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언어발달, 사회성발달, 정서발달 순으로 집계되었다. 북한태생의 자녀인 경우 신체발달의 우려가 가장 많았고, 남한태생 자녀는 언어발달, 중국태생 자녀는 발달단계마다 비슷한 응답을 보였다.

### 1) 신체 발달의 문제

면담조사에서도 북한에서 태어난 자녀는 무엇보다 건강의 어려움이 컸다. 북한에서 제대로 먹지 못하고, 탈북과정을 겪으면서 건강이 악화되기도 했으나 지금은 잘 먹으면서 많이 회복되었다.

(북한에서 태어난 큰 아이가)북한에서 영양이 부족하구 해서 다리가 앵고였어요. 그리고 걸지두 못해서 제가 업구 중국에서 왔어요 몽골에서 의사가 애가 성장할 아이라구 다리가 제질로 퍼진다구 영양을 보충시켜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불일 때까지 애가 막 오줌을 사구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 가서 사유서를 써서 한 학년 내렸어요. 그래서 어린이집 한 번 더 다녔어요(사례 11)

북한에서 태어난 큰 아이가 허약하죠. 3살에 (남한에) 들어왔는데, 못 먹어서 걸음마를 겨우 땀어요. 중국에 와서도 브로커가 아이가 허약하다고, 그런데 중국에서 잘 먹이니깐 금방 좋아졌어요. 북한에는 그런 아이들이 많아요. 여기서는 쌀밥도 먹기 싫어서 먹지 않잖아요. 북한은 옥수수도 없어서 못 먹어요. 아이들이 밥을 먹기 시작하면 옥시국수 아니면 강냉이 밥을 주거나 죽을 줘요. 그런데 그 죽은 개도 안먹을 정도로 빈약하고 참 안타깝죠(사례 12).

사례16은 어린이집에서 또래관계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신체발달이 늦어지는 것 같다고 하였고, 반대로 사례 4는 또래에 비해 신체발달이 늦고 허약해서 아이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였다. 신체발달의 경우 선천적인 부분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새터민 부모들은 또래관계에서 아이가 받은 스트레스가 아이의 신체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어린이집에) 18개월부터 보냈어요. 어린이집에 보내기 전엔 또래 아이들만큼의 몸무게가 나갔었는데, 어린이집에 보내기 시작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키, 몸무게가 또래 아이들보다 작아요. 키도 작고 왜소하니까 니가 무슨 형이고 오빠냐고 (6세반)아이들이 그런대요. 너무 속상하대요(사례 16).

큰 애(7살)가 약해요. 거기서(어린이집) 좀 크고 썩 애들이 있잖아요. 애들이 키 작으니까 5살이라고 하니까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사례 4).

아버지의 폭력으로 부모와 애착이 형성되기 이전에 부모와 분리를 경험한 자녀가 몸이 약해 걱정이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사례 11). 탈북 가정이 아니더라도 이런 환경에서 양육된 아이들이 겪을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탈북 가정 자녀인 경우 부모이외에 아이들을 지지해 줄 친인척 등이 없다는 점에서 아이들의 발달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애가 분유를 떼자마자 (쉼터에) 가니까 감기 계속 앓고 병원에 계속 가 있는 거예요. 애가 항상 맥이 없고 아파하고 그러는 거예요(사례 11).

부모 스스로 태내기 환경이 적절하지 못해 아이의 신체발달에 문제가 있음을 고백하는 사례도 있었다(사례 7, 사례 9).

OO 임신 때 맥주를 엄청 먹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OO이가 면역이 약해요. 아토피가 있고..지금도 좀 걸어가다가 픽픽 쓰러지고...(사례 7)

태어날 때부터 건강치 못했어요. (임신 시) 제 몸의 영양이 많이 아이한테는 부족한가 봐요. 태어나 가지고 이틀에 한번 씩 병원 갔어요. 천식이 심해가지고 지금 현재도 일단 감기만 왔다하면 천식이 따라와요...어린이집에서도 지 혼자 막 놀고는 열이 팍 나서 넘어가서 또 실려가고...(사례 9)

북한 또는 제 3국에서 출생해서 부모와 함께 탈북과정을 경험하고 영유아기를 남한에서 보낸 아이들의 경우, 잘 먹지 못해 영양이 부족해 면역력이 약해 잔병치레가 잦고, 심한 경우 장애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남한에서 출생한 경우도 어머니가 임신 때 충분히 영양을 섭취하지 못하거나 정보가 부족해서 태아에게 좋지 않은 음식을 섭취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환경적인 부분에 받는 스트레스로 인해 신체발달이 지연되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 2) 정서 발달의 문제

엄마의 우울증으로 체벌을 심하게 당한 자녀들은 불안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면담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굉장히 예민해요. 제가 옆에 없단 느낌만 들면 베개 들고 저를 찾아와요. 그리고 딸깍 하고 소리만 나도 코를 골다가도 안자던 사람처럼 일어나요. 큰 아이는 징징거리면서 그래요. 제가 울지 말고,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을 하라고 해요. 모든 투정으로부터 시작되요. 그래서 큰 아이랑 마찰이 심해요(사례 16).

중국에서 2004년도에 태어난 큰 아이가 남한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공포스런 경험을 6개월 정도 하게 되면서 입은 심리적 트라우마로 인해, 초등학생이 된 지금도 혼자 있지 못한다고 한다(사례 13).

00이는 중국에서 남한으로 데리고 오면서 애가 공포감을 느꼈다 할까? 중국에서 6개월 동안 갇혀 있었던 적이 있어요. 애가 좀 하여튼 마음이 안정 안 되고 공포라구 할까 막 무섭다구 그래요. 작은 애(남한에서 태어난)는 엄마하구 떨어져 두 잘 있구 그러는데. 지금도 옆집 애하고 같이 있어서 그렇지 혼자 집에 못 있어요(사례 13).

아버지의 가정폭력이 심한 사례 11의 자녀들은 면담조사 당시, 아버지의 폭력을 피해 지방으로 큰 아이의 학교를 전학시키고, 작은 아이는 분리불안 증세로 어린이집 이용을 잠시 보류한 상태였다.

(작은) 애가 어린이집 소리만 하면 막 기절을 해요. 그래서 얼마간 안정하구 어린이집 보내려구요. 그리고 자다가도 일어나서 내가 서 있으면 어느 가느냐고 하면서 애가 막 울어요(사례 11).

가부장적인 아버지를 둔 사례 9의 자녀도 천식의 질병과 함께 정서장애 증세를 보이고 있다(사례 9).

우리 00는 편식이 좀 심해요. 안 먹는 건 입에 물고 있다 뱉어 버릴 때도 있고, 자꾸 토하고, 애가 자꾸 토해요. 우유 먹다가도 분수 뿜는 것처럼 다 토해서 저한테 다 뿌려버리고, 저 애 키우면서 별 오만가지 짓 다 해본 것 같아요(사례 9).

부모가 맞벌이를 하면서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했고 이혼을 하게 된 가정환경이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사례도 있었다(사례 7, 사례 20).

(돌 이후부터 떼어놓아 그런지) 애가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짜증이 많아요. 애기 때부터 저녁에 애가 자지를 앓고 막 손톱으로 내 얼굴 쥐어뜯고 그래요(사례 7).

(첫째, 둘째)둘 다 ADHD인가 그거를 치료를 받으래요. 저는 아이가 스스로 크는 줄 알았어요. 그냥 밥이나 해주고 엄마가 열심히 사는 거 보여주면 아이도 열심히 산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니까 그런게 툭툭 튀어나오고 그래서 이제 와서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하고...(사례 20)

정서발달의 경우, 아이가 탈북과정에서 공포를 경험하면서 불안정한 정서를 가지게 될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부모와 양육태도에 의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여진다. 부모가 정서장애를 보이거나, 부모-자녀간 애착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

한 경우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함을 표현하고 있었다. 따라서 자녀의 정상적인 정서발달을 위해서는 먼저 부모 스스로 안정감을 가지고 민주적인 양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3) 사회성 발달의 문제

정서적으로 불안한 자녀는 단체생활을 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그리고 초등학교에 가서도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사례 9).

저희 아들이 놀다가, 여자 아이를 발로 밟았대요. (어린이집 선생님이) 그래서 미안하다고 해야되는데 그 표현을 안한대요……저희 옆에 동네 아이도 때려가지고 혼났어요. 저희 아들이 책으로 때려가지고……(사례 9)

자녀가 친구와 다툰 시 지는 것을 볼 수 없어서 싸움을 유발하는 양육을 하는 부모의 사례도 있었다(사례 12). 대부분의 새터민 부모들은 자녀가 또래와 다툰을 한 경우 맞기보다는 같이 때려서라도 보복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어렵게 탈북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만큼은 남한에서 다른 사람한테 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선생님이) OO가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자기를 괴롭힌다고.. 북한 부모들은 때린 아이를 다시 때리고 오기 전까지는 들어오지 말라고 해요. 그런데 저는 친구를 먼저 때리는 것은 아니지만, 친구가 때리면 너도 때려라 이런 말을 해주거든요(사례 12).

탈북 가정의 자녀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의 원장대상으로 실시한 면담조사를 통해서도 일부 아이의 문제행동을 발견할 수 있었다(원장 면담 사례 2, 원장 면담 사례 3).

또래 유아들에 비해 고집이 센 편이며, 친구들과의 소통보다는 자기주장을 많이 내세우는 편이고,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울음으로 표현하는 편입니다(원장 면담 사례 2).

유난히 욕심과 고집이 유난히 강하고, 공격성이 강해서 또래 친구하고의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원장 면담 사례 3).

새터민 자녀의 사회성발달에 관한 면담 내용을 정리해 본 결과,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서 친구를 때리는 등의 폭력성이 나타는 경우도 있었지만, 남한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 대체적으로 또래관계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북한 또는 제 3국에서 출생해서 탈북과정을 경험하고 영유아기에 남한에 입국한 경우 사회성 발달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북한 또는 제 3국을 거치면서 언어가 달라 또래들과 쉽게 친해지기 어렵고 적응에 문제가 생기면서 폭력적인 성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아이들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이나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라. 학습지도의 어려움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은 남한 사회에서 아동의 학습지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였다(사례1, 사례2, 사례23).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은 북한에서 영어를 배운 경험이 없어 외래어가 섞인 한국 사회의 언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사례1). 또한 남한 사회의 학습 용어에 익숙하지 않아서 부모들이 자녀를 교육하는 것은 거의 포기하고, 남한에 있는 교육기관이나 개별 학습지도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자녀 학습지도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었다(사례2, 사례23).

원래 북한 애들은, 특히 북한 부모들은 여기 학생들의 흐름을 모르잖아요. 나는 어떨 때 가면 무슨 준비물 해오세요 하면 ‘야 이게 무슨 글자니’ 여기 다 외래어 많이 쓰니까(사례 1).

애가 학교에 들어갔는데 교과서를 집에 가져왔는데 저도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안 되고 저의 남편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한테 배워줄래야 배워 줄 수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야 이거 아니다” 그래서 학원에 보내려고 학원에 물어봤어요. 그런데 돈이 만만치 않더라구요(사례 2).

애기하고 같이 대화를 해보면 애기가 엄마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애들 이제 공부도 초등학교가 그렇게 어렵다고 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초등학교는 되게 쉬운 것 같은데 학교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그런 얘기를 해서, 문제풀이도 더하기 빼기 이런 것도 숫자가 엄청 많은 숫자를 가르치기도 하고 개별 학습지도를 후원회에서 바우처로 했을 때 선생님하는 것을 제가 봤었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 기한이 끝나면 제가 집에서 해보자 했었는데, 그렇게 할 때 할 때마다 제가 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애기하고 같이 대화를 하는 게 제가 몇 번 했는데도, 엄마 이 말은 아니잖아.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래서 그래도 선생하고 일대일 하는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사례 23)

사례1의 경우에는 남한 사회가 전반적으로 아동들의 학습 지원에 적극적이라고 생각하고, 반면 자신들은 자녀 학습에 대한 지원을 잘 해주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였으며 그로 인한 심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사례5의 경우에는 한국사회의 문화나 역사를 배운 적이 없어 자녀가 남한사회에 적응하는 것을 잘 도와줄 수 없다고 생각하여서, 한국의 역사나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원하였다.

나는 여기서 다른 것 없이 다른 곳에 특별하게 지원한다기 보다는 육아 쪽으로 선생님 눈높이라던가 이런 걸 차라리 해줬으면. 왜냐하면 특별하게 이런 것 보다는 돈지원하고 특별하게 하는 것보다도 우리는 그런 것 모르잖아요. 영어랑 그런 거 다 모르잖아요. 북한사람들 특히 영어 안 배우니까. 뭐 무슨 우리 순창이 보니까 지금 6살인데 노래 부를 때 보니까 꼬깔모자 A 볼록볼록 B. 우리는 그런 거 전혀 모르고. 6살이 저렇게 하는 정도면 어느 만큼 얼마나 따라가야 TV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어떡하나. 속으로 걱정이죠(사례1).

엄마들도 조금 역사라든가, 교육을 받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한국 역사를 몰라요. 역사나 사회를 알아야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는데, 엄마들이 모르니까(사례5).

이상의 내용은 장명림 외(2009) 연구에서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 및 영유아기를 남한에서 보낸 아동의 부모 또는 실제 주양육자 16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학습지도의 어려움을 이동양육에서의 가장 큰 어려움인 것으로 보고했던 사실과 맥락을 같이한다. 부연하면, 2009년의 설문 조사 내용에서 이동양육으로 인한 어려움의 다양한 척도(예, 사교육비/양육비 부담, 양육 방식 관련 배우자 또는 가족과의 갈등,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나 시설이 없음 등) 중에서 학습지도로 인하여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정도가 가장 높은 점수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통하여서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이 자녀의 학습지도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지를 짐작할 수 있다.

## 마. 자녀 정체성의 문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탈북가정이란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부모들은 이를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았다. 자녀 모두 남한에서 태어난 대부분은 자신이 탈북가정이란 것 거의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사례 10, 사례 13). 사례 11처럼 자녀 스스로가 북한출신인 것을 교사로 인해 알게 되었는데 부모는 자녀가 또래로부터 놀림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너무 싫다고 했다.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은 자신들이 북한에서 왔다고 하면 자녀들이 왕따를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심리적 기저로 작용하여 자신들의 자녀가 탈북가정이라는 사실을 숨기려고 하였다(사례 13).

엄마는 북한 새터민, 아빠는 중국 조선족이지만, 아이는 여기서(남한) 태어났고 국적이 남한 이잖아요. 당연히 여기사람이죠. 나랑 아빠에 관계없이. 주변의 눈총 그런 거 없이 그냥 보통 남한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어요(사례 10).

큰 아이가 5살 때 (남한에) 왔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면 남한 애인줄 알아요. 근데 우리가 계속 북한에 대한 말을 하니깐 애가 알아요. 한번은 00이가 학교에서 사회시간에 선생이 아이들한테 00이가 북한에서 왔다고 도와주라고 말했대요. 그래서 집에와서 엄마 사회선생이 입이 되게 가볍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니 하니깐 선생이 아이들한테 공개적으로 말했다구. 근데 다음날은 옆반 아이들까지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구 애들이 집에 와서 놀면서 컵 라면 먹으면서 ‘야 이것두 북한식이야’ 하면서 놀려 대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싫어요(사례 11).

엄마가 북한 출신이란 사실을 아이들은 전혀 몰라요. 아직은 어려서 말을 해줘도 모를 것 같아서요. 아이가 모르고 **우리 엄마가 북한에서 왔다고 하면 왕따 주지 않을 까 걱정 되요. 제가 직접 경험하기도 했어요. 어떤 엄마는 제가 북한에서 왔다고, 자기 아이한테 말을 해주더라고요.** 아무개 엄마는 북한에 왔대네, 라고. 가끔 큰 아이가 엄마 고향이 어디냐고 묻는 데 저는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2010년 올림픽 때 북한하고 포루투갈하고 축구경기가 있었는데 저보고 누굴 응원하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북한 응원하다고 했더니, 우리랑 똑 같이 생겨서 응원하는 거지?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이북에서 왔다는 것으로 아이가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일 걱정돼요(사례 13).**

아이들도 정체성 혼란이 올 때가 있었어요. 큰 아이는 저한테 왜 우리는 말투가 다르냐고 물어보더라고요(사례 16).

북한에서 태어났지만 두 살 때 왔기 때문에 재는 (엄마가 북한 사람인 거) 하나도 몰라요. 저는 북한에 대한 기억이 없는 게 좋아요. 북한 사람들이 집에 올 때가 있으면 애들 앞에서는 북한 말 하지 말라고 해요. 북한말 이제는 싫어요. 되게(사례 30)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은 북한 사회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한 채로 성장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부모 각자의 국적이 다르지만 다문화 가정은 아닌 독특한 정체성을 가진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겪을 수 있는 정체성 혼란으로 야기될 수 있는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 남한 사회에서 성장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의 정체감 혼란 문제를 예측하면서 성장기 자녀들이 어려움을 경험할 때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상담 기관 등의 연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자녀 정체성 형성에 있어 또 하나의 문제는 같은 형제 간의 성(姓)이 다르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 북한에서 결혼을 해서 낳은 자녀와 남한에서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서 출산한 아이에게서 발생한다. 북한에서 낳은 자녀는

북한 남편의 성을, 남한에서 낳은 자녀는 어머니의 성을 따른다(사례 1, 사례 6). 아직은 자녀가 어려서 이러한 연유를 부모가 설명하지 않고 있으며 자녀가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한다. 아직은 어려서 잘 모르지만, 커가면서 자신의 누나, 오빠와 성이 다르고 부모가 북한 출신이란 사실을 알게 되면서 겪을 수 있는 정체성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움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북한에서 태어난) 누나까지는 여기와서 자기는 이북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작은) 애가 어떻게 되겠는가……지금 성도 다르지……누가 이름은 뭐야. 누나 이름은 김00. 자기 이름은 한00이라고 써요. 지금까지는 놀기 바쁘니깐 잘 몰라요. 은근히 걱정하고 있는 데 본인한테 맡겨야죠. 부모가 어떻게 해 줄수가 없잖아요(사례 1).

#### 4. 북한이탈주민 지원서비스 이용 실태

본 설문조사에서는 북한이탈주민 대상의 다양한 정착서비스 중에서 정착도우미, 신변보호담당관(형사), 직업훈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전문상담사, 하나센터 등의 인지, 수혜 경험, 만족도 등을 파악하였다.

##### 가. 정착도우미 서비스

〈표 IV-4-1〉 정착도우미 인지 정도

구분	단위: %(명)				$\chi^2(df)$
	잘 앎	대략 앎	잘 모름	계	
전체	58.0	17.0	25.0	100.0(100)	2.87(4)
거주기간별					
5년이하	68.4	15.8	15.8	100.0( 19)	
6년~10년	53.0	19.7	27.3	100.0( 66)	
11년 이상	66.7	6.7	26.7	100.0( 15)	

먼저, 정착도우미 지원서비스의 응답결과를 보면, 응답자 100명 중에서 65명인 75%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모른다는 응답도 25명이었다. 정착도우미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서비스 중에서 민간에게 위탁한 가장 최초의 서비스로서 2005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다(II장 1절 참조). 따라서 남한 거주기간이 11년 이

상이 된 경우에는 정착도우미 서비스를 알지 못하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정착도우미 지원서비스를 안다고 응답한 75명을 대상으로 받은 경험이 있는냐는 질문에서 73.4%(55명)가 받았다고 응답했다. 거주기간이 11년이 넘은 경우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온 것은 이 서비스가 2005년부터 실시되었기 때문에 당연한 응답 결과라 볼 수 있으나,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실제 받았는지 아니면 다른 서비스를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표 IV-4-2〉 정착도우미 수혜 경험 정도

단위: %(명)

구분	현재 받음	과거 받았음	받은 적 없음	계	$\chi^2(df)$
전체	6.7	66.7	26.7	100.0( 75)	3.50(4)
거주기간별					
5년이하	12.5	75.0	12.5	100.0( 16)	
6년~10년	6.2	62.5	31.2	100.0( 48)	
11년 이상	0.0	72.7	27.3	100.0( 11)	

정착도우미 서비스를 받았다는 55명에게 만족도를 알아본 결과, 96.3%가 만족하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본 면접조사에서는 정착도우미 서비스를 만족하는 사례를 발견하지는 못했다.

〈표 IV-4-3〉 정착도우미 만족도

단위: %(명)

구분	매우만족	만족	불만족	계	$\chi^2(df)$
전체	32.7	63.6	3.6	100.0( 55)	1.09(4)
거주기간별					
5년이하	35.7	57.1	7.1	100.0( 14)	
6년~10년	30.0	66.7	3.0	100.0( 33)	
11년 이상	37.5	62.5	0.0	100.0( 8)	

### 나. 신변보호담당관 서비스

신변보호담당관(형사)에 대한 인지도는 그 어느 서비스보다 높았다. 8명을 (8.0%) 제외한 92명이 이 서비스를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거주기간별 유의미한 통계적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 IV-4-4〉 신변보호담당관 서비스 인지 정도

단위: %(명)

구분	신변보호담당관 인지				$\chi^2(df)$
	잘 앎	대략 앎	잘 모름	계	
전체	64.0	28.0	8.0	100.0(100)	3.43(4)
거주기간별					
5년이하	73.7	15.8	10.5	100.0( 19)	
6년~10년	60.0	33.3	6.1	100.0( 66)	
11년 이상	66.7	20.0	13.3	100.0( 15)	

신변보호담당관 서비스는 수혜 경험자도 70명으로 가장 많았다. 관할 경찰서의 형사가 신변보호담당관으로 배정되는데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인력이라는 점에서 신변의 불안을 느끼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서비스라 수혜경험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금까지도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가 43.5%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표 IV-4-5 참조). 수혜를 받은 70명 중 5명만이 불만족, 96.8%가 만족스럽다고 응답했다. 신변보호담당관은 영유아를 둔 탈북여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유용한 서비스라 하겠다(표 IV-4-6 참조).

〈표 IV-4-5〉 신변보호담당관 서비스 수혜 경험 정도

단위: %(명)

구분	신변보호담당관 수혜 경험				$\chi^2(df)$
	현재 받음	과거 받았음	받은 적 없음	계	
전체	43.5	32.6	23.9	100.0( 92)	7.71(4)
거주기간별					
5년이하	53.8	23.5	17.6	100.0( 17)	
6년~10년	45.2	29.0	25.8	100.0( 62)	
11년 이상	15.4	61.5	23.1	100.0( 13)	

〈표 IV-4-6〉 신변보호담당관 서비스 만족도

단위: %(명)

구분	신변보호담당관 서비스 만족도				$\chi^2(df)$
	매우만족	만족	불만족	계	
전체	41.4	51.4	7.1	100.0( 70)	4.48(4)
거주기간별					
5년이하	21.4	71.4	7.1	100.0( 14)	
6년~10년	47.8	43.5	8.7	100.0( 33)	
11년 이상	40.0	60.0	0.0	100.0( 8)	

### 다. 직업훈련 서비스

자격증 취득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직업훈련 서비스에 대해 81.0%(81명)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알고 있다는 경우가 더 많았다.

〈표 IV-4-7〉 직업훈련 서비스 인지 정도

단위: %(명)

구분	직업훈련서비스 인지				χ <sup>2</sup> (df)
	잘 앎	대략 앎	잘 모름	계	
전체	55.0	26.0	19.0	100.0(100)	0.83(4)
거주기간별					
5년이하	57.9	26.3	15.8	100.0( 19)	
6년~10년	56.1	25.8	18.2	100.0( 66)	
11년 이상	46.7	26.7	26.7	100.0( 15)	

직업훈련 서비스를 알고 있다는 81명에게 서비스를 직접 받아 본 적이 있는지 묻은 결과, 받고 있거나 받은 적이 있다고 66명이 응답했다(81.5%).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현재 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많았고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도 가장 많았다. 거주기간이 긴 탈북자들은 70% 이상이 과거에 받았다고 응답했다.

〈표 IV-4-8〉 직업훈련 서비스 수혜 경험 정도

단위: %(명)

구분	현재 받음	과거 받았음	받은 적 없음	계	χ <sup>2</sup> (df)
전체	7.4	74.1	18.5	100.0( 81)	1.71(4)
거주기간별					
5년이하	12.5	62.5	25.0	100.0( 16)	
6년~10년	5.6	77.8	16.7	100.0( 54)	
11년 이상	9.1	72.7	18.2	100.0( 11)	

2006년도에 입국한 사례 3은 입국한 지 6년이 지났지만 직업훈련을 한번도 받지 못했다. 이처럼 입국한지 5년이 지나도 직업훈련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으나 자격취득금 등의 이유로 대부분은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한다.

(중국에 있는) 남편과 애를 데리고 오려면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하나원에서) 나오자마자 3일 만에 일을 했어요. 나도 학원가서 자격증을 따야 되겠다 했는데 일을 해 가지고 자격증이 없어요(사례 3).

직업훈련 서비스를 경험한 66명에게 만족도를 알아본 결과, 59명(89.4%)이 만족스럽다고 응답했다. 거주기간이 6~10년 탈북민이 서비스 불만족이 가장 많았으나 이 역시, 사례수가 적기 때문에 해석 시 유의해야겠다.

〈표 IV-4-9〉 직업훈련 서비스 만족도

단위: %(명)

구분	매우만족	만족	불만족	계	$\chi^2(df)$
전체	30.3	59.1	10.0	100.0( 66)	4.64(4)
거주기간별					
5년이하	41.7	58.3	0.0	100.0( 12)	
6년~10년	28.9	55.6	15.6	100.0( 45)	
11년 이상	30.0	59.1	0.0	100.0( 9)	

## 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서비스

하나센터 사업과 마찬가지로 지원재단도 2010년에 출범한 신생기구이나, 기존의 북한이탈주민후원회가 모태가 되어 설립되었기 때문에 82.0%의 탈북민이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표 IV-4-10〉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인지 정도

단위: %(명)

구분	잘 앎	대략 앎	잘 모름	계	$\chi^2(df)$
전체	59.0	23.0	18.0	100.0(100)	4.57(4)
거주기간별					
5년이하	78.9	10.5	10.5	100.0( 19)	
6년~10년	56.1	25.8	18.2	100.0( 66)	
11년 이상	46.7	26.7	26.7	100.0( 15)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받은 적이 있는 경우가 62.2%로 미수혜자보다 많으나, 미수혜자도 37.8%(31명)로 적지 않은 수이다. 특히, 남한 거주기간이 긴 탈북민 중에서 현재 받고 있는 경우가 9.1%에 그쳤다.

〈표 IV-4-11〉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서비스 수혜 경험 정도

단위: %(명)

구분	현재 받음	과거 받았음	받은 적 없음	계	$\chi^2(df)$
전체	18.3	43.9	37.8	100.0( 82)	3.50(4)
거주기간별					
5년이하	29.4	35.3	35.3	100.0( 17)	
6년~10년	16.7	42.6	40.7	100.0( 54)	
11년 이상	9.1	43.9	27.3	100.0( 11)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92.8%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거주기간이 길수록 만족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사례수가 적어서 일 반화하는데 유의해야겠다.

〈표 IV-4-12〉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서비스 만족도

단위: %(명)

구분	매우만족	만족	불만족	계	$\chi^2(df)$
전체	41.4	51.4	7.1	100.0( 70)	4.48(4)
거주기간별					
5년이하	21.4	71.4	7.1	100.0( 14)	
6년~10년	47.8	43.5	8.7	100.0( 33)	
11년 이상	40.0	60.0	0.0	100.0( 8)	

#### 마. 북한이탈주민전문상담사 서비스

전문상담사 서비스도 2010년도에 도입된 신생 서비스이다. 비슷한 시기에 출범한 지원재단을 모르는 경우는 18.0%이지만 전문상담사는 43.0%가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표 IV-4-13〉 북한이탈주민전문상담사 인지 정도

단위: %(명)

구분	잘 앎	대략 앎	잘 모름	계	$\chi^2(df)$
전체	38.0	19.0	43.0	100.0(100)	2.78(4)
거주기간별					
5년이하	26.3	26.3	47.4	100.0( 19)	
6년~10년	40.9	15.2	43.9	100.0( 66)	
11년 이상	40.0	26.7	33.3	100.0( 15)	

전문상담사 제도를 안다고 응답한 57명 중에서 서비스를 직접 받은 경우는 57.5%(33명)이고 받은 적이 없다가 42.1%(24명)이었다(표 IV-4-14 참조). 전문상담사 서비스를 받아 본 응답자의 87.5%가 만족스럽다고 답했다.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이 많았으나, 사례수가 적어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표 IV-4-15 참조).

〈표 IV-4-14〉 북한이탈주민전문상담사 서비스 수혜 경험 정도

단위: %(명)

구분	현재 받음	과거 받았음	받은 적 없음	계	$\chi^2(df)$
전체	17.5	40.0	42.1	100.0( 57)	8.62(4)
거주기간별					
5년이하	20.0	40.0	40.0	100.0( 10)	
6년~10년	21.6	29.7	48.6	100.0( 37)	
11년 이상	0.0	80.0	20.0	100.0( 10)	

〈표 IV-4-15〉 북한이탈주민전문상담사 서비스 만족도

단위: %(명)

구분	매우만족	만족	불만족	계	$\chi^2(df)$
전체	36.4	51.1	12.1	100.0( 33)	5.01(4)
거주기간별					
5년이하	33.3	33.3	33.3	100.0( 6)	
6년~10년	42.1	47.4	10.5	100.0( 19)	
11년 이상	25.0	75.2	0.0	100.0( 8)	

## 바. 하나센터 서비스

2009년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하나센터 사업은 정착 초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시기에 제공하는 지역밀착형 지원사업이라 하겠다. 이 사업 역시 시행된 지 2년 정도밖에 되지 않고, 목적이 초기 정착이기 때문에 남한 거주기간이 오랜 된 탈북민은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하나센터를 알고 있다고 응답자 51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받아 본 적이 있거나 현재 받고 있는 경우가 62.8%(32명)이었다. 실제 서비스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도 37.3%(19명)으로 적지 않은 수치이다. 수혜 경험이 거주기간에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지만, 5년 이하 거주자의 경우 수혜 경험이 많은 것을 알 수 있

다. 하나센터 서비스를 받아 본 32명 중 87.5%(28명)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IV-4-16, 표 IV-4-17 참조).

〈표 IV-4-16〉 하나센터 인지 정도

단위: %(명)

구분	잘 앎	대략 앎	잘 모름	계	$\chi^2(df)$
전체	36.0	15.0	49.0	100.0(100)	8.85(4)
거주기간별					
5년이하	63.2	10.5	26.3	100.0( 19)	
6년~10년	28.8	18.2	53.0	100.0( 66)	
11년 이상	33.3	6.7	60.0	100.0( 15)	

〈표 IV-4-17〉 하나센터 수혜 경험 정도

단위: %(명)

구분	현재 받음	과거 받았음	받은 적 없음	계	$\chi^2(df)$
전체	11.8	51.0	37.3	100.0( 51)	10.99(4)*
거주기간별					
5년이하	21.4	71.4	7.1	100.0( 14)	
6년~10년	6.5	38.7	54.8	100.0( 31)	
11년 이상	16.7	66.7	16.7	100.0( 6)	

\*  $p < .05$

2003년도 입국한 사례 23의 면담에서 하나센터가 새로 온 사람들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2006년도에 온 사례 13도 하나센터를 경험해 보지 못해서 모르고 있었다.

하나센터는 지금 새로 들어 온 사람들 위주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오래된 사람들은 그동안 정착이 됐으니까 새로 들어온 사람들로 정착 그 모임을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하나센터는 육아에 대한 서비스는 없어요(사례 23).

하나센터 이용은 안 해요. 여기 전주에도 있어서 종종 말은 들어요. 말은 들어도 하나센터는 교육이 딱 분담이 된 것 같아요. 그냥 이 교육 방면에서만 해라, 2주씩, 무슨 무슨 부분에서 교육해라, 그러니까 하나센터에서는 이제껏 뭐 도움이 될 만한 서비스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사례 28).

정착도우미는 알지만 하나센터는 못 들어봤어요. 정착도우미들이 김장김치 배추를 줬었어요(사례 13)

2003년도에 입국한 사례 23은 남한에서 자녀를 세 명 출산했으나, 북한이탈주민 관련 단체에서 육아서비스를 맡은 적이 없다고 했으며, 사례 12는 보호기간 5년 동안에도 적극적인 도움은 거의 없었다고 했다.

애 3명을 키우면서 형사(신변보호담당관), 복지사, 정착도우미 북한이탈주민지원 자원재단과 같은 데서 도움은 없었어요. 육아에 대한 지원은 없어요. 북한이탈주민후원회에서 바우처로 학습지를 2번 정도 받은 적은 있어요(사례 23).

보호기간 5년 전에도 별로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정착도우미들의 도움만 받았어요. 그것도 그렇게 자주 받지는 못했고, 김장철에나 도움을 받았어요. 저희는 바라는 건 아니었지만, 00시가 새터민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신변보호관 형사님들도 금방 나온 사람한테 도움을 주지, 저희 같은 사람한테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사례 12).

면담조사를 하면서 다양한 지원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는데 일선에서 서비스를 제공, 실시하는 담당자의 개인적 노력이나 성향에 따라 서비스의 양과 질이 달라지는 사례들이 있었다.

000복지사에 계셨을 때는 서비스가 많았어요. 그 분이 (지원서비스를) 알아봐 주셔서 놀이동산에도 갈 수 있었고, 이것 저것 많이 도와주셨어요. 지금이 바뀌면서 서비스가 없어졌어요(사례 4).

## 5. 기타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 실태

4절에서는 북한이탈주민 대상의 정책 인지 및 수혜 정도, 만족도 등을 살펴 보았다면 5절에서는 일반 국민 대상으로 지원하는 육아정책에 대해 탈북가정의 인지 및 수혜 정도, 만족도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 가. 고운맘 카드

고운맘 카드는 소득에 상관없이 임신부에게 발급되는 카드로서, 병원이나 출산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고운맘카드는 소득에 상관없이 지급되기 때문에 임신한 탈북여성들은 누구나가 받는 카드이다. 그런데 이 카드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한 사례가 57.0%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표 IV-5-1〉 고운맘 카드 인지 정도

단위: %(명)

구분	잘 앎	대략 앎	잘 모름	계	$\chi^2(df)$
전체	36.0	7.0	57.0	100.0(100)	4.48(2)
기초생활수급여부					
받음	29.1	10.9	60.0	100.0( 55)	
안 받음	44.4	2.2	53.5	100.0( 45)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가정에서 모른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왔는데, 이는 의료보험 1종 혜택을 받고 있는 수급권자는 제외되기 때문이다.<sup>11)</sup> 기초생활수급자인 사례 3이 해당되는 사례인데 중복지원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고운맘 카드는 제가 아이 낳고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의료보험 1종이라 임신했을 때 다 되더라구요. 제왕절개를 했는데 다른 집은 다 100만원 넘게 나왔는데 저는 혜택을 받아서 24만원만 냈어요(사례 3).

## 나. 출산장려금

설문조사 대상자 100명에게 출산장려금 제도를 아는 지 알아본 결과, 잘 모른다가 21.0%(21명)이며 나머지 79명은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기초생활수급별 변인과는 상관없이 대부분의 탈북민들이 이 제도를 인지하고 있었다(표 IV-5-2 참조). 출산장려금을 알고 있는 79명에게 직접 수령해 본 경험이 있는 지 묻은 결과, 92.4%가 받았다고 답했다. 기초생활수급의 경우는 대부분 출산장려금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다(표 IV-5-3 참조).

〈표 IV-5-2〉 출산장려금 인지 정도

단위: %(명)

구분	잘 앎	대략 앎	잘 모름	계	$\chi^2(df)$
전체	67.0	12.0	21.0	100.0(100)	.11(2)
기초생활수급여부					
받음	67.3	12.7	20.0	100.0( 55)	
안 받음	66.7	11.1	22.2	100.0( 45)	

11) 고운맘카드 발급 제외대상자는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로서 건강보험의 적용 배제 신청을 한 자 3) 신청 접수시상실자(주민등록말소자), 급여정지자(특수시설수용자, 출국자등)이다.  
(www.socialservice.or.kr, 검색일: 2012년 10월)

〈표 IV-5-3〉 출산장려금 수혜 경험

단위: %(명)

구분	받음	받지 않음	계	$\chi^2(df)$
전체	92.4	7.6	100.0( 79)	1.58(2)
기초생활수급여부				
받음	95.5	4.5	100.0( 44)	
안 받음	88.6	11.4	100.0( 35)	

면담조사자 중 많은 사람들이 출산장려금을 수령했다. 자녀 3명 모두 남한에서 출산한 사례 23은 세 자녀 모두 고운맘 카드와 출산장려금으로 50만원씩 받았다.

2009년에 태어났는데 출산장려금 50만원 받았어요. 산모도우미 서비스는 받지 않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같이 계셔서요(사례 14).

2009년에 낳는 데 나라에서 출산장려금으로 50만원 줬어요. 고운맘 카드는 안 나왔어요(사례 17).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례 15는 2006년도에 자녀를 출산했지만 출산장려금을 받지 못했다. 출산장려금은 지자체에 따라 지급기준과 액수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수령 여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 다. 아이돌보미

출산 후 산모도우미 또는 육아도우미 역할을 수행하는 아이돌보미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52.0%로 “알고 있다” 48.0%보다 더 많았다. 기초수급을 받지 않은 가정에서 “알고 있다”는 응답이 53.4%로 전체 경향과는 다르게 나왔다. 그렇지만 아이돌보미 사업은 영유아 자녀가 있는 탈북가정에게는 출산장려금이나 고운맘 카드처럼 친숙하지 않은 제도임에 틀림없다(표 IV-5-4 참조).

〈표 IV-5-4〉 아이돌보미 인지 정도

단위: %(명)

구분	잘 앎	대략 앎	잘 모름	계	$\chi^2(df)$
전체	34.0	14.0	52.0	100.0(100)	1.34(2)
기초생활수급여부					
받음	32.7	10.9	56.4	100.0( 55)	
안 받음	35.6	17.8	46.7	100.0( 45)	

아이돌보미 사업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례는 실제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54.2%).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가구가 수혜경험이 조금 더 높게 나왔으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절반이 경험을 했다고 응답하였다(표 IV-5-5 참조).

〈표 IV-5-5〉 아이돌보미 수혜 경험

단위: %(명)

구분	받아 봤음	받지 않음	계	$\chi^2(df)$
전체	54.2	45.8	100.0( 48)	2.26(2)
기초생활수급여부				
받음	58.4	41.7	100.0( 24)	
안 받음	50.0	50.0	100.0( 24)	

아이돌보미 사업이 낮은 인지도와 적은 수혜 경험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지원재단에서 도우미 서비스를 실시한 게 2년도 채 안 된다는 점에서, 탈북가정이 일반적인 육아지원정책을 잘 알지 못한다고 이해할 수 있겠다.

**라. 드림스타트·위스타트 사업: 저소득층 포괄적 영유아지원사업**

〈표 IV-5-6〉 드림·위스타트 사업 인지 정도

단위: %(명)

구분	잘 앎	대략 앎	잘 모름	계	$\chi^2(df)$
전체	12.0	1.0	87.0	100.0(100)	1.34(2)
기초생활수급여부					
받음	14.5	0.0	85.5	100.0( 55)	
안 받음	8.9	2.2	88.9	100.0( 45)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을 위한 포괄적 지원사업인 드림·위스타트 사업에 대해서 탈북민들 대부분은 모르고 있었다. 100명 응답자 중에서 알고 있는 경우는 13명에 불과했다. 탈북가정이 저소득층 가정이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극히 일부는 지원을 받고, 대부분의 경우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규명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드림·위스타트 사업을 알고 있는 경우 역시, 해당 사업 서비스를 지원받았던 사례들이 대부분이었다. 알고 있다고 응답한 13명 중 11명이 서비스를 제공받았고, 기초생활수급을 받지 않는 가정 5사례 모두 수혜를 받은 적이 있었다.

〈표 IV-5-7〉 드림·위스타트 사업 수혜 경험

단위: %(명)

구분	받아 봤음	받지 않음	계	$\chi^2(df)$
전체	84.6	15.4	100.0( 13)	.38(2)
기초생활수급여부				
받음	75.0	25.0	100.0( 8)	
안 받음	100.0	0.0	100.0( 5)	

본 면접조사에서도 드림스타트나 위스타트 등 저소득층 대상 지원사업의 도움을 받는 사례는 아주 적었다(사례 6, 사례 11, 사례 13, 사례 16). 다음 인용글들은 위스타트에서 예방접종, 책과 교재, 학원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사례이다.

위스타트에서 가을에 예방접종비를 지원해 주고 있었요.……또 교재도 거의 20만원어리를 지원해 주신 거예요. 돈은 아닌데 책을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그 정도 금액있더라고요. 책이 비싸요. 그리고 놀이감도 지원해 주고, 저희가 돈을 주고는 못 사잖아요(사례 6).

드림(스타트)에서 50%를 지원해 줘서 지금 태권도 배우고 있어요. 두 아이 각각 5만원씩 10만원 내요(사례 16).

사례 13은 허약하고 예민한 큰 아이가 걱정되었는데 마침 ‘드림스타트사업’에서 연락이 먼저 와서 한약과 학습지 무상 혜택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는 다른 피면담자들에게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드림스타트의 후원을 받아서 큰 아이에게 한약을 먹였어요. 다른 집 아이들은 그 한약을 먹고 밥도 잘먹고, 잠도 잘 잔다는데 우리 아이은 아직 효과가 없어요. (질) 드림 스타트는 어떻게 아셨어요? (답) **드림스타트에서 먼저 전화가 왔었어요.** 제가 한약을 짓고 싶다고 하니깐 그쪽에서 해줬어요. 학습지 지원도 받아서 선생님이 집으로 와요. 무상으로 둘 다 받아요(사례 13).

한편, 탈북가정은 실제 한부모 가정도 많지만, 혼인신고를 한 했기 때문에 등록상 한부모 가정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에서 ‘알아서’ 방문하여 서비스를 지원한 사례는 본 면담조사에서는 단 한 사례만 있었다.

한부모 가정(지원사업)에 신청도 안 했는데 왔어요.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보니까, 하나원에서 졸업할 때 우리 명단이 나간대요. 시나, 군이나, 이런 데로 나간대요. 그래서 제가 하나원 졸업해서 나와서 여기에 고정으로 살고 있으니까 나에 대한 소개가 그냥 쪽 쌀이나 봐요. 시, 군에서 이 사람이 2007년도에 졸업해서 여기 배치되어 나왔다, 000이라고 치면, 나의 지금 신상 생활까지 나온대요. 그래서 신랑은 아직 결혼 등록 돼있지 않으니까, 엄마 아이 혼자 키우는 걸로 돼서 한부모 가정에서 저를 찾아온 거예요. 저는 한부모 가정을 신청도 안했는데, 그리고 와서 저희 아들한테 주에 2번 교육 주더라고요(사례 9).

### 마. 어린이집 미이용 시 0~2세 양육수당 지원

〈표 IV-5-8〉 0~2세 양육수당 서비스 인지 정도

구분	잘 앎	대략 앎	잘 모름	계	단위: %(명) $\chi^2(df)$
전체	38.0	13.0	49.0	100.0(100)	1.91(2)
기초생활수급여부					
받음	41.8	9.1	49.1	100.0( 55)	
안 받음	33.3	17.8	48.9	100.0( 45)	

어린이집을 다니는 양아에게 가구소득별로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을 알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안다” 51.0%, “잘 모른다” 49.0%로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 앞에서 고찰했듯이 탈북가정의 영유아들은 일찍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려는 경향이 많고, 아르바이트나 부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정 내 양육을 지원하는 0~2세 양육수당 정책은 이들 가정에게는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다.

양육수당을 알고 있다는 51명의 68.6%가 서비스를 받아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가정에게서 수혜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9〉 0~2세 양육수당 서비스 수혜 경험 정도

구분	받아 봤음	받지 않음	계	단위: %(명) $\chi^2(df)$
전체	68.6	31.4	100.0( 51)	.46(2)
기초생활수급여부				
받음	71.4	28.6	100.0( 28)	
안 받음	65.2	34.8	100.0( 23)	

## 바. 기타 양육비 및 사교육비 지원

북한이탈주민 영유아 자녀들의 학습지원을 다양한 경로로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지원하기도 하며, 학교를 다니면 다문화가정 프로그램 지원을 받기도 한다(사례 11).

학원을 보내면 시에서 5만원을 지원해 줘요.……초등학교에서 다문화가정 프로그램이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방문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랬어요(사례 11).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에서는 탈북가정의 취학 전 자녀들에게 바우처 방식으로 학습지 지원을 하고 있다. 면접조사에서 이를 이용하는 사례를 만날 수 있었다(사례 15, 사례 30).

학습지원 뿐 아니라 육아지원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신생아에게는 분유를 지원하기도 하며(사례 9), 산모도우미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사례 30). 사례 30의 인용글에서 지원재단에서 제공하는 산모도우미 서비스의 일면을 알 수 있다. 같은 사람이 산모도우미로 오지 않아서 어떤 도우미는 잘 해 주는 데 다른 도우미는 형식적으로 일을 한다는 등 지원을 받은 탈북여성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말이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한번 지원해줬어요. 분유를 15통을 보내왔는데 한달 분량인거 같아요. 워낙 신청자가 많다보니까, 나온 연도 수에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우리 (하나원) 104기부터 딱 보조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안 되고 우리 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그게 있으니까, 그래서 우연찮게 그렇게 한번 받아봤어요(사례 9).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에서 작년부터 (산후도우미를) 나온 걸로 아는데요. 저희 아파트에도 새터민들 애기 낳는 사람 엄청 많거든요. 외롭고 또 새 가정 꾸미면서 애 낳는 사람 엄청 많은 데, 다 산모도우미가 아서 해 주던데요? 자기가 쪽 더 연장해서 하겠다면 하더라고요. 근데 그 분들이 와서 해 주는 게 마음에 없대요. 어떤 분들은 잘해 준대요. 와서, 근데 사람이 일주일마다 바뀐다는지 그러더라고요. 매번 같은 분이 와서 하는 게 아니고 한 주는 어떤 분이하고 또 한 주는 다른 분이 하고 이렇게 하니까, 처음 왔던 분은 정말 잘 해 줬다. 두 번째 온 분은 계속 앉아만 있고 놀기만하고……(사례 30).

산모도우미의 수요가 많다보니 신청을 해도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우도 있으며 제왕절개 비용도 지원재단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사례 10).

## V. 북한이탈주민 영유아 자녀양육 지원강화 방안모색

### 1. 연구요약

본 연구는 영유아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양육실태와 양육의 어려운 점 등을 면밀히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자녀양육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으로 두고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영유아 자녀가 있는 탈북가정의 주양육자 30명을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했으며, 영유아 자녀가 있거나 영유아 자녀를 남한에서 키워본 경험이 있는 탈북여성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헌연구로는 현행 정착지원제도를 법령과 정책으로 나누어서 고찰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 연혁과 주요 법조항 등을 분석하였다. 북한이탈주민 대상의 다양한 지원정책들 중에서 본 연구 주제와 관련된 정책들을 추려서 살펴보았다. 남한 입국 후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제공되는 정착금, 주거지원금, 생계 및 의료급여 등을 고찰하고 성공적인 남한사회의 적응과 자립·자활의 필수조건인 취업을 위한 취업장려금을 비롯한 학자금 지원 등을 고찰하였다. 현행 취업장려금 정책은 직업훈련은 500시간 이상 해야만 정착장려금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최대 2,44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하나원 퇴소 후, 배정받은 거주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인력지원서비스’와 ‘기구 및 단체지원 서비스’로 구분하여 전자는 정착도우미(현재 1,500여명 활동 중), 신변보호담당관(현재 약 730명 활동 중), 그리고 가장 최근에 도입한 전문상담사(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소속이며 약 100여명 활동 중)를 살펴보았다. 후자로는 하나센터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 중심으로 이들 기관에서 실시하는 주요 사업을 고찰하였다. 하나센터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전문상담사 제도는 2010년 이후에 실시되고 있는 최신 정책들이다.

북한이탈주민 대상 정책제도를 고찰한 결과, 점점 확대 강화되고 있는 정착 지원사업이 탈북 남성 중심의 지원서비스라는 한계를 지니며 따라서 탈북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성은 지원사업에서 소외될 수 있으며 여성을 위한 지원사

업이 있다 하더라도 부수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다. 주류인 탈북 여성들은 북한에서도 저소득, 저학력 출신이므로 남한에서 안정적이고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직장을 얻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들에게 법에서 정한 특별채용이라든가 정부가 제공하는 직업훈련을 받으면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은 한낱 헛된 꿈일 뿐이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그만큼 현재 제공하고 있는 각종 지원정책이나 서비스는 탈북여성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법에서 정한 보호기간 5년이 지났지만 많은 탈북여성들은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한 경우는 아주 드물다는 게 본 연구를 통해 재차 밝혀진 결과이다.

이론적 논의에서는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특성을 보다 잘 파악하기 위해서 빈곤탈출의 정책이 역설적으로 여성을 더욱 빈곤하게 만들며, 이민 여성은 남편과 평등한 관계를 맺을수록, 즉 가사분담이 공평하다고 느낄 때 결혼만족도가 높고, 이주 초기에 여성이 경제권을 먼저 취득하면서 권위가 줄어드는 것에 불안한 남자 배우자들이 더욱 독재적, 권위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부부 갈등이 자주 발생하고 해체에 이르기도 한다는 이론 등을 연구배경으로 고찰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는 본 연구를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매우 유용했다. 이와 같은 이론적 배경을 갖고 북한이탈주민 가정을 대하면서 그 특성이 더욱 잘 보였다.

북한이탈주민 가정은 '기아탈피 탈북형'과 '기획탈북형' 두 유형이 있다. 전자는 남한 입국의 애초 목적이 아닌 경우로서, 중국에 인신매매로 결혼을 하고 자녀를 출산하면서 남한 입국까지 상당 시간이 걸린다면, 후자는 탈북 목적이 남한 입국이므로 남한 입국까지의 소요시간이 상대적으로 짧다. 기아탈피 탈북형에서 주목할 점은 중국에서 출생한 자녀이다. 남한에 와서는 국적을 취득하지만 이들은 법에서 정한 북한이탈주민은 아니기 때문에 북한 출신 자녀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중국에서 형성된 가족은 해체되는 경우가 많으나 남한에 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배우자(남편)이 자상하고 가정적인 사람일 때이다. 연구배경에서 고찰한 이론적 논의가 유용한 대목이다. 북한의 가족이 그대로 온 경우가 많은 기획탈북형에서 배우자가 가부장적이고 억압적인 태도로 군림하려고 하면 남한에 와서 깨지는 가정도 종종 있다. 남편 또는 아버지가 억압적이고 권위적이면 부부관계가 좋지 않으며 자녀는 정서불안에 문제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북한이탈주민은 직면한 가장 어려운 문제로 항상 '경제적 어려움'을 꼽으면서 자녀양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

러나 심신이 건강하고 똑똑한 자녀로 키우고 싶다면 무엇보다도 배우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또는 본인의 자녀양육에 대한 역량을 키우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점을 부모교육 등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탈북여성들은 입국 후 취업을 위해 끊임없이 노동하지만, 빈곤탈출은 커녕 빈곤의 악순환이 될 뿐이다. 취업 또는 자격취득금을 받기 위해 몇 개의 자격증을 취득하지만 새터민, 육아, 장애, 질병 등의 이유로 취업을 하지 못하고 생계급여를 받으면서 일용직이나 부업으로 생계를 유지한다. 생계급여를 받지 않거나 취업모인 경우 자기존중감과 결혼만족도가 높고, 우울감과 양육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취업이 아니더라도 대학공부를 하는 탈북모들은 대개 우울증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자아를 갖게 되었음을 면담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생계급여가 유일한 가구소득인 탈북가정은 생계급여를 유지하기 위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상태에서 결혼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탈북가정의 잦은 별거와 이혼의 기저로 작용하고 있었다.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배우자와 헤어지고 자녀를 키우기 위해 취업을 해야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은 답답한 현실이 탈북가정, 탈북여성의 삶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탈북여성들은 남한생활에 만족한다고 했다. 감시 안 받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고, 일한 만큼 돈을 벌 수 있으며, 보다 나은 환경에서 자녀를 키울 수 있어서, 남한에 온 것을 후회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북한이탈주민 가정은 서울·수도권의 일정 지역(노원구, 강서구, 양천구, 인천시, 화성시 등)의 임대아파트에 밀집에서 한 지역에서 줄곧 사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거주 방식은 초기 정착에 수월할 수 있고, 신분보호 측면에서 안정적인 장점도 있으나 남한사람들과의 교류를 제약함으로써 남한사회로의 동화를 지체시키고 무엇보다도 북한 말씨와 억양이 고쳐지지 않아서 자신이 북한출신이란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 면접조사에 참여한 거의 대부분의 피면담자들은 탈북민이란 사실을 숨기고 싶어 하며, 특히 영유아 자녀에게는 탈북가정이란 점을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본인의 말씨와 억양, 교류하는 사람들이 북한사람들로 한정되면 숨길 수가 없게 된다. 면접대상자 중에서 북한 말씨와 억양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피면담자들의 공통점은 거주 지역을 몇 번 옮겼거나, 남한사람들과 교류를 많이 한다는 점이다. 탈북모들은 자신들의 자녀는 북한출신 가정의 아이라는 편견과 선입관 없이 남한사람으로 자연스럽게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었다.

부부싸움이 자주 일어나는 탈북가정이나 주양육자(탈북모)가 우울증 등의 심리적으로 문제를 갖고 있으면 자녀들도 폭력성을 보이거나 정서불안, 어린이집 등의 단체생활 부적응 등의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애착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일찍이 어린이집에 보내고, 하루 12시간 이상 맡긴 경우에도 비슷한 문제를 보였다. 자녀양육의 어려움으로는 대리양육자의 부재, 학습지도의 어려움(예: 같은 언어라 하더라도 외래어가 많고 한글습득 방식이 다른 점 등), 북한과 다른 양육문화(예: 자녀중심의 양육문화, 사교육이 심하고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한 점 등) 그리고 앞서도 언급했듯이 자녀의 정체성 문제 등이 있다. 탈북모들은 같은 형제이지만 언니 오빠의 성(姓)과 다르거나 부모의 말씨와 억양이 다르고, 아버지 또는 친인척이 없는 상황에서 자라면서 자녀가 정체성의 혼란을 겪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다.

북한이탈주민 가정만을 위한 양육관련 지원서비스와 일반 국민에게 제공되는 양육관련 지원서비스를 살펴보았다. 전자는 대체로 인지하고 수혜 경험도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2010년 이후에 실시하고 있는 하나센터,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의 서비스 및 전문상담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후자는 출산경험이 있어서 수혜를 직접 받아 본 고운맘 카드와 출산장려금에 대한 잘 알고 있었으나 저소득층 아동의 포괄적 지원사업인 드림이나 위스타트 사업이나 아이돌보미 서비스에 대한 인지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2. 정책방향

### 가.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은 정책 수혜자 다수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하겠다.

II장에서 논의했듯이 정부가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취업지원정책을 강화해 나가고는 있지만, 탈북모들이 그 혜택을 누리기란 현실적 괴리가 크다. 최근 법률 개정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이나 세제 감면을 해 주거나(제 17조의 4 세제혜택), 공무원 특별임용 요건을 완화하여 북한이탈주민을 공무원으로의 임용을 확대하고(제18조 특별임용), 공공기관 평가시 북한이탈주민 고용률을 반영하는 조항(제18조의 2 공공평가 반영)을 신설하

는 등 취업지원정책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취업서비스 정책의 수혜자는 남성일 가능성이 높다. 2010년도에 개정된 제18조 특별임용 조항을 보면, “북한에서의 자격이나 경력이 있는 사람 등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북한이탈주민의 대부분은 북한에서도 무직이거나 가난한 노동자들이었다. 다시 말해서 특별임용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사람은 탈북민 중에서 아주 극소수일 것이며, 설사 그 대상으로 선정된다 하더라도 여성보다는 남성일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하겠다.

#### 나.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대상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탈북여성의 삶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조망한 후 정책을 수립해야겠다.

탈북모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은 우리사회의 일반 저소득층 가정이 겪는 어려움과 동일하다. 사교육의 극성으로 양육의 어려움도 유사하다. 겉으로 드러난 어려움이 동일하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의 특화된 정책이 필요한지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겉으로 보이는 현상, 그 이면에 숨어 있는 탈북모들이 살아온 삶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탈북모들의 생애사를 제대로 이해했을 때, 현재의 문제점이 일반 저소득층의 문제점과 다른 지점을 발견할 수 있다.

탈북여성의 파란만장한 삶을 심층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채 수립한 정책은 ‘사상누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눈에 보이는 현재의 삶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시간을 거슬러서 이들 여성의 과거에 어떤 행적을 밟아 왔는지 그 과정에서 어떠한 상처와 치유과정을 거쳐는 지 등을 총체적으로 조망하려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겠다. 이러한 노력은 특히, 정책수립자와 일선에서 탈북모를 담당하는 현장전문가들에게 요구된다.

#### 다.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 자녀의 양육환경 및 정체성 형성 등을 고려해서 현행 거주정책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탈북민들은 우리사회의 이방인이기도 하지만 우리와 같은 민족이기도 하다. 즉, 외국인과는 분명 다르다는 사실이다. 외국인들은 새로운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집성촌을 이루고 살지만, 탈북민들에게 이러한 거주방식을 정책적으로 운영

하는 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밀집 거주방식의 장·단점을 면밀히 파악하여 탈북민들에게 궁극적으로 나은 거주방식 모델을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왜냐하면 남한에 입국한 탈북여성들이 남한에서 자녀를 출산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탈북가정에서 태어난 남한출신 자녀들은 북한출신 자녀하고는 다르다. 우선, 이 아이들은 법적으로 규정한 북한이탈주민이 아니다. 탈북가정 속에서 건강한 자아정체성을 지닌 남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고민해야 할 단계이다.

## 라.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를 북한이탈주민지원 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주요 정책대상자는 성인과 청소년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정착지원법에서 영유아에 대한 조항은 찾아보기 어렵다. 북한태생 영유아에게 취업장려금과 학자금 지원이 보장되는 보호기간 5년은 무의미하며 남한태생 영유아는 법적으로 규정한 북한이탈주민이 아니므로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정책 대상도 아니다. 또한, 북한태생 또는 중국(제3국)태생 영유아들도 입국 후 초기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데 이에 대한 지원도 매우 미흡한 상태이다.

## 3. 정책방안

### 가. 탈북가정의 영유아 자녀양육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 1) 탈북가정 법적 개념 정의 필요

현행 정착지원법은 개인 단위에 초점을 둔 법령으로서 북한이탈주민 가정을 정의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가정을 위한 정책 수립 시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 가족단위 입국 증가와 정착 후에 가정을 이루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북한이탈주민 가정을 위한 지원서비스들이 생겨나고 있는 데—예컨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지원하는 출산지원금, 영유아보육지원 등—대상자가 명확하지 않아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앞서 고찰하였다.

탈북, 제3국 체류, 입국, 그리고 남한에서 정착하면서 탈북가정은 해체와 재구성이란 복잡다단한 과정을 겪으면서 다문화가정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 같은 형제지만 국적과 성(姓)이 다르고, 생부와 현재 아버지가 다르고,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도 다르다. 탈북가정에 대해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이전에, 법적 정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 2) 하나원에서부터, 일상 속에서 부모교육 확대 강화

하나원에서도부터 부모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탈북남성에게도 동일한 부모교육이 제공되어야 하겠다. 북한에서처럼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태도로는 남한에서 원만한 가정을 꾸리기란 어렵다는 점을 교육을 통해 깨우쳐 줄 필요가 있다. 남한사회에서 잘 적응하는 탈북가정의 성공사례와 그렇지 못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그 주요 요인이 아버지, 남편에게 있음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하나원 퇴소 후에서 이러한 부모교육은 지속되어야 하겠다.

부모교육의 참여도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취업교육과 연계하여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부모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는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격월로 배달되는 「동포사랑」 잡지에 육아컬럼의 지면을 확대하여 자녀 연령별, 발달단계별 자녀양육 방식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이 밀집해 있는 아파트 게시판이나 엘리베이터 내에 육아정보 포스터를 부착하는 방법도 제안해 볼 수 있겠다.

## 3) 부모교육 내용

한국의 문화나 역사를 잘 몰라서 자녀가 남한사회에 적응하는 데 제대로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부모교육의 내용은 부부관계, 부모-자녀 관계에 국한하지 말고, 부모교육을 통해 남한의 양육문화, 사회, 경제, 역사 등도 배울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 4)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용 양육지침서 또는 매뉴얼 개발 및 보급

탈북모들은 외래어가 많이 섞여 있는 한글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부모교육이 제대로 잘 전달되기 위해서는 탈북모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구성된 영유아용 자녀양육지침서 또는 양육매뉴얼 책자를 개발하여 하나원이나 하나센터, 사회복지관 등에 보급할 것을 제안한다.

## 5) 탈북모에게 실질적인 취업알선

취업을 한 탈북모와 생계급여를 받지 않은 탈북모는 자아존중감과 결혼만족도가 높고, 양육스트레스와 우울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가정의 경제력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할 필요성을 재차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주양육자가 심리적·정서적,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양육을 할 때, 자녀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안정된 자녀양육을 위해서라도 탈북모가 직업을 갖는 것은 필요하다.

취업알선은 북한이탈주민정책의 주요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으나, 탈북자의 주류인 저소득층 탈북모에게는 걸돌고 있다. 이들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직업을 발굴하여 연계해 주는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영유아 자녀가 있는 탈북모들은 자녀의 기관이용시간 동안 일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나 부업을 지인이나 지역정보신문 등 사적인 경로를 통해 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을 하나센터나 북한이탈주민재단과 같은 공적 기관에서 제공해 줄 것을 제안한다. 대구하나센터에서 제공하는 “여성부업일자리사업”이 좋은 사례이다.

그러나 부업이나 아르바이트는 안정적인 수입원이 될 수 없으므로 궁극적으로 근로의욕과 능력이 있는 탈북가정이 경제적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겠다. 특례사항으로 탈북민의 경우 근로무능력 가정은 5년, 근로능력 가정은 3년의 생계비 지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근로능력 가정이 3년을 지나 취업을 했다고 당장 생계급여를 중단하는 정책은 이들의 근로의욕을 꺾는 부정적인 기제가 될 수 있다. 취업을 했을 때, 생계급여 중단이라는 부정적인 조치를 취하기 보다는 인센티브—금전적 지원이 아닌—제공 등의 긍정적인 조치를 강구할 것을 제안한다.

## 6) 보호기간 5년의 융통적 운영 필요

영유아 자녀가 있는 탈북가정(탈북모)은 육아로 인해, 법적 보호기간 5년 내에 지원받을 수 있는 취업장려금이나 학자금 혜택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영유아 자녀를 둔 탈북모는 보호기간 5년을 융통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둘 것을 제안한다.

II장에서 지적했듯이 현행 지원정책은 초기 정착에 집중해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시간의 경과 속에서 그와 관련된 적응 장애요인들이 발견되기 때

문에” 초기 단계를 넘어선 정착 단계별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족지원도 생애주기별 맞춤형정책을 실시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하나센터 사업 등 2010년 이후에 새롭게 도입, 운영하는 지원서비스가 많은 데 보호기간 5년이 지난 북한이탈주민은 원칙적으로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보호기간 5년이 지나도 남한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어렵게 생활하는 탈북가정이 많다는 사실에서 이 역시, 보호기간 5년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개인의 능력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만약, 보호기간 5년 안에 적응을 못한 사람은 유예기간을 두어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나. 중도입국한 탈북가정 영유아 자녀의 적응지원 정책방안

북한에서 태어났거나 중국(제3국)에서 태어난 영유아는 입국 후 초기 적응시, 영양부족으로 인한 신체발달 지연과 의사소통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하나센터의 초기집중교육 대상자에서 유아는 제외되어 있는데 이처럼 중도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유아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

#### 다. 원장·교사의 탈북가정 영유아 자녀 이해증진을 위한 정책방안

##### 1) 원장·교사 대상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보 및 교육 제공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다. 이처럼 육아지원기관은 탈북가정 육아지원에 절대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원장과 교사는 이들을 이해하려는 자세와 노력이 중요하다.

원장과 교사도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특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정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육아지원기관과 탈북가정 간 상호이해가 전제될 때, 마찰과 갈등은 최소화하고 양질의 양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 2) ‘지역협의회’에 육아지원기관 원장·교사 참여의 활성화

본 연구에 참여한 원장님들은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를 모른다고 응답했다. 북한이탈주민이 100명 이상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는 지역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협의회에 탈북가정 영유아가 다니는 또는 탈북가정이 밀

집된 지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장이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참여를 독려해야겠다. 그러나 지역협의회가 일년의 1~2회 형식적인 모임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데,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협의회 산하의 실무분과(또는 실무협의회)를 설치하여 실제 탈북민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을 참여토록 하고, 원장선생님도 실무분과의 위원으로 활동하도록 지원한다.

## 라. 지역사회 차원에서 탈북가정 영유아 자녀양육 지원방안

### 1)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과 탈북가정 연계 구축

새로운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지원서비스를 개발하기보다는 기존의 저소득층 육아지원사업과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법이 재정과 인력 낭비를 줄일 수 있으며 저소득층 지원사업에서 운영했던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어서 실효성도 크다고 하겠다. 드림스타트는 북한이탈주민 거주 밀집지역에 대부분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센터 또는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하여 지원대상을 확인하고, 탈북가정에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육아지원사업도 발굴하여 연계를 모색해 볼 수 있다. 이를 테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계획 중인 사례를 예로 들 수 있겠다. 취업 모 자녀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의 아이돌보미 바우처 사업은 예산부족과 본인비용부담으로 탈북가정이 쉽게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간파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나 관내 하나센터에서 본 사업이 필요한 사례를 발굴하여 이들 가정과 사업을 연계하고 비용지원을 하고자 추진 중에 있다.

### 2)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

본 연구에서 드림스타트 사업이나 위스타트 사업에 대해 87.0%가 모른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아동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책자로 제작하여 하나원이나 하나센터 등에서 보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 마. 현행 거주지 배정 제도 검토

북한이탈주민은 하나원 퇴소 후 거주지를 배정받은 데 특정지역의 임대아파트에 집중되어 있다. 거주지 배정 후에도 이사하지 않고 사는 경우가 많다. 지

금의 이러한 거주지 배정방식은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 동화를 지체시키는  
기제로 작용한다. 이러한 거주지 환경은 곧 자녀의 양육환경이기도 하다.

현재 거주지 정책의 장단점을 면밀히 파악하여 개선된 거주지 정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한 지역에만 거주했던 탈북모들보다는 지역 이동 경험이 있는  
탈북모의 억양과 말씨가 훨씬 남한 사회에 동화되어 있어서 탈북자로 '구분'되  
지 않기 때문이다. 많은 탈북모들은 자신이 일반 사람들과 구분되는 것을 원치  
않았는데, 자녀의 경우는 그 마음이 더 크다. 대부분의 탈북모들이 남한에서 태  
어난 자녀는 남한사람이므로 남한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자신이 북한출신 가정  
의 자녀라는 사실을 모르고 성장하기를 바랐다.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양육환경이 중요하다.

이러한 점들을 하나원의 거주지 배정에 앞서 정보로서 알려줄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지방거주 분산을 권장하기 위해서 지방에 거주지를 신청한 사람에게  
는 지방거주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데 마찬가지로 임대아파트 외의 빌라나 연  
립을 신청한 사람에게도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 참 고 문 헌

김미령(2008). 연령대에 따른 결혼만족도 차이 및 영향요인 비교.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주최 제1회 여성가족페널 학술대회 자료집. 223-224

김병찬·유시은(2010). 북한이탈주민 패널 연구: 경제·정신보건·신체건강

김선화(2008).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통합: 정착지원센터 모형을 중심으로. 이  
주민 정책과 서비스 도서출판: 나눔의 집

김선화(2009). 민간에서 본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스템. 북한이탈주민 2만명  
시대 특별기획 심포지움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북한이탈주민지원센터

김선화(2010).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정착지원 활성화 방안 연구. 북한  
이탈주민의 희망찬 미래를 위한 새로운 모색 정책세미나. 북한이탈주  
민재단·북한이탈주민연구학회·한국사회학회

- 김선화·윤여상·허영철(2010).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정착지원 활성화 방안.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김옥경(1996). 남북한 유아교육과정 발전사에 관한 비교 고찰. 경원전문대학교 논문집 20, 301-329.
- 김원홍(2009) 북한 여성실태 및 향후 대북정책 추진방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화순·최대석(2011). 탈북이주민 정착정책의 인식과 과제: 정착지원을 넘어 사회통합으로. 통일정책연구, 20(2), 37-73.
- 김홍광(2009). 탈북자들의 자아정체성의 굴곡과 사회정착과의 관계.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정책의 발전 방향. 2009 하나원 개원 1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자료집. 27-48.
- 노경란·김선화·김임태·안혜영·전연숙(2008). 북한이탈주민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거주지 적응교육프로그램 중심으로. 통일부 연구용역보고서.
- 박재환(1999). 북한 유치원의 교육내용 분석.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6(2), 73-127
- 박정란(2009). 여성 새터민의 자녀 돌봄과 일: 실태와 지원방안. 한민족문화연구 28집. 97-135.
- 박주희(2001). 아동의 또래 유능성에 관련된 어머니의 양육목표, 양육행동 및 또래관계 관리전략.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박현정·김윤수·박호란(2011). 근거이론을 이용한 새터민 어머니의 양육경험의 변화과정. 아동간호학회지, 17(1), 48-57.
- 백혜정·길은배·윤인진·이영란(2006). 북한이탈 청소년 종합대책 연구 I. 한국청소년연구원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2011). 2011 북한이탈주민 생활실태조사 기초분석 보고서
- 북한인권정보센터(2005). 새터민정착실태연구. 서울: 북한인권정보센터
- 신원식·배지철(2010).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적응에 대한 인식 유형. 사회과학연구17(3). 39-60.
- 여성부(2009). 탈북여성 실태조사 및 정착지원 방안 연구.
- 윤미량(2009). 하나원 10년 회고와 향후 과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의 발전 방향 자료집.

- 윤인진 외(2006). 새터민 여성·청소년 실태조사 보고서.
- 윤인진·채정민(2010).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상호인식: 정체성과 사회문화적 적응을 중심으로
- 이금순·강신창·김병로·김수암·안혜영·오승렬·윤여상·이우영·임순희·최의철(2003).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통일연구원.
- 이금순·김규륜·김영운·안혜영·윤여상(2005).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프로그램 연구. 통일연구원.
- 이미화·오은진·홍승아·신효숙·이영신(2011). 탈북여성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 개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이부미(2005). 남한사회에서의 탈북부모들의 역할적응 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 아동권리연구, 9(4), 691-726.
- 이석·이금순·박종철 외(2010). 2010~2014 국가재정운용계획: 외교·통일분야 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 이순영·김창대·진미정(2009). 탈북민의 가족 해체와 재구성.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이영선·구혜완·한인영(2011). 학술논문분석을 통해 본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특수성에 관한 연구. 통일문제연구, 56, 147-193.
- 이인숙·박호란·박현정·박영혜(2010). 북한 이탈 어머니들의 자녀양육행동과 양육효능감, 적응스트레스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아동간호학회지, 16(4), 360-368.
- 이우영(2003).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통일연구원.
- 이우영·이금순·서재진·전현준·최춘흠(2000). 북한이탈주민 문제의 종합적 정책 방안 연구. 통일연구원.
- 이윤진·서문희·김선화·박영자(2011). 통일에 대비한 북한의 영유아 양육에 관한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장명림·이윤진·이정림·이미화·전혜정·민현숙·박수연·이세원·김주연·정주희·송윤정(2009).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개발 및 시범적용. 육아정책연구소
- 장명림·이윤진·이정림·민현숙·이세원·송윤정·소수정(2010).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 효과 분석 및 모니터링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장혜경·김영란(2000). 북한이탈주민가족의 가족안정성 사회적응과 여성의 역할. 한국여성개발원
- 조영아·전우택(2005). 탈북 여성들의 남한 사회 적응 문제: 결혼 경험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0(1), 17-35.
- 최의철·김병로·이금순(1997). 북한인권 개선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 대책방향. 통일연구원.
- 통일부(2009). 북한이탈주민 패널 연구: 2007년 남한 입국자들의 경제적 적응을 중심으로.
- 통일부(201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 실무편람.
- 한만길(2009). 북한이탈학생의 증가에 따른 교육지원 대책. 한국교육개발원.
- 한만길·윤종혁·이정규(2001). 북한교육의 현실과 변화: 북한 이탈 주민의 증언을 통한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 한만길·현주·김창환·오기성(1999). 북한 이탈 주민의 남한 교육 적응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2010). 2010 북한이탈주민 기초설문조사 분석보고서.
- 행정안전부(2009).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연계협력체계 구축방안.
- 행정안전부(2010). 북한이탈주민의 효율적 정착지원 방안.
- 허수경(2010). 북한출신 부모의 자녀교육 경험 연구: 남북한 교육차이를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Horenczyk, G.(1996). Migrating Selves in Conflict. In G. Breakwell & E. Lyons(Eds.), *Changing European identities*. Oxford, UK: Butterworth Heinmann.
- Roccas, S., G. Horenczyk, G., & S. H. Schwartz(2000). "Acculturation Discrepancies and Well-being: The Moderating Role of Conformity"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0.
- Smith, P. B. & M. H. Bond.(1998). *Social Psychology across Cultures*. Hemel Hempstead, UK: Prentice-Hall.
- Verkuyten, M. & J. Thijs.(1999). "Nederlands en Turkse jongeren over multiculturalisme: Cultuurbehoud, aanpassing, identificatie en

groepsdiscriminatie"[Dutch and Turkish youth about multiculturalism: Cultural maintenance, adaptation, identification and group discrimination]. *Sociologische Gids: Tijdschrift voor Sociologie en Sociaal Onderzoek* 46.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사이트: <http://www.dongposarang.com>

사회전자바우처 사이트: [www.socialservice.or.kr](http://www.socialservice.or.kr), 검색일: 2012년 10월

통계청 북한통계 사이트: <http://kosis.kr/bukhan>

통일부 통계자료 사이트: <http://www.unikorea.go.kr>

## Abstract

# **An Investigation of Potential Policy Measures to Support Children of North Korean Migrants**

Yun-Jin Lee Jeongrim Lee Kyung-mee Kim

This study suggests a plan for the provision of Early Childhood Support for North Korean Migrants' Children based on data collected via interviews and surveys which reveals the problems faced by North Korean migrant famil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North Korean migrant families have a few common characteristics such as 1) their experience of financial hardship, 2) feeling restrained to become legally married due to living wages and 3) their financial situation determining their emotional and psychological well-being. For example, mothers who are financially independent are more satisfied with their marriage, have a higher sense of self-worth, and are less depressed.

North Korean migrant families can be classified as either 'Famine Evasion Type' or 'Plan Type'. 'The Famine Evasion Types' have tended to linger for a long period of time in a third country (usually China) beforehand, because they had no plans to migrate to South Korea in the first place. The 'Plan Type', in comparison, stay in the third country for a relatively short period because their main goal is to come to South Korea. 70.4% of North Korean migrants' Children were born in South Korea. Children who were born in North Korea or in China often suffer due to their poor linguistic and physical development. North Korean migrant families are living together in residential areas where disabled or old people live, which is why children from such families have few chances to socialize with South Koreans, fewer educational opportunities and are more likely to develop aggressive tendencies, according to day care center presidents interviewed in this study, who often stated that children in North Korean migrants families tend to be

aggressive and tend not to form personal relationships with other children in their age group. North Korean migrant families who are recent arrivals are aware of support services, and are satisfied with them, whereas migrants who arrived in South Korea five years ago often do not know about the new support services, especially low-income child care support initiatives, such as Dream Start, and WeStart, etc.

The following policies are suggested: 1) A legal definition of the term 'North Korean Migrant' is required, 2) ① Parents' education as regards daily routine and HaNaWon should be provided, ② Assistance should be provided so that practical employment can be obtained, ③ A support service should be provided for people who have completed the five-year period of protection, 3) the participation of the president and teachers in Regional Councils for North Korean migrants should be initiated, 4) contact must be established between low-income Child Support Initiatives and North Korean Migrant families, 5) Korean education programs for children who were born in North Korea or China should be provided, 6) the issue of the locations in which North Korean migrant families are concentrated should be reviewed.



## 부 록

---

부록 1. 면담조사 질문지

부록 2. 설문지



부록 1. 면접조사 질문지

**북한이탈주민 영유아 자녀양육 지원  
강화 방안 연구  
-심층면접조사 질문지**

면담일자:

면담자:

연구참여자(피면담자):

I. 귀하의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

1. 출생지	
2. 출생년도(나이)	
3. 탈북년도	
4. 입국년도(하나원 기수)	
5. 탈북이유	
6. 현재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	
7. 현재 거주주택형태(영구임대 or 국민임대)	
8. 현재 거주주택 명이자	

9. 현재 가족 구성원 *상세하게	
10. 국민기초생활수급여부 및 수급액	
11. 북한에서의 학력 및 직업	
12. 남한에서의 직업	
13. 남한에서 재학 여부*재학 시 등록금 수혜 정도	
14. 탈북한 기타 가족 여부 및 거주지역 등	

## II. 지금까지 출산한 자녀에 대한 질문

	자녀1	자녀2	자녀3	자녀4
1. 이름 *자녀성(姓)까지				
2. 성별				
3. 건강상태				
4. 질병및장애 유무				
5. 출생년도(나이)				
6. 출생국가				
7. 현재 국적				
8. 현재 동거여부				
9. 현재 학력				
10. 해당 자녀 생부국적				
11. 해당 자녀 생부 동거여부				

### Ⅲ. 자녀의 생부에 관한 질문

1. 북한태생 자녀가 있는 경우
  - 북한에서 몇 년도에 결혼을 했습니까?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셨습니까? 등
2. 중국태생 자녀가 있는 경우
  - 중국에서 몇 년도에 결혼을 했습니까?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셨습니까? 등
3. 남한태생 자녀가 있는 경우
  - 남한에서 몇 년도에 결혼을 했습니까?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셨습니까? 현재 같이 살고 계십니까? 등
4. 지금 남편의 인적사항(국적, 나이, 학력, 직업, 성격 등)
  - 지금 남편과의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어떠하십니까? 집안일을 잘 도와주십니까? 자녀하고 잘 지냅니까?
5. 현재 생활에 만족하십니까?

### Ⅳ. 자녀양육 현황

1. 남한에서 자녀양육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요?
  - 남한에서 지내는 데 어려움을 겪은 자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2. 남한에서 자녀양육을 하면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나요? 있으시다면 누구 또는 어떠한 기관·단체로부터 어떠한 서비스를 받으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자녀양육 관련해서 지원받고 싶은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요?(자녀양육기술, 자녀양육에 관한 정보, 지원 인력, 부부관계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등)

3. 현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고 계십니까? 기관 미이용 시 양육수당을 받고 계십니까? 얼마를 받고 계십니까?
  - 언제부터 보내기 시작하셨나요?
  - 현재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이용이유, 선택기준, 평균 이용시간, 비용, 만족도(프로그램, 원장/교사, 시설/설비, 이용시간 등)
  - 기관을 옮긴 적이 있으시다면 그 이유는?
  -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외의 이용하고 있는 학원이나 학습지(사교육) 종류와 비용
4.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외의 자녀양육(교육)의 도움을 받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있으십니까?
5. 현재 자녀에게 지출되는 비용은 월 평균 얼마정도입니까?
6. 자녀의 발달적인 부분에서 가장 지원 받고 싶은 부분은 무엇인지요?
  - 인지, 사회정서, 신체, 인성, 생활지도, 언어발달
7. 북한, 제3국, 한국에서의 양육관이나 양육가치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다르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만약, 다르다고 생각하신다면 가장 큰 차이를 말씀해 주십시오.
8. 남한어머니들과 교류를 하십니까? 친한 남한 어머니가 있으신가요?

#### V. 자녀양육 정책관련 질문

1. 지금까지 남한에서 도움을 받은 지원인력 및 서비스를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예: 정착도우미, 신병보호관, 전문상담사, 하나센터의 사회복지사, 하나센터 또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 등)
  - 이 중 가장 만족스러운 지원인력과 서비스 종류, 이유 등을 말씀해 주십시오.

2. 고운맘카드나 출산장려금을 알고 계십니까? 실제로 받아 본 적이 있으십니까?
3. 북한의 자녀양육지원정책과 비교해 볼 때, 장단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4. 자녀가 어떠한 사람을 성장하길 희망하십니까?
5. 우리정부에 바라는 자녀양육지원정책이 있다면 무엇이든 말씀해 주십시오(예: 기관을 통한 소그룹 모임 가정방문을 통한 개별 지도 등)

## 부록 2. 설문조사 설문지

## 북한이탈주민 영유아 자녀 양육지원 강화 방안

ID □□□□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정책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국가 정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소는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육아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북한이탈주민 영유아 자녀 양육지원 강화 방안」 연구를 진행하면서 그 일환으로 영유아 자녀를 둔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실태를 파악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연구의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2년 8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이영

연락처 이윤진 부연구위원 02-398-7717, leeyunjin@kicce.re.kr

이정림 부연구위원 02-398-7713, leettu@kicce.re.kr

김경미 연구원 02-398-7762, km9978@kicce.re.kr

※ 귀하의 간략한 인적사항을 기록해 주십시오.

성 명	
연 락 처	
주 소	
지 역	<input type="checkbox"/> 서울 <input type="checkbox"/> 경기도
자녀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부 <input type="checkbox"/> 모 <input type="checkbox"/> 조부 <input type="checkbox"/> 조모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귀하(영유자 자녀를 둔 어머니)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1. 다음의 각 문장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 해당하는 보기에 √표 해주십시오.

나는....	전혀 그렇 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 로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2)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3) 대체로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4) 남들이 하는 만큼은 일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5)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6)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①	②	③	④
7) 대체로 나 자신에게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8)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9) 가끔씩 내가 쓸모없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10) 때때로 내가 무익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 다음의 각 문장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 해당하는 보기에 √표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지난 한 달 동안 불안하다고 느꼈다	①	②	③	④	⑤
2)지난 한 달 동안 무기력하다고 느꼈다	①	②	③	④	⑤
3)지난 한 달 동안 안절부절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4)지난 한 달 동안 매사에 힘이 들었다	①	②	③	④	⑤
5)지난 한 달 동안 너무 슬퍼서 뭘 해도 기운이 나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⑤
6)지난 한 달 동안 자기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라고 느꼈다	①	②	③	④	⑤

3. 귀하의 현재 배우자에 대하여 다음의 문항별로 얼마나 만족하시는지 해당하는 번호에 √표 해 주십시오.

문항	매우 불만족	비교적 불만족	보통	비교적 만족	매우 만족	해당 없음
1)귀하는 배우자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
2)귀하는 결혼생활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
3)귀하는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
4)귀하는 아이들의 주양육자로서 배우자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

4. 다음은 현재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어려움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의 각 문장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 해당하는 보기에 √표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아이 돌보는 일 중에 나를 성가시게 하는 일들이 몇 가지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모임에 가면서도 아이 때문에 그리 즐겁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3) 아이에게 더 친근하고 따뜻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 어렵게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아이가 태어난 이후로 수면시간이 불규칙하다	①	②	③	④	⑤
5) 아이를 돌보기 위해 내 생활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6) 아이가 생긴 후 예전만큼 나의 생활이 즐겁지가 않다	①	②	③	④	⑤
7) 아이가 집을 너무 어지럽힌다	①	②	③	④	⑤
8) 아이를 돌보느라 집안에서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9) 아이를 돌보기 위해 내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10) 아이를 챙기는 일 때문에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11) 아이 때문에 항상 마음의 여유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12) 외출했을 때 아이 다루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13) 아이 돌보는 것이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하다	①	②	③	④	⑤
14) 아이를 돌보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내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15) 요즘 육아정보가 너무 다양하여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혼란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16) 내가 부모역할을 잘못하여 내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이다	①	②	③	④	⑤
17)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18)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9)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내 탓인 것 같아 괴롭다	①	②	③	④	⑤
20) 피곤할 때 아이가 놀아달라고 보채면 귀찮은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21) 아이가 태어난 후 집안일이 짜증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22) 아이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23) 양육비용, 교육비용이 부담된다	①	②	③	④	⑤
24) 아이 수가 많아서 양육하기가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5. 다음의 문항을 읽고 귀하의 평소 양육행동과 가장 비슷한 번호에 √표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반반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아이가 똑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더라도 계속해서 대답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아이가 정해진 곳에서 식사하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아이가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일단 스스로 해보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집에서 허용하지 않는 일이라도 밖에서는 아이와 실랑이 하고 싶지 않아서 원하는 대로 들어준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아이의 기분이 나쁠 때 이유를 물어 보고 기분을 풀어 주려고 애쓴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아이가 하는 일이 다소 서툴더라도 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준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아이가 버릇없이 굴어도 크게 개의치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아이가 놀아달라고 할 때 다른 일을 핑계로 혼자 놀게 할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아이에게 지켜야 할 규칙을 정해 두고 이를 반드시 지키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야단치다가도 아이가 울면 얼른 그만두고 달래주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아이가 조금만 잘못해도 바로 화를 내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아이가 고집을 부릴 때는 그 고집을 꺾고 결국 내 말을 듣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아이의 나쁜 점을 지적할 때보다 좋은 점을 칭찬할 때가 더 많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간혹 아이를 때리기도 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아이가 가게에서 물건을 사달라고 조르면 결국에는 사 준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아이가 놀고 난 후에 장난감을 스스로 정리하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아이에게 한번 안 된다고 말한 일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아이가 실수를 해도 다음에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반반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9) 나는 아이가 정해진 취침시간을 반드시 지키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아이가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아이 스스로 좋은 방법을 생각해 내도록 격려 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아이에게 성을 내거나 큰 소리를 칠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아이가 정해진 시간에만 텔레비전을 보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23)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 말로 위협하는 편이다 (예: 너 자꾸 이러면 하고 싶은 것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 귀하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출생년도(만 세)	
2. 탈북년도(최초)	_____ 년
3. 입국년도	_____ 년
4. 국민기초생활수급 여부 (현재 기준)	<input type="checkbox"/> ① 받고 있다 ⇨ 4-1. 월 수금액 _____만원 <input type="checkbox"/> ② 받고 있지 않다.
5. 현재 직업	<input type="checkbox"/> ① 단순노무 <input type="checkbox"/> ② 기술직 <input type="checkbox"/> ③ 판매서비스 <input type="checkbox"/> ④ 사무직 <input type="checkbox"/> ⑤ 관리자 <input type="checkbox"/> ⑥ 자영업 <input type="checkbox"/> ⑦ 학생(직업학교 제외) <input type="checkbox"/> ⑧ 무직(실직) <input type="checkbox"/> ⑨ 주부
6. 월 가구소득(근로소득)	<input type="checkbox"/> ① 50만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② 51~100만원 <input type="checkbox"/> ③ 101~150만원 <input type="checkbox"/> ④ 151~200만원 <input type="checkbox"/> ⑤ 201~250만원 <input type="checkbox"/> ⑥ 250만원 이상 <input type="checkbox"/> ⑦ 기타

7. 배우자 국적 (*영유아 자녀의 아버지)	<input type="checkbox"/> ① 북한 <input type="checkbox"/> ② 남한 <input type="checkbox"/> ③ 조선족 <input type="checkbox"/> ④ 한족 <input type="checkbox"/> ⑥ 기타(        )		
8. 현재 결혼 상태	<input type="checkbox"/> ① 배우자와 같이 살고 있음. <input type="checkbox"/> ② 배우자와 별거·이혼함		
9. 현재 동거가족 (* 함께 살고 있는 가족에 모두 √표시하고 가족 수를 적어주십시오)	<table border="1"> <tr> <td> <input type="checkbox"/> ① 취학전 영유아 자녀 _____명  <input type="checkbox"/> ② 초등학교 자녀 _____명  <input type="checkbox"/> ③ 중학생 이상 자녀 _____명  <input type="checkbox"/> ④ 친인척 _____명  <input type="checkbox"/> ⑤ 기타 (        ) _____명  <input type="checkbox"/> ⑥ 배우자           </td> <td>           본인 포함 총 가족수 _____명         </td> </tr> </table>	<input type="checkbox"/> ① 취학전 영유아 자녀 _____명 <input type="checkbox"/> ② 초등학교 자녀 _____명 <input type="checkbox"/> ③ 중학생 이상 자녀 _____명 <input type="checkbox"/> ④ 친인척 _____명 <input type="checkbox"/> ⑤ 기타 (        ) _____명 <input type="checkbox"/> ⑥ 배우자	본인 포함 총 가족수 _____명
<input type="checkbox"/> ① 취학전 영유아 자녀 _____명 <input type="checkbox"/> ② 초등학교 자녀 _____명 <input type="checkbox"/> ③ 중학생 이상 자녀 _____명 <input type="checkbox"/> ④ 친인척 _____명 <input type="checkbox"/> ⑤ 기타 (        ) _____명 <input type="checkbox"/> ⑥ 배우자	본인 포함 총 가족수 _____명		

※ 귀하가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자녀에 관한 질문입니다.

영유아 자녀뿐 아니라 모든 자녀가 포함되며 출산한 순서대로 작성해 주십시오.

		자 녀 1	자 녀 2	자 녀 3	자 녀 4
1. 출생년도(만____세)					
2. 출생지	<input type="checkbox"/> ① 북한 ⇨2-1 <input type="checkbox"/> ② 중국 ⇨2-1 <input type="checkbox"/> ③ 남한 <input type="checkbox"/> ④ 기타				
2-1. 영유아기를 남한 거주 여부	<input type="checkbox"/> ① 남한에서 지냄 <input type="checkbox"/> ② 남한에서 지내지 않음				
3. 건강상태	<input type="checkbox"/> ① 건강함 <input type="checkbox"/> ② 허약함 <input type="checkbox"/> ③ 장애(질병)가 있음				

		자 녀 1	자 녀 2	자 녀 3	자 녀 4
4. 해당 자녀가 현재 다니고 있는 기관 및 학교	<input type="checkbox"/> ① 국공립어린이집 <input type="checkbox"/> ② 민간어린이집(가정어린이집) <input type="checkbox"/> ③ 초등학교병설유치원 <input type="checkbox"/> ④ 사립유치원 <input type="checkbox"/> ⑤ 초등학교 <input type="checkbox"/> ⑥ 중고등학교 <input type="checkbox"/> ⑦ 대학교 <input type="checkbox"/> ⑧ 기타 <input type="checkbox"/> ⑨ 미이용				
5. 해당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	<input type="checkbox"/> ① 북한과 다른 남한의 양육문화 <input type="checkbox"/> ② 경제적 어려움 <input type="checkbox"/> ③ 학습지도의 어려움 <input type="checkbox"/> ④ 순탄치 않은 부부관계 <input type="checkbox"/> ⑤ 어린이집 또는 학교 부적응 <input type="checkbox"/> ⑥ 부모와의 대화 단절 <input type="checkbox"/> ⑦ 믿고 맡길만한 기관 또는 대리양육자가 없음 <input type="checkbox"/> ⑧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선입견 <input type="checkbox"/> ⑨ 기타(적어주십시오)				
6. 해당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걱정되는(되었던)발단단계	<input type="checkbox"/> ①신체발달(키, 몸무게 등) <input type="checkbox"/> ②인지발달(두뇌발달) <input type="checkbox"/> ③언어발달(읽기, 말하기, 쓰기 등) <input type="checkbox"/> ④사회성발달(친구사귀기 등) <input type="checkbox"/> ⑤정서발달(감정표현, 감정조절 등)				
6. 해당 자녀의 아버지 국적	<input type="checkbox"/> ① 북한 <input type="checkbox"/> ② 중국 <input type="checkbox"/> ③ 남한 <input type="checkbox"/> ④ 기타				



**2. 귀하는 육아정보를 주로 어디에서 얻으십니까?**

- ① 알고 지내는 북한주민
- ② 알고 지내는 남한주민
- ③ TV, 인터넷, 신문 등
- ④ 공공기관(복지관, 북한이탈주민지원 재단 등)
- ⑤ 종교단체(교회, 성당, 절 등)
- ⑥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유치원
- ⑦ 없음       ⑧ 기타(\_\_\_\_\_)

**3. 귀하는 다음 중 육아정보를 어떻게 제공받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아파트 게시판에 육아정보자료 부착
- ② 전문가가 가정에 직접 찾아가는 개별서비스
- ③ 전문가를 초빙해서 집단으로 강의를 듣는 서비스
- ④ 북한이탈주민 대상의 소식지(예: 「동포사랑」) 등에 육아정보 제공
- ⑤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인터넷에 육아카페 개설
- ⑥ 기타

**4. 정부에게 바라는 육아지원정책이 있으시면 적어주십시오.**

---

---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구보고 2012-14

---

**북한이탈주민 영유아 자녀 양육지원 강화 방안**

---

**발행일** 2012년 11월  
**발행인** 이 영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33 안국빌딩 6층, 7층, 10층, 11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730-3313  
<http://www.kicce.re.kr>  
**인쇄처** 한학문화 02) 313-7593

---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8-89-97492-24-4 93330